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윤성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관
이지선 예산분석관
이상아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윤성식 예산분석관
박나경 예산분석관
유다연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김현실 행정실무원
이민영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3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 대상 선정 주의 필요 등 13
2.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의 효과 과다 계상 문제 18
3.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차관계정 정리 검토 필요 22
4. 복권수익금 사업 관리 철저 필요 31
5.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미발행 및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분석 등 · 39
 - 5-1. 외평채 미발행 분석(국공채수입 사업) 42
 - 5-2.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분석(기금예수금 사업) 46
 - 5-3. 외화예산환전제도 분석(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50
6.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관련 개선 필요사항 분석 · 58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필요성 검토	64
2. 국가결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방식 개선 필요	68
3.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76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시방안 개선 필요	82
5.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출연방식 개선 필요 등	89
6. 한국-OECD 포럼 개최 관련 위탁용역 계약 및 집행방식 개선 필요 ..	95
7.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운영상 문제 등 검토	100
8. 기획재정부 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문제	107
9.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 집행관행 개선 필요	115
9-1.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지출 관행 개선 필요	117
9-2. 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인쇄용역 지출 관행 개선 필요	121
10. 환입 가능성 없는 국세물납주식 정리기준 마련 필요	126
11.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입의 수납 일원화 필요	128
12. 기후대응기금 분석	131
12-1. 수입: 배출권 매각대금의 면밀한 추계 및 안정적 수입재원 확보 필요 ..	134
12-2. 지출: 자원없는 지출 이월 최소화 필요 등	143
12-3.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49



CONTENTS

13.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 효과 저조 우려 등	153
14.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세입 부족으로 인한 불용 문제	160
15. (기후대응기금)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지자체 수요 및 사업 실효성 부족 문제	166
16. (기후대응기금)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사전절차 지연 및 준비 미흡	170
17. (기후대응기금)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사업 분석	177
17-1.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집행 부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79
17-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사업효과 분석 미흡 및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 면밀한 검토 필요	185
18.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91
19. (기후대응기금)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98

[국세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207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1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2

II. 주요 현안 분석

1. 각종 신고포상금의 제도개선 및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214
2.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정보화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222

III. 개별 사업 분석

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230
1-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기준 개선 필요	231
1-2. 특정업무경비 지급시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 제고 필요	236
2.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연령 상향 등 모바일 발송 확대 필요	238
3. 확정채무 지급의 적정예산 편성 및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패소율 관리 필요	246
4.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253

[관세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259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63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64

II. 주요 현안 분석

- 1.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66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지정·고시 필요 271
- 2.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을 법령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할 필요 .. 279
- 3. ODA 사업의 특성 및 수원국의 사업 환경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285
- 4. 관세청 보유 드론의 처분 등 관리 개선방안 검토 필요 295
- 5. 외환조사요원 등 전문위탁교육사업비의 목적에 맞는 집행 필요 300

[조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307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12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14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달청 비촉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분석	316
1-1. 비촉물자사업수입의 예산 추계와 비촉목표 설정의 정확성 제고 및 민·관공동비촉제도 활성화 필요	317
1-2.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흡소금속 이관 추진 및 비촉업무 공백 방지 필요 ·	326
1-3. 비촉물자 재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수단 마련 필요 ·	332
2. 마스크 비촉량 감축 및 직접비촉 방식의 개선 고려 필요	334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관련 집행계획 변경 문제	341
2. 조달청의 비촉여건을 고려한 비촉창고 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350
3. 배상금 부족금 충당을 위한 연례적 전용 발생 지양 필요	356
4. 조달청 공무원 인건비 등의 적정 사업에의 편성 필요	360
5. 청사 이전 지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 문제 해결 필요	364

[통계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373
-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77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78

II. 주요 현안 분석

- 1. 통계청의 정보화 예산 편성 절차 준수 노력 필요 379
- 2. 통계청 성과관리 지표 개선 필요 383

III. 개별 사업 분석

- 1.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사업의 과소 편성 시정 필요 388
- 2. 주 이용자를 고려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노력 필요 ... 397



기획재정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98조 7,801억 3,800만원이며, 554조 2,402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4%인 495조 6,662억 9,500만 원을 수납하고 56조 7,450억 4,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8,289억 5,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14,252,797	488,069,251	488,069,251	543,241,200	484,667,196	56,745,046	1,828,958	89.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0,678,993	10,710,887	10,710,887	10,999,099	10,999,099	-	-	100.0
합계	424,931,790	498,780,138	498,780,138	554,240,299	495,666,295	56,745,046	1,828,958	89.4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조 8,417억 3,200만원이며, 이 중 87.3%인 19조 9,34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조 8,922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3)

이지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87)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794,029	26,473,108	22,286,620	19,518,422	14,774	2,753,424	87.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55,112	555,112	555,112	416,334	-	138,778	75.0
합계	23,349,141	27,028,220	22,841,732	19,934,756	14,774	2,892,202	87.3

자료: 기획재정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68조 3,262억 1,900만원이며, 862조 9,45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62조 9,043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411억 7,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43,342,438	267,769,966	267,769,966	554,134,343	554,128,142	6,200	-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937,532	1,941,183	2,103,125	3,900,108	3,900,108	-	-	100.0
기후대응기금	2,459,423	2,170,898	2,170,898	8,163,499	8,157,576	5,923	-	99.9
대외경제협력기금	1,450,241	1,347,374	1,347,374	2,845,732	2,818,185	27,547	-	99.0
복권기금	7,756,434	7,805,700	7,805,700	7,642,693	7,641,186	1,507	-	1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91,700	691,700	368,554	1,201,887	1,201,887	-	-	100.0
외국환평형기금	86,577,267	86,599,398	86,599,398	285,057,224	285,057,224	-	-	100.0
합계	344,215,035	368,326,219	368,165,015	862,945,485	862,904,307	41,178	-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68조 5,017억 3,500만원이며, 이 중 95.0%인 349조 9,45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2,834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조 6,291억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243,342,438	267,769,966	267,769,966	250,757,562	-	17,885,751	93.6
국유재산관리기금	1,937,532	1,941,183	2,103,125	2,242,551	196,531	55,448	106.6
기후대응기금	2,459,423	2,170,898	2,170,898	2,046,509	69,429	77,627	94.3
대외경제협력기금	1,450,241	1,347,374	1,360,948	1,308,158	17,514	28,736	96.1
복권기금	7,756,434	7,805,700	7,805,700	7,641,186	-	186,517	97.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91,700	691,700	691,700	1,201,887	-	16,674	115.2
외국환평형기금	86,577,267	86,599,398	86,599,398	84,747,641	-	378,351	97.9
합계	344,215,035	368,326,219	368,501,735	349,945,494	283,474	18,629,104	95.0

자료: 기획재정부

다.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23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405조 8,87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5조 5,293억 9,000만원(15.8%)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41,299,835	341,648,220	397,185,125	396,156,669	△1,028,456	54,856,834
기금	9,058,156	9,525,912	9,525,912	9,730,712	204,800	672,556
합계	350,357,991	351,174,132	406,711,037	405,887,381	△823,656	55,529,390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 4,408억 9,500만원 (△17.6%)이 감소한 25조 4,87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4,034억 3,700만원(5.8%)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53,770	4,503,689	6,100,237	1,235,183	△4,865,054	△918,587
기금	21,929,833	25,121,241	24,827,698	24,251,858	△575,840	2,322,025
합계	24,083,603	29,624,930	30,927,935	25,487,040	△5,440,895	1,403,437

자료: 기획재정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기획재정부의 자산은 489조 8,820억 4,300만원, 부채는 980조 9,885억 2,000만원으로 순자산은 △491조 1,064억 7,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9조 9,975억 4,300만원, 투자자산 324조 8,262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 34조 4,937억 2,800만원, 무형자산 1,040억 2,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605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조 3,019억 6,400만원(△1.7%) 감소하였다. 이는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122조 1,527억 7,500만원, 장기차입부채 857조 2,656억 7,700만원, 장기충당부채 781억 5,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조 4,919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5조 7,859억 3,100만원(9.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등 유동부채 35조 4,117억 3,700만원 및 국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50조 2,603억 2,6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89,882,043	498,184,007	△8,301,964	△1.7
Ⅰ. 유동자산	129,997,543	114,414,916	15,582,627	13.6
Ⅱ. 투자자산	324,826,204	348,740,258	△23,914,054	△6.9
Ⅲ. 일반유형자산	34,493,728	34,556,067	△62,339	△0.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04,020	118,733	△14,713	△12.4
Ⅵ. 기타비유동자산	460,549	354,034	106,515	30.1
부 채	980,988,520	895,202,589	85,785,931	9.6
Ⅰ. 유동부채	122,152,775	86,741,038	35,411,737	40.8
Ⅱ. 장기차입부채	857,265,677	807,005,351	50,260,326	6.2
Ⅲ. 장기충당부채	78,152	67,171	10,981	16.3
Ⅳ. 기타비유동부채	1,491,915	1,389,029	102,886	7.4
순 자 산	△491,106,477	△397,018,582	△94,087,895	△23.7
Ⅰ. 기본순자산	△962,532	△962,53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32,889,665	△453,029,278	△79,860,387	17.6
Ⅲ. 순자산 조정	42,745,720	56,973,228	△14,227,508	△25.0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비용이 재정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1,644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6조 4,642억 9,600만원, 관리운영비 1,613억 5,700만원, 비배분비용 1조 8,225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3조 8,674억 2,300만원, 비배분수익 5조 5,606억 8,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조 1,443억 3,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6조 4,253억 2,000만원(221.8%) 증가한 9조 201억 1,0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6조 5,964억 200만원(415.0%)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7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20조 1,261억 7,000만원)과 국제금융 프로그램(1조 7,437억 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13억 9,800만원과 경비 599억 5,9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036억 7,700만원과 기타비용 9,024억 1,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596,873	△3,999,529	16,596,402	415.0
가. 프로그램 총원가	36,464,296	26,298,692	10,165,604	38.7
나. 프로그램 수익	△23,867,423	△30,298,221	6,430,798	21.2
II. 관리운영비	161,357	198,553	△37,196	△18.7
III. 비배분비용	1,822,564	1,764,946	57,618	3.3
IV. 비배분수익	5,560,684	5,369,181	191,503	3.6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020,110	△7,405,211	16,425,320	221.8
VI. 비교환수익 등	△2,144,339	△2,405,783	261,444	10.9
VII. 재정운영결과(V-VI)	11,164,449	△4,999,428	16,163,877	323.3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397조 185억 8,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91조 1,064억 7,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4조 878억 9,500만원(△23.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1조 1,644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8조 6,959억 3,900만원 감소하고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14조 2,275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가산항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8조 1,813억원 6,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06조 8,773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 평가손익 1조 1,304억 1,300만원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15조 1,779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97,018,582	△352,193,930	△44,824,652	△12.7
II. 재정운영결과	11,164,449	△4,999,428	16,163,877	323.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8,695,939	△72,130,469	3,434,530	4.8
IV. 조정항목	△14,227,507	22,306,388	△36,533,895	△163.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91,106,477	△397,018,582	△94,087,895	△23.7

자료: 기획재정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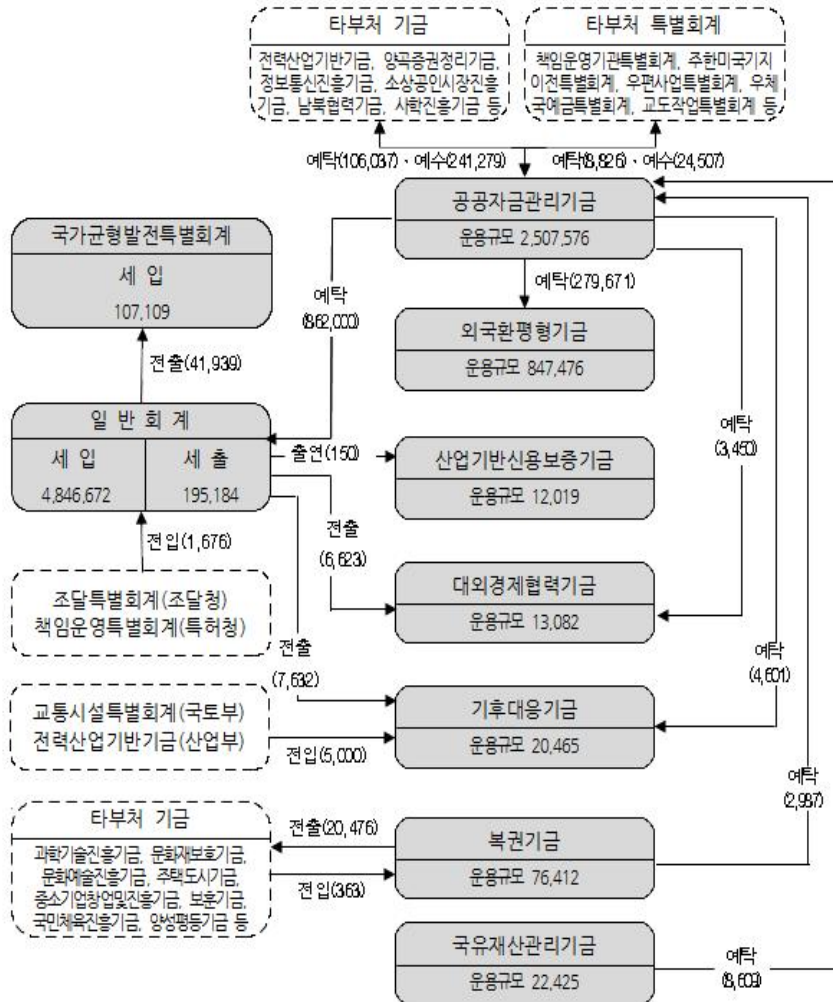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회계·기금 간(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조 1,939억원 전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50억원 출연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6,623억원 전출하였고, 조달특별회계에서 61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1,060억원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6조 2,000억원 예탁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7,632억원 전출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50억원을 출연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7조 9,671억원을 예탁받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450억원을 예탁받았으며, 기후대응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601억원을 예탁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2,987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8,609억원을 예탁받았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0조 6,037억원을 예탁받고 24조 1,279억원을 예수하였으며,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8,826억원을 예탁받고 2조 4,507억원을 예수하였으며, 복권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2조 476억원을 전출하였고, 363억원을 전입받았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¹⁾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예비비, ② 기후대응기금 전출,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등이 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는 예비비의 경우 1조 1,000억원(5조원 → 3조 9,000억원) 감액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전출은 963억 5,500만원(1조 1,729억 9,000만원 → 1조 766억 3,500만원) 감액되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예산이 658억원(8,187억 4,100만원 → 7,529억 4,100만원) 감액되었다.

또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1조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 감액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이 1조 9,255억 100만원(4조 1,052억 5,200만원 → 2조 1,797억 5,100만원) 감액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②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6,540억 2,900만원(2조 8,972억 2,700만원 → 3조 5,512억 5,600만원) 증액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900억 7,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 증액(3조 4,611억 8,300만원 → 3조 5,611억 8,300만원)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사업은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44억 7,500만원(12조 5,592억 5,400만원 → 12조 5,737억 2,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250억 3,400만원(12조 5,203억 6,100만원 → 12조 5,453억 9,500만원) 증액되었다.

1)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1.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2. 2.)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2022. 5.)를 바탕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2022년말 기준 3,28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에 납입하고도 충분하다면 국고에 이입될 수 있도록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입 이입을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 향후 2차 재원보충 시 연내 분할지급 등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공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약속어음을 통한 GCF 공여의 경우 GCF와의 협정 체결 시 국고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차 재원보충에 관한 GCF 및 WB와의 협상과정에서 약속어음 발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규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국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초 계획과 달리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2023년 역시 외평채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장 상황, 국가채무,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평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대응기금 수입에 있어 배출권 매각대금에 따른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규모가 감소하였으므로, 면밀한 수입 추계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산차액의 다음연도 수입 이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수입 감소로 인해 기금 설치 첫 해부터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지출의 추계정확도를 제고하고 차년도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없는 지출 이월 발생을 지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 대상 선정 주의 필요 등

가. 현 황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¹⁾은 재정지원 수단 중 하나인 조세지출(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액 16억 5,400만원 중 15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1,654	1,654	-	-	1,654	1,551	-	103	1,57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임의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의무심층평가 대상과 유사성이 높아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임의심층평가 시 평가대상의 중요성, 국민·사회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131-30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²⁾ 및 동법 시행령 135조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상 일괄 평가가 필요하거나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심층평가 대상]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의 지속적 증가 예상으로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사항
-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1년 및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상 임의심층평가 대상은 모두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는바,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1년 실제 실시한 임의심층평가 10건 중 3건(30%)이 의무심층평가 대상과 유사하여 선정된 반면, 2022년에는 6건 중 4건(66.7%)이 일괄 평가를 사유로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선정되었다. 즉, 대부분의 임의심층평가 대상이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편의성을 중시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2022년 의무심층평가 및 임의심층평가 대상 제도]

연 도	의무심층평가 대상 제도	임의심층평가 대상 제도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그러나 임의심층평가의 취지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향후 임의심층평가 대상 선정 시 평가대상의 중요성, 국민·사회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제출의 기능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 간 연계·통합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사의 총량적 논의 기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연도의 조세지출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한 것으로서 정부의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³⁾

조세지출예산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에 대한 배분 차원에서 조세지출 내역이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분야-부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⁴⁾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되고 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은 16대 분야 69개 부문⁵⁾으로 분류되며, 2022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조 3,876억원의 조세감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감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예산분류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전망	전망	전년대비
1 일반공공행정	45,767	53,876	59,147	5,271
2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3 외교·통일	10	9	9	0
4 국방	262	249	264	15
5 교육	10,167	10,357	11,122	765
6 문화 및 관광	273	348	377	29
7 환경	14,601	17,617	18,807	1,190
8 사회복지	200,128	209,650	231,200	21,550
9 보건	78,926	89,476	95,164	5,688
10 농림수산	63,938	68,957	73,890	4,93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9,962	166,531	183,127	16,596
12 교통 및 물류	4,925	5,676	6,046	370
13 통신	0	0	0	0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239	12,914	13,875	961
15 과학기술	52	116	126	10
16 예비비	0	0	0	0
합 계	570,248	635,776	693,155	57,379

주: 세출예산분류항목 중 2.공공질서 및 안전, 13.통신, 16.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5) 69개 부문은 2019년 개편 이전의 예산분류체계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개편 이전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거나, 같은 성질임에도 개편 전·후 코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조세지출 항목을 현행 16대 분야 75부문으로 작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제출 제도는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함과 동시에 조세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비교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는 3개 연도 조세지출을 16대 분야로 분류한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5개 연도 12대 분야의 예산규모 전망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기 어렵고, 분야-부문-프로그램까지 제출하는 예산안과 연계되기에는 프로그램 체계까지 분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세지출 역시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정부의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 감안하여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세지출 간 연계·통합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및 세법 심사의 총량적 논의 기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¹⁾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 유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0억 7,700만원 중 5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6,547	6,436	641	7,077	5,872	739	465	6,73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2022년 기준 350개)으로,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부처에 제출하였고, 주무부처가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혁신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531-300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2022. 7.)]

분 야	주 요 내 용
기능	①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②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③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조직·인력	◦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 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예산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자산	◦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복리후생	◦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 7. 29.)

이 중 자산효율화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 5,000억원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효율화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비핵심 부동산에 대하여 124개 기관에서 총 11조 6,000억원 규모(330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비할 계획이며,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정비로 107개 기관에서 7,000억원(189건) 규모의 정비가 계획되었다. 또한,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를 69개 기관에서 2조 2,000억원(275건)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며, 청사효율화의 경우 매각 56건, 유희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을 계획하였다.²⁾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가 배부한 자산효율화 계획 자료 작성기준에 따르면 직원용 숙소를 사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실질적 수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자산효율화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 자산효율화에 따른 수입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수입실적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2022. 11. 11.)

직원용 숙소·사택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함으로써 3,000억원의 수입이 발생 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 등 17개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직원을 위해 임차한 “숙소” 일부를 본부 - 지사 순환근무 직원을 위해 임차한 “사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숙소 임차보증금이 실제 회수되지 않거나 임차만료 후 재임차를 통해 지출되어 공공기관 수입에 실제로 계상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혁신계획에 따른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상된 수입은 896.5억원으로,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입금액 3,000억원의 30%에 이른다.

[직원용 ‘숙소’→ ‘사택’ 전환에 따른 금액을 혁신계획 수입에 계상한 기관 현황]

(단위: 억원)

연번	공공기관	수입계상 금액	연번	공공기관	수입계상 금액
1	한전KPS(주)	152	10	주식회사 에스알	16
2	한국도로공사	138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5
3	한국전력공사	113	12	한국저작권위원회	2
4	국민연금공단	65.6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0.5
5	한국전력거래소	34.2	1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0.25
6	한국에너지공단	27	15	한국동서발전(주)	229
7	근로복지공단	26.4	16	주택관리공단(주)	2.3
8	한국재료연구원	16.2	17	한국관광공사	47.6
9	국민건강보험공단	16	소 계		896.5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이 ‘숙소 용도’에서 ‘사택 용도’로 단순 변경된 임차 주택 보증금을 혁신계획에 따른 수입으로 계상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배부(2022. 9. 8.)한 「자산정비 계획 추진 관련 협조 요청」 상의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 확인 및 자료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계상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료 작성 방법에서 직원용 숙소 중 향후 사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숙소 정비 계획에 미반영하더라도 “숙소”는 정비대상이므로 사택 전환시기를 숙소 정비시기로 간주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 확인 및 자료 작성 방법

- ④ 기존에 제출한 자산 현황에 “임차중인 숙소 또는 사택”이 누락된 경우, 새롭게 행을 추가하여 임차중인 자산 현황을 작성하고, 처분(임차보증금 회수 포함) 계획이 있는 경우 “연도별 정비계획”에 임차보증금 회수 계획을 반드시 작성
- 새롭게 추가한 행은 별도 음영 표시
- ⑤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국토부 협의에 따라 직원용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직원용 숙소에 대한 연도별 정비계획을 작성
- **직원용 숙소 중 국토부와 협의하여 향후 ‘사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숙소 정비계획에 미반영한 경우, 숙소로써는 전부 정비대상이므로 사택 전환시기를 숙소 정비(임차보증금 회수 포함)시기로 간주하여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에 대한 자료 작성기준에 숙소를 사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숙소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택으로의 재임대 또는 취득으로 인해 숙소 처분대금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실적에 보조금 등이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혁신계획에 따른 수입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인다.³⁾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실제 공공기관의 숙소 정비실적 및 실제 보증금·임차료 지출 등을 감안하여 자산효율화 수입실적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pp. 96~99 참고

가. 현 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회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총괄계정·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용자계정은 재정용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던 재정용자특별회계¹⁾가 2007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되면서 해당 회계 용자계정의 사업과 원리금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계획현액 3,735억 2,900만원 대비 112.9%인 4,216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다.

차관계정은 재정용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되면서 해당 회계 차관계정의 사업 및 재정차관자금이 이관된 것으로, 2022회계연도 집행액은 3,519억 3,200만원으로 계획현액 3,123억 6,000만원 대비 112.7%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차관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획액
	당초	수정				
계	243,342,438	267,769,966	267,769,966	250,757,562	93.6	284,694,615
용자계정	373,529	373,529	373,529	421,688	112.9	723,878
차관계정	312,360	312,360	312,360	351,932	112.7	312,360

자료: 기획재정부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2007. 1. 1. 폐지

나. 분석의견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용자계정은 잔여사업 2건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부처는 보건복지부라는 점, 차관계정 역시 잔존해있는 차관 잔액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로 두 계정을 유지할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그간 국회의 시정요구를 고려하여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정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자계정과 관련하여, 2023년 5월말 기준 용자계정에 남아있는 용자원금 잔액은 4,276억원이나, 용자계정에 편성·집행되고 있는 용자사업은 장애인자립자금 용자 사업²⁾과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³⁾이다. 두 사업 모두 2022회계연도 계획현액은 7억원이었으며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장애인자립자금용자 및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장애인자립자금 용자	700	700	-	-	700	700	-	-	560
민간보육 시설지원	700	700	-	-	700	700	-	-	560

자료: 기획재정부

① 장애인자립자금용자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용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중위소득 50~100%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 및 용자 추천을 거쳐 대출 심사 및 실행이 되는 구조이다.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4531-300

3)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473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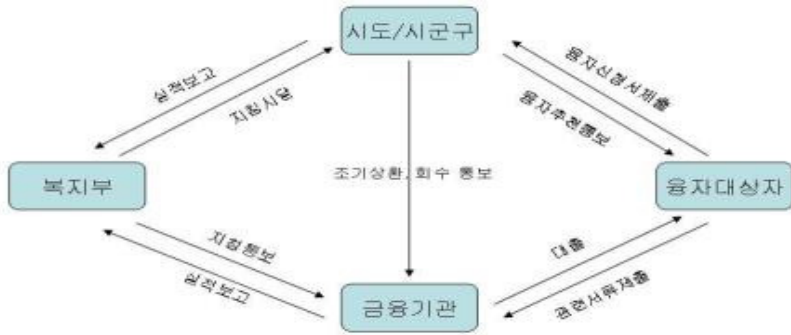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요건 및 절차]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비, 보조기기 구입,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등
융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 19세 이상)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은 대여 불가
대출한도 (가구당)	-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하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하
대출조건	-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
이율	금리 최고 연 2.0%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 금리 최고 연 3.0%)
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절차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② 복지로 온라인신청 → 시·군·구 심사·융자 추천 → 금융기관(국민은행) 방문 및 융자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시설이전과 환경개선에 융자금을 제공해 왔다.

[민간보육시설지원 요건 및 절차]

구 분	주요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용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용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민간·가정어린이집 중 환경개선 및 시설이전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원내역	- 시설이전: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당 최대 1억원 지원 - 환경개선: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선정절차	 <pre> graph TD 복지부[복지부] -- "실적보고" --> 시도[시도/시군구] 시도 -- "지침시용" --> 복지부 시도 -- "조기상환, 회수 통보" --> 금융[금융기관] 금융 -- "지침통보" --> 복지부 복지부 -- "실적보고" --> 금융 금융 -- "대출" --> 용자[용자대상자] 용자 -- "용자신청서제출" --> 시도 용자 -- "용자후견통보" --> 시도 용자 -- "관련서류제출" --> 금융 </pre>
용자조건 및 취급기관	- (용자조건) 변동금리, 3년 거치 4년 상환 - (취급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이후 장애인자립자금용자 집행액을 보면 2017년 38억원에서 2018년 16억원으로 감소한 후 계획액 및 집행액이 2022년까지 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지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감소하였다. 실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자립자금용자 사업의 실집행액은 2017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은 2019년 27.8%, 2022년 54.0% 수준이다.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의 실집행액은 2019년 실집행액 8억 3,800만원(실집행률 25.8%)에서 2020·2021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6억 9,0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17~2022년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14,226	9,500	10,129	5,211	7,064	4,550	6,682	4,650	2,800	2,800	1,400	1,400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융자)	8,266	3,800	6,518	1,600	3,814	1,300	3,432	1,400	1,400	1,400	700	700
		(1,711)		(1,190)		(1,060)		(839)		(479)		(378)
민간보육 시설지원 (융자)	5,960	5,700	3,611	3,611	3,250	3,250	3,250	3,250	1,400	1,400	700	700
		(3,675)		(2,063)		(838)		(1,286)		(1,347)		(690)

주: 괄호 안은 실적행액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실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일반 민간 대출과 이자율 차이가 줄어들어 동 사업 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고, 신용불량자, 타 대출을 받은 자 등 심사규정에 부적합한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2022~2023년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변동금리와 시중 금리를 살펴보면 금리가 2022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금리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신청 대비 승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신청연도	융자 신청		융자 승인		융자 미승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391	5,783	92	1,190	299	4,593
2019	442	6,817	85	1,060	357	5,757
2020	448	8,557	70	839	378	7,718
2021	284	4,625	33	479	251	4,146
2022	428	7,999	34	378	394	7,621

자료: 지방자치단체 취합, 국민은행

[민간보육시설지원 용자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신청연도	용자대상군	대출 신청		대출 승인		대출 미승인	
		용자건	용자액	용자건	용자액	용자건	용자액
2018	시설이전	16	1,030	12	880	4	150
	환경개선	73	1,232	69	1,183	4	49
2019	시설이전	2	220	-	-	2	220
	환경개선	64	1,063	55	838	-	225
2020	시설이전	-	-	-	-	-	-
	환경개선	75	1,619	61	1,286	14	333
2021	시설이전	-	-	-	-	-	-
	환경개선	126	3,321	61	1,347	65	1,974
2022	시설이전	1	100	-	-	1	100
	환경개선	74	1,760	30	690	44	1,070

자료: 지방자치단체 취합, 국민은행·신한은행

[용자계정 내 사업 용자금리 및 시중금리 비교]

(단위: %)

구 분		2022-1분기	2022-2분기	2022-3분기	2022-4분기	2023-1분기
장애인자립자 금융자(A)		0.60	0.84	1.70	1.94	2.51
민간보육 시설지원(B)		1.10	1.34	2.20	2.44	3.01
시중금리(C)		3.94	4.14	4.81	5.52	5.22
비 교	A-B	△3.34	△3.3	△3.11	△3.58	△2.71
	A-C	△2.84	△2.8	△2.61	△3.08	△2.21

주: 시중금리는 가계대출 금리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용자 심사 및 추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취급 금융기관이 장애인자립자금융자는 1곳, 민간보육시설지원 은 2곳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실집행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각 용자사업의 경우 타 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용자 수요가 줄어든 것도 사업규모 축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자립자금용자의 경우 생업자금, 기술훈련비,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조사업이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한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를 제한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사 용자사업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형태의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2023년 시비 70%를 부담하여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⁵⁾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용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용자계정 지출에서 동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회계연도 0.99% → 2021회계연도 0.63% → 2022회계연도 0.33%으로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이나 실제 사업수행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특히 장애인자립자금용자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일반회계로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⁶⁾을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사업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장애인자립자금용자 사업과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을 통한 용자 규모가 점차 축소하여 용자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3%로 매우 낮고 두 사업 모두 보건복지부가 사업수행부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을 유지할 실익이 매우 낮으므로, 용자계정 정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관계정과 관련해서는 2022년말 기준 원리금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4)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I」 p.361

5) 2023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제) 사업 중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5억 5,200만원)
 - 사업내용: 석면건축물 제거 및 보수, 온실가스 저감, 위생·안전·친환경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
 - 지원규모: 20명 이하(5백만원), 21명~59명(6백만원), 60명 이상(7백만원)
 - 지원조건: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 추진절차: 어린이집(신청) → 자치구(현장확인 등 자체심사) → 시(심사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 자치구(정산 및 결과보고) → 시

6) 코드: 일반회계 1534-300

남아있는 차관 잔액이 없고 계정에는 여유재원만 잔존하고 있으며 2023년 수입에 계상된 한국은행 예치 여유자금의 2023년에 총괄계정으로 전출되어 사실상 계정 유지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2022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차관계정)	312,360	312,360	351,932	112.7	312,36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	1,000	7,157	715.7	-
기타재산수입(54-545)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000	1,000	7,157	715.7	-
85 정부예금회수	310,663	310,663	343,994	110.7	312,360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310,663	310,663	343,994	110.7	312,360
92 예탁원금회수	679	679	777	114.4	-
계정간예탁원금회수(92-925)	-	-	-	-	-
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92-926)	679	679	777	114.4	-
95 예탁이자수입	18	18	5	26.5	-
계정간예탁이자수입(95-955)	-	-	-	-	-
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95-956)	18	18	5	26.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차관계정)	312,360	312,360	351,932	112.7	312,360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	-	-	-	312,360
9301 계정간전출	-	-	-	-	312,360
공자기금에서 총괄계정으로 전출금 (9301-931)	-	-	-	-	312,360
9700 여유자금운영	312,360	312,360	351,932	112.7	-
9702 여유자금운영	312,360	312,360	351,932	112.7	-
한국은행예치(9702-970)	312,360	312,360	351,932	112.7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국회에서는 2018~2020회계연도 간 지속적으로 용자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고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 정리에 관하여 시정요구해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사업 이관(공공자금관리기금 → 일반회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차보전 예산 급증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차관계정은 용자계정 처리 방안과 연계하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⁷⁾⁸⁾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 정리에 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대상기관	시정요구사항
201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용자계정 내 운영중인 2개 용자사업을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용자계정을 정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201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것
202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사업 축소 및 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계정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유지해야 할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그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정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8) 한편, 2023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는 용자사업 특성상 일반회계로는 사업 운용이 어렵고 금융기관 재원으로 운영 시 금융기관 부담이 커 참여가 저조함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복권수익금 중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배분하고, 그 외 복권기금 재원 중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드는 비용 및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 억제 및 중독 예방·치유 교육·홍보를 제외한 재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¹⁾

이 중 법정배분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서 해당기금으로 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산림환경기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능증진자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법정배분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에 따라 법정배분사업의 용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방식은 주택도시기금·보훈기금·양성평등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응급의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2022회계연도 복권기금 재원 배분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정배분			공익사업		
	기금/사업명	당초 계획액	집행액	기금/사업명	당초 계획액	집행액
전출	과학기술진흥기금	130,527	101,244 ¹⁾	주택도시기금	550,397	550,397
	국민체육진흥기금	93,814	93,814	보훈기금	16169	16169
	근로복지진흥기금	159,758	159,758	양성평등기금	595,617	595,57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4,666	74,666	문화예술진흥기금	173,868	173,868
	문화재보호기금	140,643	140,643	청소년육성기금	137,638	135,750
	-	-	-	응급의료기금	5,750	5,750
보조	지방자치단체지원	152,750	152,7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300	5,211
	제주도개발사업특 별회계지원	167,851	167,851	입양아동 가족지원	23,832	23,83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55,253	55,253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2,209	2,209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지원	40,082	40,08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39,975	39,975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69,057	69,057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1,484	1,484
출연	-	-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70,531	200,531
	-	-	-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106,079	106,079
	-	-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2,054	2,054
	-	-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21,000	36,000

주: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에 해당하는 292억 8,300만원은 전출금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 소속)는 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등 기본정책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며,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 회계·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25조²⁾ 및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³⁾에 따라 기관의 장 등은 결산명세서에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고, 분기별 실적보고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복권법 제29조의²⁴⁾ 및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모든 사업에 대해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며, 불용액 발생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반납예산 미계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늦어도 반납사유 발생 다음다음 연도 중에는 반납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출연·용자 등으로 지원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 운용현황을 다음연도 사용계획서 또는 사용신청서에 포함하여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잔액을 당초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거나 복권위원회와 처리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권법 제23조제5항⁵⁾에 따라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중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법률 및 관련 법령상 복권수익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관리 및 복권수익금 정산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17조(결산) 기관의 장 등은 법 제25조에 따른 결산명세서를 제11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있다. 그럼에도 2022년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권법 제2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정배분사업의 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이월·정산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조금 절차를 준용⁶⁾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⁷⁾

나. 분석의견

복권 사업의 불용액 반납 지연 뿐만 아니라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등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및 소관 부처는 사업 관리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복권수익금 배분 사업의 수익금 정산절차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집행 결과 기금반납액은 2022년까지 수납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020회계연도의 기금반납액도 2022년까지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0회계연도 복권수익금 사업 정산 결과 2022년까지 미반납액이 남아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이며, 2021회계연도 정산 결과 5개 사업에서 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0회계연도 집행 사업 중 6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0~2021년 복권기금의 정산 잔액의 기금 미반납 현황(2023.3.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집행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금 반납액	미반납 처리결과	미반납 사유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87,876	80,646	4,665	2,565	1,222	2023년 하반기 반납 예정	문화재보호기금 예산 부족
양성평등기금 전출	393,995	384,254	334	9,407	6,525	지자체 수납완료 후 2024년 반납예정	지자체 추정 편성 지연

6) 기금 전출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보조사업 수행 부처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분임회계관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7)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집행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금 반납액	미반납 처리결과	미반납 사유
청소년육성 기금 전출	112,108	104,799	-	7,310	6,045	2023. 3. 5,563백만원 반납	지자체 추경편성 지 연 등으로 미반납 집행잔액(1,235백 만원)은 지자체 수납 완료 시 차년도 즉 시반납 예정
지방자치단체 지원	104,198	89,899	9,317	4,981	4,909	2022. 12. 743백만원 반납 등 수사로 반납중	전남(72백만원) 등 2개 시도 미반납, 연내불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 독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1,306	20,027	-	1,279	848	2022년 603백만원 반납	지자체 반납 지연 (431백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17,468	16,895	-	574	384	2022년 194백만원 반납	지자체 반납 지연 (18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036	6,903	423	710	513	2021년 507백만원 반납	반납 독려하여 연내 반납 예정(2023년 5월, 197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집행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금 반납액	미반납 처리결과	미반납 사유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출	78,188	67,810	-	10,377	-	-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내 사업 기간 연장(이월) 으로 정산 지연에 따라 미납
문화재보호 기금 전출	87,934	82,922	2,767	2,246	-	-	2023년 가금계획에 상 정 2,245백만원 반납예 정(하반기)
주택도시 기금 전출	516,536	482,711	-	33,825	-	-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미 반납, 24년 2분기 불용 액 반납예정
보훈기금 전출	25,050	11,652	12,843	554	-	-	보훈기금 자금 부족으로 7월경 반납 예정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집행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금 반납액	미반납 처리결과	미반납 사유
양성평등기금 전출	448,564	429,790	461	18,314	9,134	2023. 3. 9,134백만원 반납	지자체 추경편성 지연 등으로 미반납 집행잔액(9,151백만원)은 지자체 수납 완료시 차년도 즉시 반납예정
문화예술 진흥기금 전출	146,862	129,570	-	17,292	-	-	지자체별 추경 의회 일정이 상이, 법정기한인 23년까지 반납 예정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121,273	114,688	86	6,498	2,873	2023. 3. 2,873백만원 반납	지자체 추경편성 지연 등으로 미반납 집행잔액(3,625백만원)은 지자체 수납완료시 차년도 즉시반납 예정
지방자치단체 지원	134,012	126,515	2,561	4,935	2,357	2023. 3. 2,357백만원 반납	서울(126백만원) 등 9개 시도 미반납, 지속적독려를통해연내 불용액징수예정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53,063	48,649	3,132	1,282	1,268	2022. 12. 1,268백만원 반납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반납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_23년 12월 반납예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7,148	5,421	-	11,727	211	2022년 211백만원 반납	지자체 반납 지연 (11,51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시 감점 항목 평가지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복권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여부”를 선정하여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결산명세서 제출, 사업 이월시 사전승인, 불용액 반납, 사업별 실적보고서 제출 등 복권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반 사업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건당 0.4점을 감점(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건당 △4점)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202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중 법령위반 평가 기준]

평가지표	감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복권관련 법령·지침상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4점)
측정방법	◦ 위반 정도(금액, 기간 등)에 따라 위반 건당 0.4점까지 감점 ◦ 다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위반 건당 4점까지 감점
측정기준 (평가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복권관련 법령·지침 상 의무위반 여부(△4점) ◦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복권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반 사업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복권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결산명세서 제출),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등 ②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복권기금의 집행·정산·반납(분기별 집행 실적 및 집행 계획 제출, 사업 이월시 사전 승인, 불용액 반납, 결산명세서 제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세목조정시 사전 승인) ③ 성과평가 편람: 사업별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성과지표 제출, 성과개선계획서 작성 ◦ 평가대상사업의 과거 의무위반 사항이 치유되지 않고 평가시점(1월 1일) 기준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감점 대상 * 예) 평가대상 A사업의 '18년도 예산불용액이 반납기한('20.12.31.)을 경과하여 '22.1.1. 기준 미반납 상태일 경우 등 ※ 복권위원회의 자체조사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위반 정도 평가를 위하여 사업 담당 기관은 '사업실적보고서'에 위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위반사유, 향후 조치계획 등) 작성
평가근거 /자료	◦ 복권위원회의 집행 점검자료 등 ◦ 사업실적보고서,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회 검토보고서 등 복권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2022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편람」

평가 결과 복권기금사업 124개에 있어 총 법정배분사업 92개 중 57개 사업이, 공익사업 32개 중 26개 사업이 불용액 반납기한 경과,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결산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등 복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법령·지침상 의무 준수 사업 수도 2021년 84개 사업에서 2022년에는 41개 사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점 평균을 보면, 공익사업의 감점 평균이 △1.09로서 법정배분사업 감점 평균 △0.69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배분사업보다 공익사업의 법령 위반 사례가 더 많았음을 방증한다.

[감점 지표(법령 위반 여부) 득점 평균]

(단위: 점)

구 분	2021	2022		
		합계	지속	신규
전체	△0.08	△0.79	△0.90	△0.54
법정배분사업	△0.02	△0.69	△0.74	△0.59
공익사업	△0.23	△1.09	△1.20	-

주: 감점지표 총 배점 △4점 기준 중 평균득점률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2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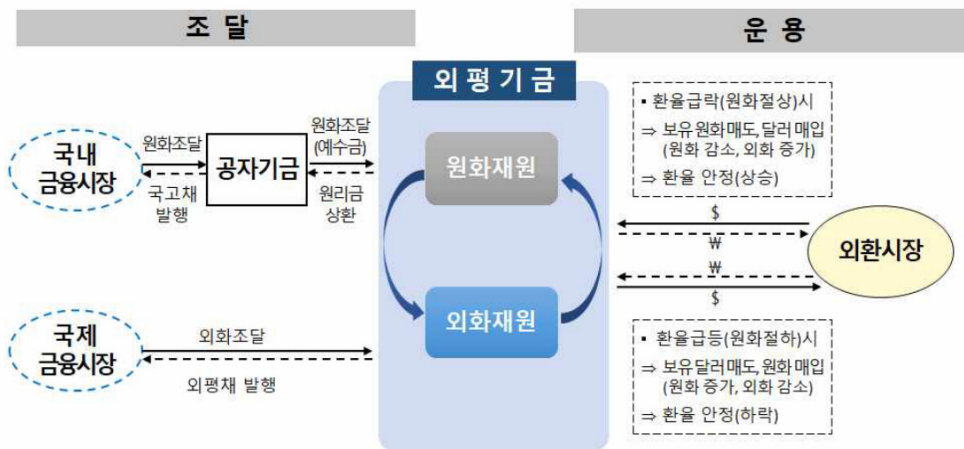
복권기금의 수입은 국가가 사행성 성격의 복권을 발행하여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권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 타 기금으로 전출된 자금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으로 재교부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복잡하여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사업 수행 부처는 복권 사업의 불용액 반납 의무 미이행 등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기금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확보한 외화자금은 한국은행 예치 또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에 위탁하여 관리하며²⁾,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안

이규민 예산분석관(dlrals90@assembly.go.kr, 6788-4623)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외환보유액 운용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사무 처리는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2)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외평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6조 6,742억 7,600만원 감소한 84조 7,476억 4,100만원으로,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7조 9,670억 5,100만원, 법정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1,195억 1,900만원, 정부출자수입(KIC 출자배당금) 1,176억 1,700만원, 한국은행 등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 54조 6,006억 6,300만원, 여유자금 운용수입 1조 9,427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평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계획		2022결산	2023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91,421,817	86,577,267	86,599,398	84,747,641	136,287,46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9,685,926	32,681,460	32,681,460	27,967,051	55,301,850
국공채(외평채) 수입	1,558,883	1,131,000	1,131,000	-	3,483,000
법정부담금	72,307	99,193	99,193	119,519	125,007
정부출자수입	57,990	39,120	39,120	117,617	38,040
여유자금 회수	48,292,805	50,911,989	50,911,989	54,600,663	75,485,107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	1,753,907	1,714,505	1,736,636	1,942,791	1,854,46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외평기금의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 원금 상환에 26조 6,814억 6,000만원, 이자 상환에 4조 6,677억 8,200만원, 외평채 등 차입금 이자상환에 6,734억 100만원, 기금 운영에 10억 2,900만원, 여유자금 운용에 52억 7,23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평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계획		2022결산	2023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91,421,817	86,577,267	86,599,398	84,747,641	136,287,466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33,893,026	26,681,460	26,681,460	26,681,460	49,801,850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4,878,053	5,041,024	5,041,024	4,667,782	5,606,219
국공채(외평채) 원금 상환	500,861	-	-	-	1,290,000
차입금 이자 상환	599,895	656,378	678,509	673,401	754,266
기금 운영비	894	940	1,030	1,029	1,103
여유자금 운용	51,549,088	54,197,465	54,197,375	52,723,969	78,834,02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회계연도 외평기금의 결산 중 주목할 사항으로는 당초 국공채 수입을 1조 1,310억원 계획하였으나 외평채를 미발행함에 따라 국공채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당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32조 6,814억 6,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7조 9,670억 5,100만원을 예수하였다는 점 등으로, 이하에서는 외평채 미발행,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5-1. 외평채 미발행 분석(국공채수입 사업)

가. 현 황

외평기금의 국공채수입 사업³⁾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신규발행을 위하여 동 사업에 1조 1,310억원⁴⁾을 계상하였으나,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공채수입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2022회계연도 국공채수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국공채수입	1,131,000	1,131,000	-	-	1,131,000	-	-	3,483,0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2022년 당초 계획과 달리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2023년 역시 외평채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장 상황, 국가채무,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평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의 경우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이전 5년인 2017~2021회계연도의 경우 매년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확보해왔다.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는 달러표시 외평채만 발행하였으나, 2020회계연도와 2021회계연도에는 달러 표시 외평채(10년물)와 유로 표시 외평채(5년물)를 2년 연속 발행하였다.

3)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4) 1,131원 × 10억 달러 = 1,13100,000,000원

[2017~2021회계연도 외평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발행연월일	통화	금액	만기	표면금리	발행 스프레드
2017-01-19	USD	10억불	10년	2.750%	UST 10y + 55bp
2018-09-20	USD	5억불	10년	3.500%	UST 10y + 60bp
2018-09-20	USD	5억불	30년	3.875%	UST 30y + 85bp
2019-06-19	USD	5억불	5년	2.000%	UST 5y + 30bp
2019-06-19	USD	10억불	10년	2.500%	UST 10y + 55bp
2020-09-16	USD	6.25억불	10년	1.000%	UST 10y + 50bp
2020-09-16	EUR	7억유로	5년	0%	MS 5y + 35bp
2021-10-15	USD	5억불	10년	1.750%	UST 10y + 25bp
2021-10-15	EUR	7억유로	5년	0%	MS 5y + 13bp

주: UST는 미국국채(10년 금리, MS는 미드스왑(5년) 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외평채 발행 시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행결과를 안내하고 있으나, 미발행할 경우 별도로 미발행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평채 발행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외평채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미국 국채금리(10년물)는 2021년 1월 1.07%에서 같은 해 12월 1.51%까지 상승한 이후, 2022년 10월 4.05%까지 상승하였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둔화됨에 따라 2023년 6월 3.81%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2021~2023년 6월 기준 미국 국채금리(10년물) 현황]

(단위: %)

구분	20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리	1.07	1.41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구분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금리	1.78	1.83	2.34	2.93	2.84	3.01	2.65	3.19	3.83	4.05	3.61	3.88
구분	2023											
	1		2		3		4		5		6	
금리	3.51		3.92		3.47		3.42		3.64		3.81	

주: 금리는 월평균 기준이며, 6월 금리는 6월 14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10년물)가 상승함에 따라 외평채 발행 시 과거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

그런데 앞서 검토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2022년 환율은 1월 1,195.1원에서 10월 1,426.8원까지 상승한 후 12월 1,297.3원까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21~2023년 6월 기준 원/달러 환율 현황]

(단위: 원)

구분	20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	1,098.3	1,112.2	1,131.1	1,118.5	1,123.2	1,122.4	1,144.8	1,160.8	1,170.4	1,182.3	1,184.3	1,183.8
구분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율	1,195.1	1,198.5	1,220.8	1,234.9	1,268.2	1,279.6	1,306.6	1,320.6	1,391.9	1,426.8	1,361.9	1,297.3
구분	2023											
	1	2	3	4	5	6						
환율	1,246.0	1,274.5	1,304.6	1,321.2	1,328.6	1,270.0						

주: 환율은 월평균 기준이며 2023년 6월 14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이에 외환당국은 주로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각 분기별 순거래액(달러 매수액-매도액)을 해당 분기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1~4분기 모두 달러 매수액보다 매도액이 컸으며, 전체 순거래규모는 △458억 6,700만 달러였다.⁶⁾ 2022년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외환보유액은 2022년 1월 4,615억 3,000만 달러에서 2023년 1월 기준 4,299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 외평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별도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와 달리 외평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외화자산이라는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이나, 환율변경에 따른 손실, 이자상환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6) 참고로 미국은 ① 외환시장 개입, ② 경상수지 흑자, ③ 대미 무역수지 흑자 등의 요건 중 통상 2개 요건 충족 시 관찰대상국, 3개 요건 충족 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며, 2022년과 2023년 모두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다만 2개 요건(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하였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의 경우 1개 요건(대미 무역수지 흑자)만 충족하였으나 과거 2개 요건을 충족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2022년 외환당국 분기별 순거래 규모]

대상기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2년 전체
공개시점	2022.6.30.	2022.9.30.	2022.12.30.	2022.3.31.	-
순거래규모	△83.11억 달러	△154.09억 달러	△175.43억 달러	△46.04억 달러	△458.67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환보유액 현황]

대상기간	2021년 1월	2022		2023년 5월
		1월	12월	
외환보유액	4,427.3억 달러	4,615.3억 달러	4,231.6억 달러	4,209.8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2022년의 경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평채 발행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외환당국의 개입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2023년 5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9억 8,000만 달러로, 2022년 12월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중 27억 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⁷⁾,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둔화⁸⁾ 등으로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 외에 미국의 양적 긴축⁹⁾이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기준금리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율 급변 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외환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국채 발행의 확대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¹⁰⁾으로 이어져 외평채 발행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2022년에 이어 2023년 역시 외평채 발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기획재정부는 시장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평채의 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관계부처 합동,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7.

8) 미국 기준금리(상단 기준)는 2022년 1월 0.25%에서 12월 4.50%까지 상승하였으며, 2023년 5월 기준 5.25%이다.

9) 미 연준은 2022년 6~8월에는 475억 달러 규모, 2022년 9월부터는 950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실시하고 있다.

10) 국제금융센터,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의 미 달러화 영향」, 2023.5.31.

5-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규모 축소 분석(기금예수금 사업)

가. 현 황

기금예수금 사업¹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는 당초 32조 6,814억 6,000만원의 예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7조 9,670억 5,100만원을 예수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금예수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장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장액	계 획 액
	당초	수정							
기금 예수금	32,681,460	32,681,460	-	32,681,460	27,967,051	27,967,051	-	-	55,301,85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의 경우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확보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규모를 축소하였는데, 2023년에도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확보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국채금리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외평기금으로 원화 재원을 예탁하는 공자기금의 조달비용 역시 상승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하에 2023년 역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화 자원과 원화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화 자원은 앞서 검토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원화 자원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확보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국채 발행 또는 여유재원이 존재하는 회계·기금의 예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며, 이들 회계·기금은 공자기금에 예수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11) 코드: 외국환평행기금 94-943

공자기금과 외평기금의 2018~2022회계연도 예수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는 공자기금 예수금이 예수원금 상환규모보다 약 5.8~12조원 많은 수준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신규예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022회계연도의 경우 공자기금 예수금을 27.9조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자기금 신규예수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감소하였다.

[2018~2022회계연도 공자기금 · 외평기금의 예수 ·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자기금 예수금(A)	26,400,000	35,359,800	42,271,320	39,685,926	27,967,051 (당초 32,681,460)
공자기금 상환	20,280,049	28,983,123	39,710,237	38,771,079	31,349,242
원금(B)	14,700,000	23,359,800	34,308,200	33,893,026	26,681,460
이자	5,580,049	5,623,323	5,402,037	4,878,053	4,667,782
공자기금 신규예수(A-B)	11,700,000	12,000,000	7,963,120	5,792,900	1,285,591

자료: 기획재정부

이처럼 외평기금이 2022회계연도 공자기금 예수금의 규모를 축소한 것은 2022 회계연도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이 주로 이루어져 원화 재원의 확보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환당국은 2022년 458억 6,700만 달러를 순매도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환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평기금의 원화/달러 거래규모는 비 공개하고 있어 외평기금의 정확한 원화/달러 자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를 축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달러를 일부 매도하고 원화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2년 외환보유액은 2022년 1월 4,615억 3,000만 달러에서 2023년 1월 기준 4,299억 7,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23년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 예수 55.3조원, 공자기금 원금상환 49.8조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5.5조원의 공자기금 신규예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공자기금 · 외평기금의 예수 · 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공자기금 예수금	공자기금 상환		공자기금 신규예수
금액	55,301,850	55,408,069	(원금) 49,801,850	5,500,000
			(이자) 5,606,219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2023년의 경우 2022년과 유사하게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의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확보 필요성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2023년의 경우 미국의 양적 긴축이 유지되고 있으며 높은 기준금리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무역수지 역시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흑자였으나 1월부터 5월까지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자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¹²⁾¹³⁾ 등으로 인하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평기금으로 원화 재원을 예약하는 공자기금의 상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은 국채발행 또는 타 회계 ·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하여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국채금리 역시 상승한 상황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공자기금의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채 조달금리는 2018년 2.43%에서 2020년 1.38%까지 하락한 이후 2023년 4월 기준 3.28%까지 상승한 상황이다.¹⁴⁾

12) 한국은행은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원화 환율의 변화율이 여타 통화에 비해 높은 모습을 나타낸 요인 중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13)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2023.6.)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수출은 작년 수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폭은 둔화되나 자동차 수출의 감소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2023.5.)을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등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14)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적용되는 공자기금 예약금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 예약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르면 공자기금 예약금리는 공자기금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2021년 외평기금에 적용된 공자기금 예약금리는 평균 1.92%였으나, 2022년의 경우 평균 3.37%로 상승하였다.

[2018~2023년 국채 조달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4
국채 조달금리(평균)	2.43	1.68	1.38	1.79	3.17	3.28

주: 국채는 국고채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획재정부는 원화 재원의 확보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 외평기금으로의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를 축소하였는데, 2023년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원화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국채금리가 상승하여 외평기금으로 원화 재원을 예탁하기 위한 조달비용이 과거 대비 상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하에 2023년 역시 외평기금으로의 공자기금 예수 규모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 외화예산환전제도 분석(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가. 현 황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¹⁵⁾은 외평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외화예산환전제도를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당초계획액은 4조 5,200억원이었으나 4조 7,84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통화금융기관 예치	4520000	4520000	-	-	4,520,000	4,784,238	-
							5,160,000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현재 외화예산환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환변동 대응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의 법적 근거 정비, 다른 환변동 대응수단과의 체계성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화예산환전제도는 각 부처의 예산이 외화로 환전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부처가 시중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대신 외평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환전하는 제도이다. 외화 환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기준환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시점의 실제 환율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준환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코드: 외평기금 9703-971

[외화예산환전제도에 따른 환변동 부담구조 - 기준환율보다 실제환율이 높은 경우]

구분		환변동 부담	결과
기준환율 < 실제환율 ¹⁶⁾	외화예산환전제도 이용	→ 외평기금	외화자원 감소 원화자원 증가
	외화예산환전제도 미이용	→ 부처	사업계획 조정,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대응

이에 따르면 부처는 기준환율로 환전하여 환변동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부처에 외화를 제공하고 원화를 받는 외평기금이 환변동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외평기금은 별도의 국가채무 증가 없이 원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자기금이 해당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실시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 있으나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각 부처로부터 직접 원화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채무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화예산환전제도 이용 현황]

(단위: 억불)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위사업청	119.2	37.8	24.5	0	5.9	26.0
외교부	17.4	6	4.3	0	0	3.9
KOICA	9.4	3.6	1.9	0	0	0
기획재정부	6.2	1.2	0.2	0	0	0
질병관리청	0	0	0	0	0	2.8
계	152.2	48.6	30.8	0	5.9	32.7

자료: 기획재정부

16) 이와 반대로, 기준환율이 실제환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처가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할 경우 외평기금은 외화재원이 감소하고 원화재원이 증가하며,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처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동 제도는 주로 외화예산에 대한 수요가 큰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전을 중단한 이후 2021년부터 재개하여 2022회계연도 기준 총 32.7억불의 외화예산 환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 제도의 경우 환변동의 부담주체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외평기금과 부처를 포함하는 전체 정부 측면에서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 상 외평기금의 운용 수단으로 외화예산환전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법적 근거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이 외평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는 동 제도를 외평기금의 운용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외평기금 운용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 · 외국정부 · 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 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한국은행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제1호17)는 ‘외국환의 매매’를 외평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외화예산환전제도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동 조항을 근거로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 매매가 일반적인 환전까지 포함할 것인지 혹은 외환시장 안정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을 근거로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 제1조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하게 외화예산 환전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17)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상 외화예산환전제도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적으로, 외화예산환전제도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외화의 환전 과정에서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원화 재원을 확보할 경우 공자기금 예수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채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화예산환전제도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변동 대응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부처 입장에서는 외화예산환전제도 이용 시 환차손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관련 지침상 적용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제2호¹⁸⁾는 환율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

18)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22조¹⁹⁾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추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이러한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

내 용
마.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환차손 대응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자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환율상승에 따라 원화경비가 부족할 경우 ①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지출규모를 축소하거나, ②유사사업 등으로부터 이·전용을 실시하고 ③불가피한 경우 예비비를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집행지침은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외평기금의 외화예산환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기획재정부는 전년도말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19)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추당하기 위하여 일 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 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

실시한 이후 환전의 필요성, 규모 등을 검토하여 외화예산에 대한 수요가 큰 부처 위주로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례로 재외공관 운영경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등으로 인해 외화예산의 수요가 큰 외교부는 2018~2022년 중 외화예산환전제도의 이용이 중지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2018년, 2019년, 2022년 모두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31.6억불 규모의 환전을 실시하였으며, 외자장비 도입이 많은 방위사업청 역시 동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213.4억불을 환전하였다.

결국 외화예산의 집행이 많은 부처는 연례적으로 외화예산환전제도에 따라 환전을 실시하고 있어 동 제도와 다른 환변동 대응수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처가 자체적으로 환차손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계획 조정,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하여 환차손에 대응하는 경우 이러한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외자장비 구매, 재외공관 운영경비 지급 등과 같이 외화예산의 환전이 필요한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외화예산환전제도의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용대상]

내 용
제1장 총 칙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동 제도의 취지를 환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환전을 실시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이에 따른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확보 필요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환변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상 환변동 대응수단 및 외화예산환전제도의 관계를 정비하고,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상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장기간 저리의 양허성 차관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수행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개요]

공적개발원조	주요 내용
정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유형	공적개발원조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구분 -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음 - (유상원조) 민간자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함
현황	2022년 ODA 규모(잠정치)는 27억 8,600만 달러로 양자간 원조 21조 8,900만 달러, 다자간 원조 5조 9,700만 달러로 구성되며, 양자간 원조 21조 8,900만 달러는 무상원조 14억 9,800만 달러와 유상원조 6조 9,100만 달러로 구성됨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사업¹⁾은 지역 및 분야별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계획현액 1조 2,305억 5,600만원 중 1조 2,176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29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규민 예산분석관(dlrba90@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

[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이월액					
대개도국차관	1,333,423	1,230,556	-	1,230,556	1,217,604	-	12,952	1,502,976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	464,159	464,154	-	5	705,400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	308,175	304,946	-	3,229	304,852
중동-CIS차관	79,531	21,348	-	21,348	21,260	-	88	131,972
중남미차관	47,171	37,006	-	37,006	29,230	-	7,776	36,396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247,362	399,868	-	399,868	398,014	-	1,854	324,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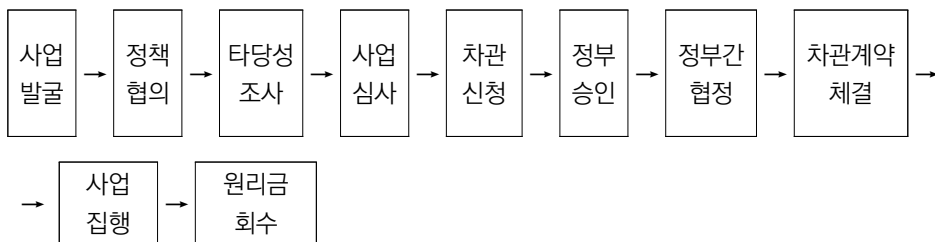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첫째,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세부사업은 감액하고 집행이 원활한 세부사업을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사업 지연사유가 완화되었다는 점,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한 사업발굴, ②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 ③ 수원국의 공식적 차관신청 이후 수출입은행의 사업심사,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사업승인, ⑤ 수원국과 외교부의 정부간 협정체결, ⑥ 수출입은행과 수원국 간 차관계약 체결, ⑦ 수원국의 컨설턴트 고용 → 구매 → 사업실시 및 자금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사업 절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처럼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수원국의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관계 약 체결, 컨설턴트 고용 등 각 사업단계별로 지연이 발생하여 기존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수원국의 섣다운, 자재구매 지연 등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집행부진사유를 행정절차, 구매절차, 사업공정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발굴, 정책협의를 등 비대면 업무추진이 가능한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혹은 부문(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세부사업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한 세부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를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의 경우 1,472억 5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 3,151억 3,100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2회계연도의 경우 1,830억 6,000만원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비 대비 자체변경액의 비율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체변경 규모 자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8~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A)	147,205	147,292	113,955	315,131	183,060
사업비(B)	1,058,101	1,141,231	1,184,879	1,258,196	1,333,423
비율(A/B)	13.9	12.9	9.6	25.0	13.7
자체변경시점	2018.11.14.	2019.12.16.	2020.12.1.	2020.12.16. 2020.12.31.	2022.11.10. 2022.12.19.

주: 1.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감액한 후 증액한 금액을 기재함

2. 사업비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당초계획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규모	합계
감액	아시아차관	△127,058	△183,060
		△13,482	
	중동-CIS차관	△22,417	
		△12,454	
	중남미차관	△1,303	
		△6,346	
증액	아프리카차관	23,072	183,060
		7,482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127,706	
		24,8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관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집행환경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필요성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기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도 있으나,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의결과 다른 방향으로의 집행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대륙별 차관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각 대륙별 차관사업에 편성된 긴급차관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액 감액되었는데, 개별 수원국의 수요,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 다른 방식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긴급차관 사업의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각 대륙별 세부사업에 100억원 또는 50억원 규모의 긴급차관 사업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차관 수요에 대비하여 승인 이후 바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긴급차관 사업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긴급차관 사업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가능성과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수원국의 긴급차관 관련 수요 발생 시 여유자금 혹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²⁾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륙별 긴급차관 사업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20억원 또는 10억원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2022년도 긴급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의결 결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정부요구안	국회확정
아시아차관	긴급차관	10,000	2,000
아프리카차관	긴급차관	5,000	1,000
중동-CIS차관	긴급차관	5,000	1,000
중남미차관	긴급차관	5,00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긴급차관 사업의 2022회계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긴급차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함에 따라 별도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중 긴급차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하였다는 입장이다.

2) 2022년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대개도국차관 사업 중 각 대륙별 차관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B/C)	집행률 (B/C)
	당초(A)	수정(B)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464,159	464,154	5	72.6	100.0
긴급차관	2,000	-	-	-	-	-	-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308,175	304,946	3,229	95.3	99.0
긴급차관	1,000	-	-	-	-	-	-
중동-CIS차관	79,531	21,348	21,348	21,260	88	26.7	99.6
긴급차관	1,000	-	-	-	-	-	-
중남미차관	47,171	37,006	37,006	29,230	7,776	62.0	79.0
긴급차관	1,000	-	-	-	-	-	-

그런데 긴급차관 사업은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차관 승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별 수원국의 수요,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수원국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수원국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긴급차관 사업의 특성,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대응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긴급차관 사업의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세입 이입 필요성 검토

가. 현 황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¹⁾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5,000	25,000	△5,916	19,084	-	0	-	19,084	-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이 세입예산 외로 운용되어 2022년말 기준 3,287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의 세입 이입 기준을 규정하여 세입 이입이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이하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은 세입세출예산 외에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데,²⁾ 재정증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과 같은 자금조달 비용 및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72-561

이자를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³⁾

최근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 181.5억원(집행률 38.8%), 2021년 81.0억원(13.3%)이 집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국고금 운용수익금 총 3,955억원 중 재정증권 이자상환 및 차입이자지급으로 668억원을 지급함에 따라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다. 한편, 국고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3,287억원은 다시 국고금 계좌로 이입되어 운용 중이며, 그 규모를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미계상 되었다.

[최근 5년간 국고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고금 운용수익(A)	1,628	824	253	1,170	2,857
차입 이자비용(B)	24	1,648	1,133	293	668
- 한은 일시차입	-	280	522	18	273
- 재정증권 발행	24	1,368	610	275	394
- 공자기금 상호예탁	-	-	-	-	-
재정수지(A-B)	1,604	△824	△880	877	2,189
운용수익 누적 적립금	3,662	838	140	1,099	3,287
일반회계 세입 납입액	-	2,000	-	-	-

자료: 기획재정부

과거 2018회계연도에도 운용수익 적립금이 3,662억원에 이르러 기획재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2,000억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고, 이후 2020회계연

2)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3)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도 결산 심의 결과 국회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에 대하여 법령상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으로의 이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생 이자비용, 이자비용 충당 구조 등 운용수익금 소요 발생 관련 세부사항 검토를 선행한 후 그 결과와 연계하여 적정 세입이입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미이행된 상황이다.

[2019년 시범운영된 국고금 운용수익금 세입 이입기준]

세입이입 규모 = (금년) 국고금 운용수익금 이월잔액 - (차년) 일시차입금 예상이자비용 - 1,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기준마련 후 실제 해당기준(예비재원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하여 세입조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나, 재정증권은 7월부터, 한은 일시차입금은 9월부터는 발생하지 않아 9월 이후 이자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2022년 말의 경우 이자상환액 예비재원 1,000억원을 제외한 국고금 운용수익금의 세입 이입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2022년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이자상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재정증권 발행액 (조원)	-	4.0	4.9	3.4	-	4.0	-	-	-	-	-	-	16.3
한은 일시차입금 (조원)	-	-	11.5	-	7.0	11.7	-	4.0	-	-	-	-	34.2
국고금 운용 수익(억원)	-	0	1	0	0	1,113	0	0	0	1	2	1,738	2,857
재정증권 이자상환 (억원)	-	-	-	85	89	99	-	95	26	-	-	-	394
한은 일시차입 이자상환(억원)	-	-	-	-	-	26	-	-	80	-	-	168	273
이자상환 계(억원)	-	-	-	85	89	125	-	95	106	-	-	168	668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국고금 수익금의 자의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비용에 납입하고도 충분하다면 국고에 이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누적운용수익금 처리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세입 이입을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¹⁾은 매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 국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며, 정부결산의 체계적 관리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한 회계결산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12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1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가회계제도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회계 제도운영	1,212	1,212	-	-	1,212	1,170	-	42	1,21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국가재무제표 포함)를 작성²⁾하여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며,³⁾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⁴⁾ 이후 정부는 국회에 5월 31일까지 국가결산보고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31-301

2) 「국가회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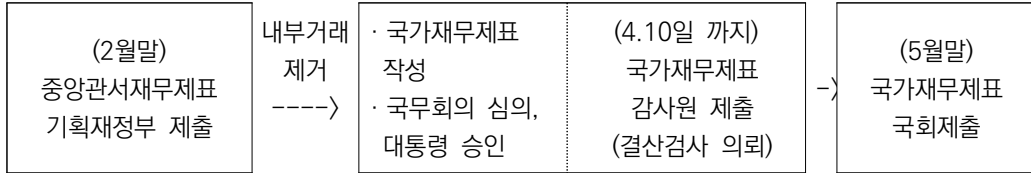
제13조(결산의 수행)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 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를 제출한다.⁵⁾

[국가 결산 일정 및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결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가결산보고서의 통합 작성 지원과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조용역을 하나의 회계법인이 10년 이상 동시 수행하고 있어 결산검사의 독립성 및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었을 우려가 있고, 지원단에 경험이 적은 미국공인회계사가 국가회계결산지원단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단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상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계산상의 실수, 사실판단의 잘못 또는 부정, 사실의 누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당해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전기오류수정’이라고 한다.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이익’과,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손실’이 있는데,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한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148.6조원에 이른다. 특히 2022회

4)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연도에 53.6조원으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⁶⁾

[연도별 국가재무제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전기오류수정이익	5.9	2.8	9.0	7.5	3.7	6.4	5.0	2.6	3.4	2.7	40.3	89.3
전기오류수정손실	6.7	1.6	4.6	4.4	3.6	9.5	3.8	4.3	5.6	1.9	13.3	59.3
합계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148.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국가회계의 오류는 1차적으로는 중앙관서의 행정처리 지체, 결산서류 작성 오류 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중앙관서 재무제표 검토 및 통합 국가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를 위해 매년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등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2022회계연도 결산)에도 ○○회계법인이 수행하였다.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계약현황]

회계연도	계약방법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업체 수	계약업체	비고
2022	조달(수의)	705	1	○○회계법인	국가회계결산지원단
2021	조달(경쟁)	714	2	○○회계법인	국가회계결산지원단
2020	조달(수의)	696	1	○○회계법인	국가회계결산지원단
2019	조달(수의)	707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조달(경쟁)		2	○○회계법인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8	조달(수의)	425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조달(경쟁)	200	2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6)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pp.214~215 참고

회계연도	계약방법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업체 수	계약업체	비고
2017	조달(수의)	421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조달(수의)	274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6	조달(수의)	435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조달(수의)	383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5	조달(수의)	454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조달(수의)	820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4	자체(수의)	469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자체(수의)	993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3	자체(경쟁)	429	2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자체(수의)	1,210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2012	자체(수의)	530	1	○○회계법인	국가통합 결산지원단
	자체(수의)	166	1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앙관서 결산지원단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10년 이상 한 회계법인이 국가회계결산지원단과 감사원의 국가 결산검사 보조용역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결산검사 용역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감사원의 경우 결산검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2개 이상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결산지원단으로 참여하는 ○○회계법인도 2012회계연도 이후 계속 감사원 결산검사 업무보조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즉, 10년 이상 국가회계결산 작성 지원 및 사전검토와, 동 과정을 거쳐 작성한 국가결산에 대한 검사 보조를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것이다.

[감사원 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명)

회계연도	분류	회계법인	계약금액	투입인원	비고
2022	1분류	△△회계법인	625	35	국가통합,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담당
	2분류	○○회계법인	643	37	
	계		1268	72	
2021	1분류	△△회계법인	616	37	국가통합,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담당
	2분류	○○회계법인	642	37	
	계		1,258	74	
2020	1분류	△△회계법인	428	26	국가통합,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담당
	2분류	○○회계법인	520	32	
	3분류	□□회계법인	301	19	
	계		1,249	77	
2019	1분류	△△회계법인	338	21	국가통합,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담당
	2분류	○○회계법인	500	34	
	3분류	◎◎컨소시엄	206	13	
	4분류	□□컨소시엄	213	14	
	계		1,257	82	
2018	1분류	△△회계법인	525	38	국가통합,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담당
	2분류	○○회계법인	502	36	
	3분류	□□컨소시엄	207	15	
	계		1,234	89	

자료: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기업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특정회사와의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업무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사의 감사인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감사증거에 기반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회계감사와 다르다는 점에서 기업 회계감사와 동일하게 독립성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국가회계법」 제4조에 신뢰성·공정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상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도 제시⁸⁾한다는 점에서 기업 회계감사의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결산검사와 회계감사 간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결산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특정 회계법인이 결산서 작성 지원과 결산검사 보조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10년 이상 한 회계법인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및 결산검사 보조 용역을 계속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결산서 작성 지원 및 결산검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는 1분류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므로 감사원 결산검사의 독립성에 저해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실무자간 이해관계 또는 감사대상업무에 관여하는 등의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처⁹⁾로서 중앙관서결산

7)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8) 「감사원법」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도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부처의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지침상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¹⁰⁾는 입찰 및 계약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로서 감사인이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운영 영역이 감사원의 결산검사 영역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국가회계결산지원단에 경험이 적은 미국공인회계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결산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원의 경험 및 자격을 면밀히 고려하여 용역계약을 체결·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에 수행한 2021회계연도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 영역에 있어 국가회계 경력 회계전문가 약 28명을 제안요청하였다. 당시 ○○회계법인의 회계결산지원단 참여인력 현황을 보면, 총 28명 중 한국공인회계사는 12명(42.9%), 미국공인회계사는 15명(53.6%)으로 미국공인회계사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5년 미만 경력을 가진 15명(53.6%) 중 미국공인회계사는 11명으로 이 중 5명은 관련 경력이 전무하였다.

9) 「국가회계법」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2021회계연도 결산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참여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회계감사 관련 경력					계
	15년 이상	10년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1년 미만	
KICPA	3	3	2	4	0	12
AICPA	1	0	3	6	5	15
계	4	3	5	10	5	27

주: 1. 한국공인회계사는 KICPA, 미국공인회계사는 AICPA임

2. Research Associate 1명은 관련 자격 미보유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공인회계사 시험범위에는 정부회계가 포함¹¹⁾되어 있고, 기업회계도 미국 (US-GAAP)과 우리나라(K-IFRS)가 다른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회계결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에 있어 경험 및 자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²⁾

종합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및 통합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운영을 위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국가재무제표의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회계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그간 국가결산보고서의 통합 작성을 지원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원의 결산점사 보조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결산점사의 독립성 및 결산서 작성업무의 책임성 등이 약화되었을 우려가 있고, 지원단에 경험이 적은 미국공인회계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단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11)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회계학 과목의 시험범위에 회계원리·회계이론 및 정부회계가 포함되어 있음.

12) 참고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2022. 6.)에 따르면 동 회계법인의 인적 구성은 소속공인회계사 2,655명(수습 포함)(73%), 비공인회계사는 982명(27%)이다. .

가. 현 황

상생소비지원금 사업¹⁾은 코로나19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21년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28억 6,800만원 및 예비비 1,048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77억 300만원 중 1,01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상생소비지원금	-	-	2,868	-	104,834	107,703	101,360	-	6,342	-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중 해외 사용액, 백화점·대형마트·복합 쇼핑몰·대형 종합 온라인몰·홈쇼핑·면세점·대형 전자전문 판매점·유흥업종·사행업종 사용액, 신규차량구입비와 비소비성지출(연회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등을 제외한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같은 해 10월과 11월 월간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비교하여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인당 캐시백 지원한도는 월 10만원이며,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²⁾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였다. 캐시백 사용용도는 제한하지 않았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6-301

으나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미사용 캐시백은 소멸되도록 하였다. 한편,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지급된 경우 반환하는데, 잔여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하고, 차감할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 대금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 운영 실적을 보면, 당초 700만명에 대해 6,981억원 규모의 캐시백이 지급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1,566만명이 신청하여 1,091만명에게 8,054억원 상당의 캐시백이 지급되었다. 한편, 2022년 6월말까지 사용되지 않아 소멸된 캐시백은 캐시백 지급액의 0.9%인 72억원(2023년 4월말 기준)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운영 실적]

(단위: 천명, 백만원)

인원			금액	
계획	신청	지급	계획액	지급액
7,000	15,658	10,908	698,080	805,411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캐시백 반환대상은 약 48.5만명, 총 83억 7,700만원이며, 2023년 2월말까지 47.3만명으로부터 81억 9,100만원이 환수되어 2023년 6월말 기준 1억 8,500만원이 미환수되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반환내역(2023. 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인원			금액	
예상	반환 대상	환수완료	발생액	환수완료
-	485,293	472,964	8,377	8,191

주: 1. ~2023. 2. 28.까지의 환수 결과 반영

2. 부분 환수된 건은 인원은 미반영, 금액은 반영하였음

3. 환수 완료액 일부는 보유 캐시백을 차감하여 처리함(143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청 및 지급액이 많아 당초 예산(6,981억원)을 초과한 캐시백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일반회계 예비비 1,048억 3,400만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았으며, 1,01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년도 상생소비지원금 예비비 배정]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
320	01	상생소비지원금	104,834	상생소비지원금 초과 소요분 지급(2022.3.15.)
합 계			104,834	

자료: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수행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금융협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에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말까지 6,970억 6,2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경상비 1억 2,500만원을 제외한 6,969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4월 28일 각 카드사에 1차로 캐시백 총 지급액의 85%인 6,847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11월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1,013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11월 7일 동 금액을 카드사에 2차 지급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기획재정부			사업시행주체(여신금융협회)						
	예산 (추경)	예비비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2021	699,900	-	697,130	697,062	-	697,062	125	697,062	125	696,937
2022	-	104,834	101,330	101,330	696,937	798,267	798,243	101,330	101,330	25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은 2022년 내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22년 말 동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변경 및 예산 이월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은 2023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으며,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2023년 말까지로 재연장되었다.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 사업기간 변경 및 내역]

사업연도	변경 전 사업기간	변경 후 사업기간	사유
2021	'21.8.6. ~ '22.12.31.	'21.8.6. ~ '23.6.30.	사업 수행기간 연장(~'23년)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02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2021년 추진한 상생소비지원금 보조사업을 캐시백 미환수를 사유로 2차례 연장하고 정산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미환수된 캐시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반환명령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조속히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재이월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³⁾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2021년에 캐시백 지급액(6,980억 8,000만원) 및 수행기관 사업비(18억 2,000만원) 대부분이 2021년 말 보조사업자인 여신금융협회에 교부되고, 2022년 말 사업기간이 2023년 6월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여신금융협회에 지급된 보조금 2,500만원이 재이월되었다. 이는 2021년 10월에 체결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적정성 검증 및 회계업무 용역” 대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⁴⁾에 따른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바 재이월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지급된 캐시백 중 카드사가 환수 대상자로부터 76억 1,100만원을 회수하여 보조사업자인 여신금융협회에 반납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보조사업비 계좌에 보관 증인바, 동 금액은 정산 후 국고로 반납⁵⁾해야 할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28일에 카드사를 통한 환수는 종료하였으며 카드사의 미회수액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상의 반환명령 절차 이행을 추진 중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⁶⁾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정산 절차를 진행 및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및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 캐시백 지급 및 사용기한이 이미 지났고 카드사에 캐시백에 대한 지급도 완료되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보조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현재까지 미환수된 캐시백 1억 8,500만원은 카드사 탈회 등으로 인해 기존 캐시백 환수방식(캐시백 차감 또는 카드대금 청구)로는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다른 방식의 반환 절차를 이행하여 76억 1,100만원과 함께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은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금 반환금 발생 추이를 확인한 후 환수비용이 환수예상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특정 시점을 정하여 보조금 환수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역시 2023년 2월 28일에 카드사를 통한 환수는 종료하였으며, 카드사의 미회수액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상의 반환명령 절차 이행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운영을 전담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마련 및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는 미환수된 캐시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반환명령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¹⁾은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재정법령 및 제도정비 관련 연구·지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분야별 종합지출구조조정 실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14억 7,2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8억 9,600만원 중 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월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1,547	1,533	183	△244	1,472	1,260	184	28	1,793
재정사업 심층평가	818	818	78	-	896	738	144	14	818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분된다.²⁾

김운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2-301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 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이 중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로, 평가대상은 ①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③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³⁾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정책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유형은 평가 목적 및 평가 대상사업 단위에 따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2⁴⁾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3)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서는 심층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①~③에 해당되는 사업 외에도 과거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밖에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재정운용 과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업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재정사업(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법령·절차 및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제5항)

- 4)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군에 대한 전문성·독립성·객관성을 고려하여 심층평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과제의 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심층평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예년과 달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심층평가 관리기관인 동시에 사업군 심층평가 수행도 전담하였는데 사업·사업군 심층평가 수행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모 등을 통해 직접 심층평가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하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며 사업별 및 사업군 심층평가의 수행기관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정책학회(어촌뉴딜300), 경상대 산학협력단(창업지원사업군) 등 6개 기관에서 개별사업 및 사업군 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

연도	평가대상(사업·사업군)	평가 수행기관	평가기간
2017	저출산극복지원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017.6.
	국가공간정보정책사업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5.~2017.1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군	명지대	2017.12.~2018.6.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	농정연구센터	2017.12.~2018.6.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군	한국재정학회	2017.12.~2018.6.
	고용장려금체계개편(청년일자리중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2018.6.

연도	평가대상(사업 · 사업군)	평가 수행기관	평가기간
2018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8.~2018.12.
	BK21플러스	한국재정학회	2018.9.~2018.12.
	모태펀드	금융연구원	2018.9.~2018.12.
	재직자 교육훈련	숙명여대	2018.9.~2018.12.
	R&D출연연운영효율화	한국정책학회	2018.9.~2018.12.
	창업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8.9.~2018.12.
2019	외국인 체류관리사업군	한국노동연구원	2019.6.~2019.11.
	산학연협력사업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6.~2019.11.
	다자개발협력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6.~2019.11.
	실업자재취업 사업군	서울대	2019.6.~2019.11.
	아동돌봄사업군	보건사회연구원	2019.6.~2019.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국재정학회	2019.6.~2019.11.
2020	국립대재정지원사업군	충북대	2020.3.~2020.9.
	노인의료지원사업군	한림대	2020.3.~2020.10.
	전자정부 지원체계	서울대	2020.3.~2020.12.
	스마트시티	국토연	2020.3.~2020.8.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건국대	2020.12.~2021.6.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	KDI	2020.12.~2021.5.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군	서울대	2020.12.~2021.5.
	정책펀드 사업군	자본시장연구원	2020.12.~2021.6.
2021	어촌뉴딜300	한국정책학회	2021.11.~2022.4.
	창업지원사업군	경상대	2021.11.~2022.4.
	직접일자리 사업군	건국대	2021.11.~2022.4.
	ICT기금 사업군	건국대	2021.11.~2022.4.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군	카이스트	2021.11.~2022.4.
	군간부주거지원 사업군	국토연구원	2021.11.~2022.4.
20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11.~2023.9.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2년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일괄 위탁하고 사업출연금 5억 7,200만원을 교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사업 평가에 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일괄 위탁이 평가의 질적 관리에 수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일괄 위탁하여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증한 후 내·외부 연구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⁵⁾하는 방식을 통해 심층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훈령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서 심층평가 관리기관이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사업·수행기관·연구진 선정 지원,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심층평가 기준·방법 등 기본원칙을 포함한 심층평가 수행지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을 고려할 때, 심층평가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을 별도로 선정·지정함으로써 심층평가 관리 및 수행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수탁기관 간 공모 경쟁을 통해서도 평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개별사업·사업군 심층평가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일괄 위탁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심층평가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하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사업군 선정 및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목적인 차년도 예산안 요구에 평가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기획재

5) 이에 따라 2022년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은 서강대학교 ○○○교수 외 2인과 연구원 내 연구진이 함께 과제를 수행 중이며, 문화예술활성화 사업군은 상명대학교 ○○○교수 외 3인이 수행하고 있다.

6)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2조(심층평가 관리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과제의 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심층평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관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수행기관·연구진의 선정 지원
2. 심층평가 예비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지원
3. 심층평가 운영 및 수행지침에 대한 교육,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 방법론의 적용 등
4. 심층평가의 방향, 일정 및 자료관리 등 평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정부·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주요 통계자료의 목록, 주요 과거평가결과, 연구진 목록 등의 관리
6. 기타 심층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평가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하는 사항

정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심층평가 과제 선정 및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정기화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목적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며,⁷⁾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⁸⁾ 예산안 요구시 해당 부처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⁹⁾ 이를 감안할 때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층평가 수행기관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심층평가를 종료하도록 하되 추가적으로 차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가 종료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8월 전에는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이전에 평가가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에만 당해연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종료되었을 뿐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주제가 선정되고 이후 차년도까지 심층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에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에는 신규과제를 2022.11.28.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2023년 9월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신규과제를 하반기에 착수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수행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이월이 반복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

7)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3조(심층평가의 목적)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9)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지출성과 제고방안) ②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에 조기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심층평가 과제 선정 및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정기화함으로써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¹⁾ 및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²⁾은 대한민국 정부와 녹색기후기금 간 협정에 근거하여 녹색기후기금에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GCF의 초기재원 출연금 1억 달러 중 약속어음 4,200만 달러의 현금화를 위한 사업(국고채무부담행위)과 1차 재원보충에 대한 출연금 2억 달러 중 현금공여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2회계연도에는 초기재원에 대한 협정에 따른 약속어음에 대한 현금화 101억 6,100만원과, GCF 1차 재원보충에 대한 현금 공여분 2,426만 달러에 해당하는 33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연도 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27,438	27,438	-	5,916	33,354	33,069	-	285	42,905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국고채무부담행위)	10,161	10,161	-	-	10,161	10,160	-	1	10,16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Operation Entity)로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금으로, 2010년 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어 설립·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GCF 사무국을 유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133-330

2) 코드: 일반회계 3133-331

치(인천 송도)하였으며, 현재 제4기 이사진으로서 활동 중이다.

정부는 GCF 유치국 및 공여국으로서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초기재원 1억 달러 공여를 약정하였다. 공약 이행을 위해 GCF와 2018년까지 현금공여 5,800만 달러(사무국 운영비 연 100만 달러 포함) 및 2019~2022년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³⁾ 4,200만 달러 발행에 합의하여 2022년까지 1억 달러 출연을 완료하였다. 정부는 2019년 UN기후정상회의에서 GCF 1차 재원보충에 2억 달러 출연을 약정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GCF와 2020~2023년 동안 현금공여 8,400만 달러 및 2024~2027년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 1억 1,600만 달러 발행에 합의하였다. 2023년 4월말 기준 정부는 GCF에 총 1억 8,400만 달러(초기재원 1억 달러, 1차 재원보충 8,400만 달러)를 공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GCF 출연 현황]

(단위: 만 달러)

구 분	2012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약정 금액		10,000						20,000			
사무국 운영비	316	100	100	100	100	200	-	-	-	-	-
현금 공여	-	1,000	950	1,000	1,050	884	-	422	2,226	2,426	3,326
약속어음 발행	-	-	-	-	-	4,200	-	-	-	-	11,600
(현금화)	-	-	-	-	-	-	1,100	1,100	1,100	900	-
누적 공여액	316	1,416	2,466	3,566	4,716	10,000	10,000	10,422	12,648	15,074	30,000

주: 2012~2022년은 결산,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GCF는 미래 현금화 조건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발행도 공여로 인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하여 이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GCF에 현금공여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해 향후 2차 재원보충 시 연내 분할지급 등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공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된 기획재정부 - GCF - 세계은행(WB)⁴⁾ 공여협정에 따라 2022년 현금공여분 2,426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재정으로 지급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에 27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1,131원/\$)보다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⁵⁾으로 부터 59억 1,600만원 이용 증액하여 총 330억 6,900만원⁶⁾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2022년 9월 ~ 12월 간 5차례 분납하여 환차손을 최소화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의 빠른 경제성장세,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2022년 환율 상승(달러화 강세)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⁷⁾, 실제 2022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부터 분납하였다면 환차손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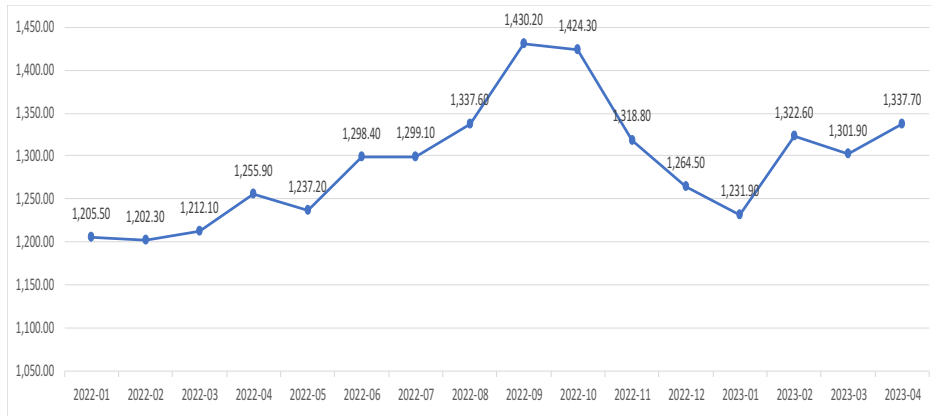
4) 세계은행(WB)는 녹색기후기금의 수탁기관(Trustee)으로, GCF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관련 보고서 작성·제출 등을 수행 중임.

5) 코드: 일반회계 2272-561

6) 평균 집행환율 1,363.1원/\$

7) 국제금융센터, 「2022년 주요 글로벌 통화 환율 전망」, 2021. 12.

[최근 환율 변동 추이(2022년 ~ 2023년 4월)]



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증가 기준
 자료: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재정부는 2017·2018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한 현금공여분을 11월에 지급하였고, 2019년 11월, 2020년 12월에 일괄 지급하는 등 주로 하반기에 집중 지급하였는데, 2022년에도 하반기 일괄 지급을 계획하였다가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9월부터 분납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후기금 현금공여 월별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	-	1,150	-	-	-	12,075	-	13,225
2018	-	-	-	1,085	-	-	11,121	-	12,206
2019	-	-	-	-	-	-	12,418	-	12,418
2020	-	-	-	-	-	-	-	4,690	4,690
2021	-	24,961	-	-	-	-	-	-	24,961
2022	-	-	-	-	4,184	14,136	8,038	6,711	33,069
2023	42,846	-	-	-	-	-	-	-	42,846

주: 2017·2018년은 사무국 운영비(100만 달러)와 재원마련을 위한 출연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미 2023년 2월에 2023년도 현금공여분 3,326만 달러에 해당하는 428억 4,600만원(1,288원/\$ 기준)을 일괄지급하는 등 GCF 현금공여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⁸⁾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환율 변동에 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환율 전망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내 분할지급 등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약속어음 현금화 이행사업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약속어음을 통한 GCF 공여의 경우 GCF와의 협정 체결 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차 재원보충에 관한 GCF 및 WB와의 협상과정에서 약속어음 발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규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국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다.

GCF에 현금화 조건 약속어음으로 출연하게 되면 차후 재정에서 약정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발행시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이 된다. 당초 초기재원 4,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의 경우 2018년 474억 1,400만원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이 되었으며 2022년 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1억 6,000만원을 GCF에 지급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후 1차 재원보충과 관련하여 1억 1,600만 달러(약정 당시 1,411억 7,200만원)⁹⁾에 대해 2024~2027년 현금화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약속어음을 2023년 내 GCF에 제시할 계획이므로, 위 약정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동 금액이 상환될 예정이다.

[GCF 초기 출연 관련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단위: 백만원)

차입 연도	국고 채액	구분	연도별 상환액				계
			2019	2020	2021	2022	
2018	47,414	원금	12,418	12,418	12,418	10,160	47,41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8) 2023. 7. 14.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매매가 기준)은 1,276.20원임.

9) 협정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현금화는 원화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국고채무부담행위¹⁰⁾는 「국가재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¹¹⁾ 국가채무에도 포함이 되는 만큼¹²⁾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GCF에 지급하는 약속어음의 경우 GCF 및 WB와 합의를 거쳐 협정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확정·발생하는 것임에도, 추후 약속어음 발행 시점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공여·약속어음 발행 규모 및 상환(현금화) 기간에 대하여 국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통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방향과는 상충된다고 보여진다.

즉, 약속어음을 통한 GCF 공여의 경우 GCF와의 협정 체결 시점에 이미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함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는 추후 2차 자원보충에 관한 GCF 및 WB와의 협상 과정에서 약속어음 발행이 예상되는 경우 규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국회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다.

10)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12)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현 황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¹⁾은 재정이슈의 국제화에 따른 주변국·선진국의 재정 관련 대응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해외 재정당국 간 신속·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7,9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제재정포럼 개최”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국제재정포럼 개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 재정협력 강화	689	664	-	15	679	650	-	29	689
국제재정 포럼 개최	200	180	-	-	180	180	-	-	20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OECD 회원국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 재정이슈에 대해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국제재정포럼 개최 현황]

회차	개최연 도	장소	주최	주관	주제
1	200 9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경제위기하의 재정의 역할 및 위기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2	201 1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향하여
3	201 3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위기의 시대, 재정관리의 新 패러다임
4	201 5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 -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정립
5	201 6	파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개혁 방안
6	201 7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새로운 경제시대의 재정 역할: 소득주도형 성장 및 혁신
7	201 8	파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OECD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
8	201 9	서울	기획재정부	KDI, OECD	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9	202 1	서울 (온오프라인)	기획재정부	KDI, OECD	COVID19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10	202 2	파리	기획재정부	KDI, OECD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9월 29일 ~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OECD 관계자 및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그리스 등 예산당국 관계자 등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일정]

일 시		상세 프로그램
9.29 (목)	9:00 ~9:30	등록 및 네트워킹
	9:30 ~10:30	개회식 - 2차관 개회사, OECD 사무차장 환영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및 KDI 원장(직무대행) 축사 등
	10:30 ~12:00	(세션1)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 발표 1: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전적 재정 여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OECD가 직면한 도전적 재정 여건 Marc Robinson, OECD 선임고문 발표 3: 한국형 재정준칙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발표 4: 재정준칙의 유용성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예산부국장 토론: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13:30 ~15:00	(세션2)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 발표 1: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Green budgeting)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발표 2: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진화 방향 Ken Cleary,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기후변화 총괄 토론: 정희철 기후환경예산과장,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 표부 공사참사관
	15:30 ~17:30	(세션3)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1: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Alfrun Tryggvadottir OECD 지출검토제도 총괄 발표 2: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PPP) 사례 Marten Blix 전 스웨덴 재무부 국장 발표 3: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Hans Christensen OECD 기업지배구조 부부장 대행 발표 4: 성인지 예산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 토론: Helene Durocher 주OECD캐나다대표부 참사관,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
9.30 (금)	9:30 ~11:30	(패널 토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 OECD의 지출효율화 방안 소개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 토론: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OMB) 예산부국장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
	11:30 ~12:00	폐회식(폐회사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를 위하여 매년 일반용역비 비목의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용역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데, KDI와의 공동개최 및 비용 분담을 감안할 때 KDI·OECD와의 공동개최 관련 비용분담 및 비용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을 맡기거나 KDI에서 고유사업비로 일괄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KDI에 “제8차 국제재정포럼 운영 위탁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후 2022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행사를 대행시켰다. KDI는 포럼 세부 아젠다 설정 및 논의 자료 준비, 주요인사 초청·홍보,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정리 및 비용 정산 등 포럼 개최 관리 등 국제재정포럼 개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반용역비 지급을 통해 추진하는 일반용역의 경우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것임에 반해 국제재정포럼에서 KDI는 축사, 아젠다 설정 및 논의자료 준비 등 공동주관자로서 포럼에 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KDI가 OECD와 국제재정포럼 협약²⁾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기획재정부가 지급한 일반용역비의 부족분(533만원)을 KDI의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³⁾에서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포럼은 KDI의 고유 업무⁴⁾로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행사라고 보인다.

2) 「AGREEMENT BETWEE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THE “KDI”)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THE “OECD”)」에서 KDI는 OECD에 9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3) 2022회계연도 KDI 고유사업 중 연구지원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소계	4,919	4,919	1,035	-	5,954	5,001	953	-
- 기본연구사업비	692	692	210	-	902	815	87	-
- 연구지원사업	4,227	4,227	825	-	5,052	4,186	866	-
2)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827	827	460	-	1,287	586	700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는 한-OECD 국제재정포럼 행사의 주관자로서 KDI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KDI·OECD와의 공동개최 관련 비용분담 및 비용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을 맡기거나 KDI에서 고유사업비로 일괄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2. 경제정책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3. 경제정보 분석·제공 및 경제교육·연수 등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사업 및 연구
4.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종합지원 및 연구
5.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연구
6.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 국내외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자문과 국내외 기관과의 교육·연구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 현 황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사업¹⁾은 공급망 위협의 범정부 협력·관리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는 예비비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53.1%인 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운영	-	-	950	950	505	53.1	-	445	55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탄소중립 이슈 등 공급망 관련 위협에 경제안보의 관점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2022. 3. 14.)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공급망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 추진전략의 수립·이행,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연구개발 지원, 공급망 관련 위험요인의 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²⁾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240-301

2)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재정부에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단은 1개과로 운영 중이며, 5개 부처 1개 기관 소속 12명 중 별도정원 7명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 구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고위나	4급	4·5급	5급	6급	기타
계		12	1	1	1	7	1	1
별도 정원	소계	7	1	1	-	4	1	-
	기재부	3	1	1	-	-	1	-
	농림부	1	-	-	-	1		
	산업부	1	-	-	-	1		
	외교부	1	-	-	-	1		
	행안부	1	-	-	-	1		
지원	기재부	4	-	-	1	3	-	-
근무	수출입은행	1	-	-	-	-	-	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 신청·배정 당시

1.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확보하고, 해당 원재료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여 최종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전반적인 과정(이하 "공급망"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2.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기술 개발, 비축 물량 관리 및 수입 다변화 등 수급안정 전략의 수립·시행
3.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연구개발 지원
4. 국내외 환경·정책·법 제도 변화, 운송 장애 및 자연재해 등 공급망 관련 위험요인의 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급망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6. 공급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
7. 물류·유통·금융 분야 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8. 공급망 관련 국가기관, 민간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
9.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 지원
10. 공급망 관련 대외경제협력
11. 공급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세제 등의 지원
12. 그 밖에 기획단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제정을 전제하여 일반용역비·정책연구비 등의 비목을 계상하였는데,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 집행이 결정되는 것은 시급성·예측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획단이 2022년 3월 14일에 출범함에 따라 일반수용비 1억 2,800만원, 임차료 1억 3,300만원, 일반용역비 1억원, 일반연구비 2억 400만원 및 정책연구비 2억 5,000만원 등 동 사업에 예비비 9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집행액은 5억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일반용역비는 1억원 전액이, 정책연구비는 93.2%인 2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회계연도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사업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운영	2022						2023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일반수용비 (210-01)	-	-	128	128	74	54	14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31	31	16	15	30
- 특근매식비 210-05)	-	-	9	9	5	4	11
- 임차료(210-07)	-	-	133	133	121	12	66
- 일반용역비(210-14)	-	-	100	100	-	100	-
- 기타운영비 210-16)	-	-	3	3	3	-	4
- 국내여비(220-01)	-	-	32	32	27	5	10
- 국외여비(220-02)	-	-	11	11	11	-	37
- 사업추진비(240-01)	-	-	4	4	4	-	5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	22	22	22	-	26
- 일반연구비(260-01)	-	-	204	204	183	21	-
- 정책연구비(260-02)	-	-	250	250	17	233	200
- 공사비(420-03)	-	-	23	23	22	1	23
합 계			950	950	505	445	556

자료: 기획재정부

불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

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 2억원, 기본법 제정 시 홍보비용 등 일반용역비 1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나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관계로 미집행되었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3)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총액으로만 심의할 뿐 사후적으로 승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계상될 필요가 있다.

기획단 운영을 위한 예비비의 경우 2022년 3월에 신설된 조직이므로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예비비 배정 당시 (2022년 3월 23일) 기본법안⁴⁾은 국회에 발의되지도 않았으며,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비비를 신청 및 배정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즉, 기획재정부는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비비에 일반용역비·정책연구비를 계상하여 신청·배정하였으나,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이 결정되는 것은 시급성·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비비 배정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단의 근거규정에 일몰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성, 기본법안 제정경과 및 타 부처와의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조직의 필요성 및 근거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 그 중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은 범부처 차원의 국정과제·사업 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 부처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임시조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조직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2022. 10. 14. 발의)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을 위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임시조직의 업무상 타 부처의 인력의 상시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비별도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의 경우 ①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으로, ② 해당 과제 수행에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별도정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단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대통령 훈령인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탄소중립 이슈 등 공급망 위협의 범정부 협력·관리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임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에는 기획단의 존속기한 또는 규정 자체의 재검토기한 및 일몰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영속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직을 직제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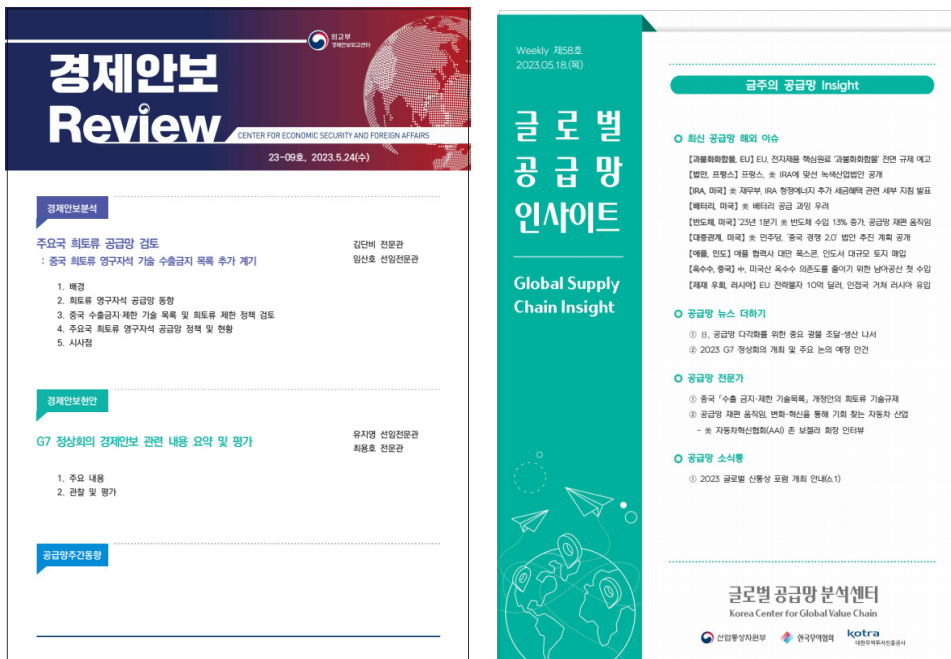
그러나 임시조직 설치 시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훈령에 근거하여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단의 근거규정을 제정할 당시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 심사 중인 기본법안의 논의 진행을 감안하여 정규조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외교부·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부처에서 각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의 총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후에도 국장급 규모의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급망 연구·분석 전문기관이 중복 운영 중이고 향후 지원체계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급망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22년 5월부터 “경제안보외교센터”⁵⁾를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외교 관련 법령·정책·제도 등 동향 및 파급효과 분석 및 전파, 조사 및 대응, 관련 간행물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발간물 「경제안보 Review」를 격주 발간하고 있는데, 주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KOTRA와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운영 중이며 매주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발간하고 있다. 두 기관의 발간물을 살펴보면, 2023년 5월 중국 관련 희토류 공급망 및 G7 정상회의 등 유사한 이슈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경제안보 Review」 및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비교



자료: 외교부 및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5)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정책·제도 등 동향점검, 파급효과 분석 및 전파,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2.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정책·제도 등 동향,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경제안보외교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지원
4.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회의, 행사 등 개최
5. 경제안보 관련 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6. 대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7. 기타 경제안보외교 관련 사항

한편, 2023년 5월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공급망 3법으로 추진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⁷⁾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획단이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시행 및 공급망 관련 협의·조정 등 공급망 관련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현재 경제안보외교센터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의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연구·분석 지원체계가 중복 운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역할 정립과 함께 지원기관 간 업무 조정 등 공급망 정책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춘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2. 8. 2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2023. 3. 9.)

가. 현 황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¹⁾는 기획재정부 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성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146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3억 8,400만원 중 2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18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관운영)	2,872	2,789	14,672	17,384	2,534	14.6	11,866	2,984	2,93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본경비에 예비비 배정 및 이월이 과다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취득비 63억 6,100만원, 공사비 67억 8,900만원, 일반수용비 11억 7,700만원 등 총 146억 7,200만원을 2022년 9월 29일에 배정 받았으나 2023년 3월에 신청사에 입주하였고 공사비·자산취득비 등이 대부분 2023년에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7월 17일 2022년 10월 완공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동 신청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결정하였으며, 2022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면적 배정을 확정하여 2023년 2월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 9일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111-251

[2022년 청사 이전 관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비비 배정액	2022년 말			2023년중(완료)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합 계 (예비비 배정액 대비)		14,672	250 (1.7)	2,575 (17.6)	11,845 (80.7)	11,580 (78.9)	256
운영비(210)	계	1,209	5	155	1,049	1,042	7
	일반수용비 (210-01)	1,177	5	155	1,017	1,010	7
	임차료 (210-07)	32	-	-	32	32	0
건설비 (420)	계	7,102	200	1,126	5,775	5,708	67
	실시설계비 (420-02)	220	188	31	-	-	-
	공사비 (420-03)	6,789	12	1,094	5,683	5,616	67
	감리비 (420-04)	93	-	1	92	92	0
유형자산(430)	계	6,361	45	1,294	5,021	4,830	182
	자산취득비 (430-01)	6,361	45	1,294	5,021	4,830	182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중앙동 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신청·배정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한 결과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측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에 대해서만 예비비의 신청 및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²⁾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고자 배정·집행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배정 시 ① 당초 본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배정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필요최소한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예비비가 예산안에서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국회에서 총액 심의만 받을 뿐 특정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일반사업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에 불가피한 용도로 필요한 수준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확정하였고 당초 계획인 2022년 말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없는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2년 내 공사비 등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전비용 147억 원은 자체예산 충당이 곤란하므로 예비비 편성이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7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일정을 2023년 2월까지로 연기하였는바, 기획재정부가 2022년 9월 29일 예비비 배정 당시 2022년 내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상할 필요는 낮았다고 보여진다. 사무환경 조성사업 설계용역(1개월) 및 사무환경조성공사(60일~77일)의 경우 2022년 내 계약 및 착수가 필요했다고 보이나, 정보통신기반 신청사 이전 공사 및 관련 장비 임차·취득,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구축 등의 경우 2023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도 가능했다고 보인다.

[중앙동 청사 이전 관련 계약 중 2023년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예비비 계약 및 집행				행정절차
항목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1. 운영비				
- 정보화이사, IP체계개선	332	-	332	• 공고일(1차): '22. 12. 15.(유찰) • 공고일(2차): '23. 1. 12. • 계약일: '23. 1. 26.
- 정보화 장비 임차(VPN)	32	-	32	• 공고일(1차): '22. 12. 15.(유찰) • 공고일(2차): '23. 1. 12. • 계약일: '23. 1. 26.
2. 건설비				
② 공사비				
- 네트워크 및 전산실 구축	715	-	715	• 공고일(1차): '22. 12. 15.(유찰) • 공고일(2차): '23. 1. 12. • 계약일: '23. 1. 26.
3. 유형자산				
- 대·국제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1,311	-	1,311	• 공고일: '23. 1. 2. • 계약일: '23. 1. 30.
- 정보통신기반 백본스 위치 등	1,122	-	1,122	• 공고일(1차): '22. 12. 15.(유찰) • 공고일(2차): '23. 1. 12. • 계약일: '23. 1. 26.
- 영상스튜디오 구축	169	-	169	• 공고일: '22. 12. 26. • 계약일: '23. 2. 16.
- E-브리핑 시스템 구축	280	-	280	• 공고일: '22. 12. 28. • 계약일: '23. 2. 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예비비 배정 당시 이미 중앙동 신청사 이전이 연기되었으므로 2022년 내 실시해야 하는 설계용역 및 공사 등 필요최소한 규모의 예비비를 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관련 비용을 모두 배정함에 따라 이월률이 80.7%로 과도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예비비는 총액으로만 국회에서 의결되고 사후 승인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권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시급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비비 신청·배정 시 예측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계약이 다수 발생하였는바, 향후 기획재정부는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무공간 설계 및 공사, 사무환경 물품·장비 구매 등 중앙동 신청사 이전 관련 계약 27건 중 17건(62.9%)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13건에 이르는 등 수의계약 체결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① 계약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³⁾이거나, ②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인 경우⁴⁾, ③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⁵⁾되었거나 ④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⁶⁾에 해당하여 수의계약하였다는 입장이다.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중앙동 청사 이전 관련 수의계약 내역]

계약명	수의계약시 근거	계약일자	계약금액 (백만원)
싸인물 설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2)	2022.12.20.	21
책상유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5) 여성기업	2022.12.23.	55
불용물품처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5)장애인기업	2022.12.30.	19
칸막이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 목(우수조달물품)	2022.12.20.	775
IP세팅,교환기 연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5)여성기업	2022.12.23.	39
전원케이블 설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5)여성기업	2022.12.23.	33
케이블 철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2)	2022.12.27.	20
세종심의실 이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2)	2022.12.23	13
예산심의실 회의시설 이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2)	2022.12.23	16
건축 · 기계 감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5)여성기업	2022.12.20.	52
소방공사 감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5)여성기업	2022.12.20.	40
냉난방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나라장터구매)	2022.12.15.	49
사무용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 목 (혁신장터구매)	2022.12.15.	98
종합상황실 전광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나라장터구매)	2022.12.26.	79
종합상황실 방송 및 음향장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2022.12.28.	57
도서관 서가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2022.12.14.	13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과
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등에 대해 기회를 부여하
고자 함이나, 가격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과다한
집행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쟁입찰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또한,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안내공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 3일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⁷⁾

청사이전 관련 물품구매·용역계약 중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계약은 4건인데 이중 종합상황실 전광판 구매 용역의 경우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공고가 되었다.

[중앙동 청사 이전 관련 계약 중 소의수의계약 절차 준수 대상]

계약명	수의계약시 근거	계약일자	계약금액 (백만원)
싸인물 설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2022.12.20.	21
책상유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여성기업	2022.12.23.	55
건축·기계 감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여성기업	2022.12.20.	52
종합상황실 전광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나라장터구매)	2022.12.26.	7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안내공고를 실시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수의계약 체결의 안내공고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 즉,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이며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은 인건비(110목) 중 현역병사보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210목, 단 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목), 직무수행경비(250목) 등이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보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 비(220)	전체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예산과목	용 도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및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별지 제1호]

9-1.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한 지출 관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에 총 215억 9,327만원을 관서운영경비를 각 관서로 교부하고, 35억 1,731만원을 지출관에게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180억 7,597만원을 관서로 교부하였다.

[2022년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 교부 현황]

(단위: 천원)

총 교부액	총 반납액	실 교부액
21,593,271	3,517,305	18,075,96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고의 관리·운영 및 국가계약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임에도 소관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견되어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운영비(210목) 및 업무추진비(240목)은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²⁾

2)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그러나 기획재정부 일부 관서에서는 세계복권총회 세미나 참가비용으로 1,192만 원을 지급하는 등 관서운영경비의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500만원) 초과 집행 사례]

(단위: 원)

실·국	세부사업명	비목	지급일	지급액	지급용도
기획조정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일반수용비 (210-01)	12. 26.	5,830,000	2022년 4분기 고문변호사 자문료 지출(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예산실	재정운용 협력기관 구축·운영	임차료 (210-07)	12. 29.	5,797,000	예결위 대응 관련 차량 렌터카 지급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수용비 (210-01)	11. 15.	11,921,354	세계복권총회(WLS) 세미나 참가비 지급
국민경제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12. 12.	5,070,650	국외출장(아세안 주요국 협력 강화)관련 여행사 수수료 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 11. 6.>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2007. 11. 6.>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둘째, 관서운영경비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건을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 내로 분할하여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 상 지출절차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3)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4)에 따르면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관의 검토를 통해 해당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기간 동안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임차료 등을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예산실은 동일한 업체에게 12월 29일에 3회로 분할하여 임차료 총 1,10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업체 및 지급일 등을 고려할 때 1인의 업체에게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근거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의 지출 특례인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남용하여 관서운영경비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건을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 내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총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관의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 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022년 관서운영경비 분할 집행 사례]

(단위: 원)

실·국	세부사업명	비목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
예산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임차료 (210-07)	12. 29.	○○○ 관광(주)	4,840,000
					3,795,000
					2,420,000
					계: 11,055,000
예산실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	일반 수용비 (210-01)	11. 10.	(주)○○ 백화점	4,950,000
					4,850,000
					4,950,000
					4,850,000
					4,900,000
					계: 24,500,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2. 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인쇄용역 지출 관행 개선 필요

첫째,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인쇄대금을 집행하면서 동일 업체에 동일한 용도로 같은 날 50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한 사례가 다수 있어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을 동시에 위배하고 있는데, 인쇄용역에 관하여 발간시기 및 발간목적이 유사한 계약 건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고 발간규모가 예상가능한 인쇄물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한편,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계약법」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022회계연도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는 관서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으로 인쇄대금을 집행하면서 동일업체에 동일한 집행용도로 같은 날 500만원 이하로 여러 건 지급하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4월 26일 “중기사업계획 검토자료” 하나의 건명으로 14회로 분할하여 총 5,335만원을 한 업체에 지급하였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외 13건” 명으로 13회로 분할하여 총 5,826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업체에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대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한 사례가 27건 발생하였다.

또한, 위 인쇄용역이 ○○기획⁵⁾이라는 특정 인쇄업체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2021년⁶⁾에 이어 2022년 및 2023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2022회계연도 예산실에서 ○○기획에 지출한 총 인쇄대금은 비관서운영경비 2,948만원(2건) 및 관서운영경비 7억 8,603만원이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 131~135

[2022년 관서운영경비 중 2회 이상 지급한 총 인쇄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한 사례]

(단위: 천원)

인쇄대상(건명)	지급 건수	총 집행액	지급일	업체명
2023 사업별 설명자료 외 19건(23년 법정서류)	20	86,606	11. 4.	(주) ○○ 기획
중기사업계획 검토자료	14	53,345	4. 26.	
2023년 예산안 선심 1,2차 심의자료 외 12건 (경제예산국)	13	53,766	10. 25.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외 13건	13	58,255	7. 29.	
2023년 예산안 선심 1,2차 심의자료 외 12건 (행정예산국)	11	46,696	10. 26.	
2023년 예산안 소위 대비자료 외 10건	11	44,656	12. 9.	
2023년 예산편성관련 재정운용간담회(국정과제 검토)	11	49,938	4. 19.	
2023년 예산안 선심 1,2차 심의자료 외 9건 (사회예산국)	10	43,910	10. 24.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 외 7건 (23년 법정서류)	8	35,155	11. 4.	
2023년 예산안 예결위 참고자료 외 3건(경제국)	7	27,882	12. 29.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재정대응 외 7건	7	32,418	7. 29.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등	6	27,987	4. 18.	
2023년 성인지예산서 기금(23년 법정서류)	5	23,834	11. 7.	
2023년 예산안 선심 1,2차 심의자료 외 4건 (예산총괄국)	5	20,361	10. 24.	
예산안 편성 심의자료 외 15건	5	20,614	8. 31.	
2023년 예산 심의 3차 (경제예산국) 외 3건	4	15,963	11. 21.	
2023년 예산안 선심 1,2차 심의자료 외 12건 (복지예산국)	4	16,929	10. 25.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 외 3건(예산총괄국)	4	15,256	11. 18.	
2023년 예산안 예결위 참고자료 외 3건(사회국)	4	14,395	12. 29.	
예결위 대비 참고자료 외 3건	4	17,023	12. 9.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 및 홍보자료 외 2건	3	13,045	12. 12.	
2023년 예산안 예결위 참고자료 (복지국)	3	12,695	12. 29.	
2023년 예산안 예결위 참고자료 외 3건(총괄국)	3	10,482	12. 29.	
2023년 예산안 예결위 참고자료 외 3건(행정국)	3	11,245	12. 29.	
2023년 예산 3차 심의자료(복지안전예산국) 외 1건	2	7,225	11. 25.	
2023년 예산 심의 3차 등(행정국방예산국) 외 1건	2	7,737	11. 21.	
2023년 예산심의자료 3차 외 1건(사회예산국)	2	6,986	11. 1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인쇄용역을 계약하고 분할 지급을 통해 관서 운영경비로 처리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반한다고 보인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⁷⁾ 및 기획재정부 예규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⁸⁾에 따르면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관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해당 지출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위 인쇄대금 결제 건들은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채권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하나의 건으로 볼 수 있으며, 당초 1개 건을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⁹⁾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¹⁰⁾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8)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 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의 2,000만원 ~ 1억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공익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관행으로 인해 국가의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인쇄물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을 수 있고, 지급일자만 같을 뿐 다른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등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정 첨부서류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인쇄물의 경우 다년간 사례를 감안하여 충분히 필요부수 및 발간 관련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관서운영경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¹¹⁾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인쇄용역에 관하여 발간시기 및 발간목적이 유사한 계약 건은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고, 발간규모가 예상가능한 인쇄물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연간 발행부수 및 발행시기가 예정된 발간물의 경우 연초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발간계약 용역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국고금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및 「최근 경제동향」 인쇄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동일한 업체에 동일 금액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11)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98만원)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650만원)은 일반적인 지출절차로 진행하였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인쇄 및 포장” 용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월간 재정동향」 및 「최근 경제동향」 인쇄용역 지급 현황]

(단위: 천원)

발간물명	세부사업명	지급횟수	월 지급액	총 지급액	지급업체
월간 재정동향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12	(1·2월) 2,365	27,951	○○ 문화사
			(3~12월) 2,332		
최근 경제동향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경제정책국)	12	(1~7월) 2,847.9	34,312	(주)○○ 기획
			(8~12월) 2,875.4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인쇄대금의 총 지급액은 「월간 재정동향」의 경우 2,795만원, 「최근 경제동향」의 경우 3,431만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건에 해당한다.¹²⁾

또한, 두 발간물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제공되고 월 지급액도 일정하며 발간 부수도 매월 결정되어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간 전 일반경쟁입찰의 절차를 따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일반경쟁입찰의 절차에 따라 계약하여 국고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연간 발행부수 및 발행시기가 예정된 발간물의 경우 연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발간계약 용역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국고금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현 황

국세물납주식매각대¹⁾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납입금을 국고(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는 과목으로, 2022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76억 3,5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세물납주식매각대	44,849	44,849	-	44,849	57,635	57,635	-	-	47,475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증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법인의 분류기준 및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환입가능성이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증권에 대한 소각 등 정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세물납증권은 취득 시 물납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²⁾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 감액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 국세물납증권의 대장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업은 325개 종목 중 167개로, 이 중 폐업·파산 등 사유로 장부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종목도 144개에 이른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재무제표상으로도 0원으로 감액처리하고 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3-733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세물납증권 중 장부가액이 0원인 종목 현황(2022년말 기준)]

(단위: 개)

구 분	~1999	2000~2 004	2005~2 009	2010~2 014	2015~2 019	2020~2 022	계
완전자본 잠식 등	-	2	6	8	6	1 ¹⁾	23
폐업·파산 등	9	29	79	24	3	-	144
계	9	31	85	32	9	1	167

주: 1) 2023년 매각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폐업·파산 등을 사유로 감액처리된 종목에 대하여, 폐업·파산중인 법인의 경우에도 추후 환입 가능성 등이 존재할 수 있어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데, 영업 재개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장부상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폐업·파산한 업체, 법원의 법인파산 등 명백하게 물납증권 매각 및 이를 통한 환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³⁾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증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법인의 분류기준 및 검증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종결한 국세물납증권 대상 법인은 21개이다.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①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②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및 ③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¹⁾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수납되어 실현된 일반재산 관련 수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한편,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의 미수납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22년도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수납된 관유물대여료·관유물매각대·변상금 등의 세입은 총 1조 6,709억 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된 미수납액은 8,906억 100만원이다.

[2022년도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국유재산관리기금(수납액)			일반회계(미수납액)			실제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 [B/(A+C)]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예산액	징수결정액 (C)	미수납액	
토지대여료	104,710	137,703	137,703	-	51,680	51,680	72.7
건물대여료	7,729	4,903	4,903	-	7,458	7,458	39.7
토지매각대	1,104,779	1,430,389	1,430,389	-	568,026	568,026	71.6
건물매각대	34,829	39,019	39,019	-	4,347	4,347	90.0
변 상 금	52,679	58,895	58,895	-	259,090	259,090	18.5
합 계	1,304,726	1,670,909	1,670,909	-	890,601	890,601	65.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치선 예산분석관(ezsun@assembly.go.kr, 6788-4687)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등과 관련된 수입을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계상하고 있어 결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수납액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토지·건물의 대여료 및 매각대 등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수납되어 실현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미수납된 금액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통해 발생한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토지매각대 및 건물매각대 등의 미수납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에서는 매년 국유 일반재산 관련 수입을 전액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2022년도의 경우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입의 실제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65.2%에 불과하고 특히 건물대여료와 변상금의 경우 각각 39.7%, 18.5%로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상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결산에서 그 재원이 되는 국유 일반재산 관련 수입의 실제 결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이원화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검사를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의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감사원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제10절 기획재정부 - 제1 총괄 - 1. 검사결과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 노력) 중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등 국유재산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국유재산 매각액 및 대부료 징수 등과 관련한 일부 회계처리를 위탁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 미수채권(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 및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각각 460억 4,214만원, 687억 8,309만원, 5,731억 5,267만원, 38억 3,472만원 및 624억 4,851만원 과소계상되었다.”(p.142)

“한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의 수입을 기금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결산조정분개를 잘못 처리하여 재화및용역제공수익(비배분수익), 제재금수익(비교환수익 등) 및 기타비용(비배분비용)이 각각 527억 5,175만원, 248억 9,345만원 및 383억

4,609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자원조달및이전(비교환수의 등)이 392억 9,91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p.143)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부분은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내역을 정정하려는 취지이고, 감사원이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국유 일반재산 수입의 미수납액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거나 회계처리를 이원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나 처분요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²⁾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유 일반재산 관련 수입의 회계처리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미수납액도 일반회계가 아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감사원은 오히려 2019년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 각 중앙관서가 용도폐지된 일반회계 행정재산을 직접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잘못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시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통보·권고)를 하면서, 일반회계 일반재산 매각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¹⁾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설치된 기금이다.

기후대응기금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해 9월 24일 공포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기후대응기금이 설치·운영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국제협력 등이다.²⁾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5)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기후대응기금 집행 및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전체 지원분야 선정,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등 기금사업을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13개 부처(2022년 기준)에서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을 실제 집행하는 이원 구조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내 기후대응기금센터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 및 사업의 대외평가 등 기금운용·관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³⁾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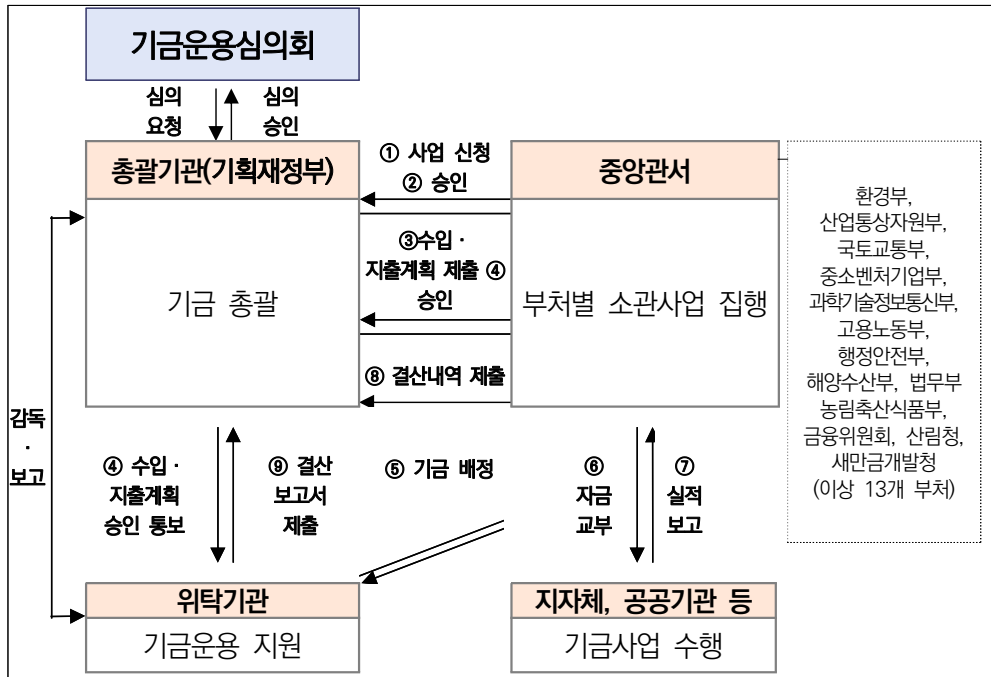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제1조(위탁기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기후대응기금 기본 구조]



자료: 202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2-1. 수입: 배출권 매각대금의 면밀한 추계 및 안정적 수입재원 확보 필요

가. 현 황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수납액은 2조 465억 9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2조 4,594억 2,300만원 대비 83.2%이며 계획현액 2조 1,708억 9,800만원 대비 94.3%이다.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B)	징수결정액	수납액(C)	미수납액	(C/A)	(C/B)	계획액
당초(A)	수정							
2,459,423	2,170,898	2,170,898	2,052,432	2,046,509	5,923	83.2	94.3	2,486,723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배출권 매각대금이 당초계획액 대비 43.6%인 3,188억 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계획액 대비 70.9%인 7,631억 5,4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4,601억 500만원으로 당초계획액 대비 302.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항목			계획		결산 (C)	(C/A)	(C/B)
			당초 (A)	수정 (B)			
합 계			2,459,423	2,170,898	2,046,509	83.2	94.3
자체 수입	배출권 매각대금		730,584	447,639	318,826	43.6	71.2
내부 수입	일반회계	교통·에너지 · 환경세	1,076,635	763,154	763,154	70.9	100.0
	교통시설특 별회계	여유재원	300,000	300,000	300,000	100.0	100.0
	전력산업기 반기금	여유재원	200,000	200,000	200,000	100.0	100.0
	공공자금관 리기금	예수금	152,204	460,105	460,105	302.3	100.0
보전 수입	여유자금 회수		-	-	-	-	-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용자원금 회수 등		-	-	4,424	순증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수입에 대하여 경제여건 및 시장동향 등을 바탕으로 배출권 매각대금 등을 포함한 수입을 면밀히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대금 관련 수입을 산정할 때 경제여건 및 배출권 거래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체수입이 과다추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 관련 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배출권 매각대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 등⁴⁾에 따라 국가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면서 발생하거나,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 공급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2항5)에 근거하여 매각대금 전액이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에 계상된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유상할당 수입금이 7,305억 8,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① 유상할당 경매 예상 공급량을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1~2025년)」 기간 중 1단계(2021~2023년)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사전할당량에 법정 유상할당 비율 10%⁶⁾를 고려하여 3년간 유상할당 규모를 총 7,741.5만톤으로 보아 그 중 1년분에 해당하는 2,580만톤으로 전망하고, ② 예상 공급단가를 2020년 배출권 거래시장 내 평균 배출권 가격 29,026원/톤에서 2.5% 할인한 28,317원/톤으로 예상하면서, ③ 낙찰률을 100%로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22년 유상할당배출권이 계획 대비 52.9%인 1,364.1만톤 거래되었으며, 공급단가도 계획 대비 82.1% 수준인 23,243원/톤에 불과하였다.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22년 배출권 매각대금 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천톤, %, 원/톤, %)

구 분	2022계획(당초) (A)	2022 결산 (B)	(B/A)
유상할당배출권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730,584	316,714 ¹⁾	43.4
- 공급량	25,800	13,641	52.9
- 공급단가	28,317	23,243	82.1
- 낙찰률	100	58.7 ²⁾	-
예비분대여상환료	-	2,112	순증
- 예비분 물량	-	268	순증
- 예비분 단가	-	7,881	순증
계	730,584	318,826	43.6

주: 1) 총 거래대금 317,063백만원에서 거래소 수수료 0.11%를 제외한 규모임

2) (월별 낙찰량의 합 / 월별 입찰량의 합)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할당대상업체의 무상할당 배출권 이월제한⁷⁾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배출권 물량 감소 충격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도 경기침체 전망 등에 따라 2022년 현물시장에 배출권 잉여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경매를 통한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배출권 전체 종목 일평균 거래량 및 할당 배출권 가격]

(단위: 톤, 원)

구 분	2015말	2017말	2019말	2020말	2021말	2022말
일평균거래량	5,133	60,634	68,940	84,492	104,313	105,428
(전년대비)	-	-	-	22.6%	23.5%	1.1%
할당배출권	12,000	20,000	38,100	23,000	35,100	16,000
(전년대비)	-	-	-	△39.6%	52.6%	△54.4%

자료: 한국거래소, 「2022년 배출권시장 거래 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7)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2021~2023년 간 배출권보유자는 각 차수(2021~2022년, 2022~2023년) 이행연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만큼만 배출권 이월이 가능하다.

8) 환경부는 태풍 피해로 인해 특정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배출권 경매시장이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공급단가 17,050원/톤으로 하락함에 따라 그 해 2~5월 경매시장을 휴장하였음에도 2021년 6월 11,450원/톤으로 하락하였고, 2021년 9월 경매 공급단가가 27,400원/톤으로 상승은 하였으나 응찰률이 83.7%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580만톤 계획에 대해 28,317원/톤 단가로 7,305.8억원으로 수입을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추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2023년 들어 심화되었는데, 4월 말 가격이 13,200원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 5월 및 6월 경매시장 휴장 조치를 단행하였다.

[2022 · 2023년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단위: 톤, %, 원/톤, 백만원)

연	월	입찰수량	응찰수량	비율 ¹⁾	낙찰수량	낙찰가격	총 낙찰금액
2022	1	1,000,000	424,800	42	400,000	35,250	14,100
	2	1,000,000	302,000	30	300,000	34,200	10,260
	3	1,000,000	273,600	27	272,600	24,100	6,570
	4	1,000,000	794,200	79	792,200	20,550	16,280
	5	2,500,000	1,056,000	42	1,055,000	19,700	20,783
	6	2,500,000	993,900	40	993,900	17,950	17,840
	7	2,300,000	2,562,500	111	2,300,000	24,000	55,200
	8	2,300,000	2,775,000	121	2,225,000	27,300	60,742
	9	2,375,000	2,114,000	89	2,014,000	26,900	54,177
	10	2,661,000	1,341,200	50	1,341,200	22,250	29,842
	11	2,300,000	567,600	25	567,600	19,350	10,983
	12	2,300,000	1,380,000	60	1,380,000	14,700	20,286
	계	23,236,000	14,584,800	62.8	13,641,500	23,243	317,063
2023	1	1,000,000	643,000	64	643,000	12,900	8,295
	2	1,000,000	642,000	64	642,000	12,750	8,185
	3	1,000,000	699,400	70	694,400	12,700	8,819
	4	1,000,000	806,500	81	806,500	13,200	10,646
	계	4,000,000	2,790,900	69.8	2,785,900	12,902	35,945

주: 1) 비율은 (응찰수량/입찰수량)임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ets.krx.c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배출권 거래시장은 경제여건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 현물시장 및 경매시장이 정착 중인 현 상황에서는 유상할당 배출권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으로는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경매 예상 공급량 2,060만톤, 예상 공급단가 27,000원, 예상 낙찰률을 70%로 계상하여 3,893억 4,0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였으나, 2023년 6월 기준 총 매각대금이 359억 500만원에 불과하여 2022년과 동일한 수입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대금 관련 수입을 산정할 때 경제여건 및 배출권 거래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체수입이 과다추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세입 결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산 차액이 동 기금의 다음연도 수입에 이입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연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마련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탄소중립기본법⁹⁾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로 정하고 있다.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 계획 1조 766억 3,500만 원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631억 5,4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¹⁰⁾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4조 4,783억원 감액정정한 것에서 기인한다.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10) 2021. 11. 12. ~ 2022. 4. 30.: △20%

2022. 5. 1. ~ 6. 30. : △30%

2022. 7. 1. ~ 12. 31. : △37%

[2022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및 기후대응기금 전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당초 계획	2022년 제2회 추경	2022년 결산	2023 당초계획
배분율	7%			
교통·에너지·환경세 계	153,805	109,022	111,164	111,471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	10,766.3	7,631.5	7,631.5 ¹⁾	7,803.0
(일반회계 전입금)	-	-	-	4,419.6

주: 1) 기후대응기금에 전입된 세입규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022년 세입결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10조 9,022억원 대비 2,142억원 많은 11조 1,164억원으로, 기후대응 기금으로의 전입금은 7,781.5억원(11조 1,164억원 × 7%)이 되어야 하나 2022년 7,631.5억원을 수입에 반영한 후 149억 9,400만원의 추가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8%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으면서 전입액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법적 근거¹¹⁾가 있는 것과 달리,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반회계 전입금 정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이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 추가 예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¹²⁾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이 기후대응기금의 다음연도 수입에 이입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이 본래 2003년말이었었는데, 현재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이 2~4년 연장되어 왔으며 2021년말에도 일몰 예정

1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각 계정 간의 자원 배분 등) ③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2)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후대응기금은 4,601억 5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였으며, 51억 5,500만원의 예수이자 발생하였다.

인 상황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이 기후대응기금 뿐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에 전입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¹³⁾에서 중장기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세원 마련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입액	153,030	155,526	153,349	145,627	139,379	165,984	111,16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셋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과 관련하여서도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2,000억원을 전입받았다. 동 전입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나,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잔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3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역시 안정적인 세입기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잔액]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계획
교통시설특별회계	12,119,358	10,765,455	6,326,454	840,636
전력산업기반기금	3,960,000	3,150,000	1,180,000	280,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에 신설하면서 배출권 거래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세원 확보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13)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세입(총계기준) 16조 7,037억원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의 전입금(68%)은 741억 3,500만원으로, 세입의 44.4%를 차지한다.

등을 감안하여 기금 수입을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전입금에 관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2. 지출: 자원없는 지출 이월 최소화 필요 등

가. 현 황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계획현액 2조 1,708억 9,800만원 대비 94.3%인 2조 465억 900만원이다. 기후대응기금 지출 중 주요사업비는 2조 163억 7,1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51억 5,600만원, 여유자금운용 226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다.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2,459,423	2,170,898	2,170,898	2,046,509	94.3	69,429	77,628	2,486,723
주요사업비	2,353,953	2,162,967	2,162,967	2,016,371	93.2	69,349	77,247	2,454,418
기금운영비	2,220	2,434	2,434	2,314	95.1	80	40	2,698
내부지출 (공자예수이자)	1,979	5,497	5,497	5,156	93.8	-	341	17,418
보전지출 (여유자금운용)	101,271	-	-	22,668	순증	-	-	12,189

자료: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은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16.8% 감소함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28개 지출사업(비통화금융기관예치 제외)의 기금운용계획을 감액 변경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186억 8,100만원을 추가로 예수받아 총 4,601억 500만원을 예수하였다.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 내역(2022. 12. 8.)]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감액분	연번	사업명	감액분
1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4,415	15	노동전환 지원금	2,500
2	그린교정시설조성	1,700	16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650
3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650	17	산림탄소흡수원복원	700
4	스마트생태 공장구축	2,172	18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9,320
5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사업	470	19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 진출지원	413
6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371	20	지역에너지센터지원	500
7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12,250	21	창업성장기술개발(R&D)	630
8	친환경설비투자	10,000	22	선박온실가스감축지원	502
9	친환경경제 사회기반구축	21	23	건물수송부문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9
10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6131-600)	350	24	목표관리제(건설업)	10
1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6433-400) ¹⁾	435	25	목표관리제(교통)	5
12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2,616	26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616
13	도시생태축복원사업	3,865	27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25,000
14	습지보전관리	6,000	28	목표관리제(건축물)	5

주: 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6131-400)이었으나, 2023년 예산안 편성부터는 탄소중립기반구축 프로그램(6400)으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 지출 측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설치 첫 해부터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지출의 추계정확도를 제고하고 차년도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없는 지출 이월 발생을 지양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각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을 감액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잉여금 부족으로 지출계획만 이월하고 그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소위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없는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						
	당초 계획액	수정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재원없는 이월액	불용액
기후변화협약대응 (6131-302)	12,114	12,114	12,114	12,013	50	50	51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 (6132-500)	27,587	23,172	23,172	19,088	3,648	2,748	436
그린뉴딜유망기업100 (6231-601)	23,700	23,700	23,700	21,200	2,500	2,500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유자지원 (6232-400)	150,000	91,200	91,200	55,200	36,000	36,000	-
지역에너지센터지원 (6331-308)	5,000	4,500	4,500	685	841	841	2,974
합 계	-	-	-	-		42,139	-

자료: 기획재정부

재원없는 지출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가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⁴⁾에 반하는 것이나 기금의 경우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보다는 다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원없는 지출 이월로 인해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차년도 지출규모를 확대하게 되므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다음연도 재원을 소모하므로 연례적으로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금별 지출사업 집행에 있어 수입재원 없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 첫 해부터 재원없는 지출 이월이 발생한 것은 연례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재원없는 지출 이월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지출의 추계정확도를 제고하고 차년도 집행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없는 지출 이월발생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사업에 대하여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당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존 다른 회계·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이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¹⁵⁾를 근거로 하여 타 부처 회계 및 타 기금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이관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배출권 매각수입 등 기금 수입원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 사업을 중심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금의 의의¹⁶⁾를 감안하여 “탄소중립 재정사업”과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발굴, 이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결과, 기후대응기금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관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나타났다.

①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¹⁷⁾의 경우, 2020~2021년에 이월과 불용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22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면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에 기인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시공·물품 지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¹⁸⁾

더욱이, 2023년부터는 동 사업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금(909억 7,500만원)을 받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운용계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후략)

16)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7)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401(사업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1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166~169 참고

획안의 별도 작성 및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 관리구조가 복잡해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간 집행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② “탄소중립그린도시”¹⁹⁾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에 신설되고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²⁰⁾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개별 특별회계에도 편성된 사례가 나타났다. 위 사업의 경우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통합하는 것이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인다.

[기후대응기금 및 타 회계 간 유사사업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기후대응기금					특별회계			
세부 사업명	사업 수행 기관	2022년		사업내용	회계명	세부 사업명	2022년	
		계획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탄소중립 그린도시	환경부	1,920	960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국고보조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스마트 그린도시	11,265	10,02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토 교통부	19,801	19,801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그린리모 델링 활성화	11,000	7,588

자료: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③ “도시생태축복원사업”²¹⁾ 및 “습지보전관리”²²⁾의 경우 각각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분야로 이관되어 집행되었으나,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의 목적은 도시 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자생·고유종 재정착 유도, 도시의 쾌적성 증대 및 도시의 자기치유 능력 복원이며, 습지보전관리 사업의 목적은 주기적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한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이므로, 기후대응기금보다는 본래 편성되었던 환경개선특별회계²³⁾에 계상되는 것이 목적상 적절하다

19)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1-302(사업수행기관 - 환경부)

20)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2-300(사업수행기관 - 국토교통부)

2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3-401(사업수행기관 - 환경부)

22)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3-403(사업수행기관 - 환경부)

고 보인다.

즉,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개별 세부사업 중 수입 부족에 따라 사업효과가 저조하거나 유사사업이 집행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기존 타 특별회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여 반드시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낮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 또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을 대상으로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2-3. 기후대응기금 관리·운용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가. 현 황

인건비²⁴⁾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 위탁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계획현액 15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기금운영비²⁵⁾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 및 수탁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계획현액 9억 800만원 중 7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계획액 중 민간위탁사업비는 6억 9,0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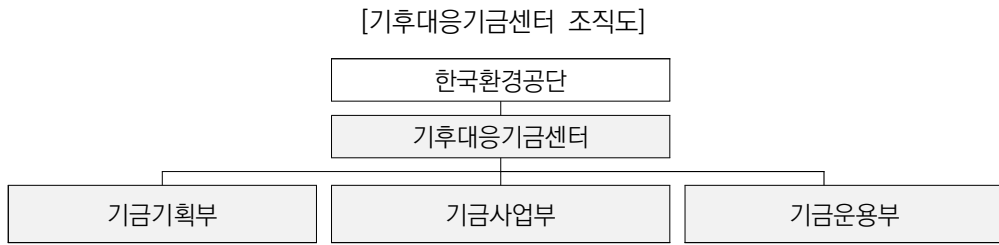
구 분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인건비	1,312	1,526	-	-	1,526	1,526	-	-	1,926
기금운영비	908	908	-	-	908	788	80	40	772
민간위탁 사업비 (320-02목)	690	690	-	-	690	690	-	-	559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이하 “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기획재정부고시)에 근거하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2022년말 기준 3개 부서 27명 정원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자산운용 및 사업의 성과관리,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4) 코드: 기후대응기금 7177-101

25) 코드: 기후대응기금 7177-201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센터 인력 현황(2022년말 기준)]

구 분		계	직급별 인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7	1	3	8	6	7	2
현 원	계	21	1	3	5	6	4	2
	기금기획부	8	1	1	2	2	2	-
	기금사업부	8	-	1	1	3	2	1
	기금운용부	5	-	1	2	1	-	1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한국환경공단(기후대응기금센터)와 위탁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시에 근거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위탁경비가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하는 한편, 위탁기관은 위탁계약 이행 장치로서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며, 위탁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센터 간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계약 또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위탁이 민간위탁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보다 개별법 및 시행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²⁶⁾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서 위탁관리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지정 고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위탁계약(협약)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기획재정부고시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도 위탁계약 및 그에 근거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²⁷⁾ 및 「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20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과 동일하게 개별 법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면서도, 2021년 지침과 달리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법정·지정·계약 위탁 등 위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계약(협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목적, 비용, 기간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록 2021년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한국환경공단(기후대응기금센터)이 수탁기관으로 법정 지정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간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이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첫 단계로, 이에 근거하여 비용 규모, 관리·감독, 사후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비용, 기간 및 수탁기관의 의무, 지휘·감독 및 의무이행장치 등을 포함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¹⁾은 철강, 정유, 시멘트 등 12대²⁾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및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계획현액 912억원 중 552억원을 집행하고 360억원을 이월하였다.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용자 사업비 600억원을 감액하고, 이차보전 사업비 12억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58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원 없는 이월 360억원이 발생하였다.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150,000	91,200	0	0	91,200	55,200	36,000	0	147,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2년에 2차례에 걸친 사업공고에서 총 72건의 프로젝트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관리기관의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총 42건의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 중 39건에 대해 용자자금을 추천하였고, 3건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차보전 방식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용자신청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하였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400

2) 12대 업종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섬유·제지, 전기·전자, 기계, 조선, 바이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동 사업에서는 2022년에 39개 용자추천 기업 중 은행대출 계약이 체결되어 자금이 인출된 26개 기업에 대해 평균 20억 7,700만원씩 총 540억원을 용자 지원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시행된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3개 이차보전 추천 기업 중 1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며 최종적으로 2개 기업에 6억원씩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였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내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주요 내용	계획액	
		현액	결산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 기타민간용자금 : 54,000백만원 (26개사×2,077백만원)	90,000	54,000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 : 1,200백만원 (2개사×600백만원)	1,200	1,2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용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 중 용자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를 기업별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에서는 대출잔액(대출총액 - 상환액)에 이차보전율(2.0%)을 정률로 적용한 이자비용을 최대 10년간 프로젝트당 연 10억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지원융자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12대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 - 기술·제품·공정개발 및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지원규모		· 기업 당 투자금액의 50~100%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지원조건	융자지원	·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0년 융자 - 최대 500억원, 이자율은 공공자금 대출금리 - 2.0%p
	이차보전	· 최대 10년간 이차보전 지원 · 이차보전금 상한: 프로젝트 당 연 10억원 - (대출총액 - 상환액) × 이차보전율(2.0%p)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2022년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사업 목표 대비 효과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단순 교체하는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에서는 신청 대상 프로젝트별로 적합성과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동 사업에서 2022년에 지원한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융자금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살펴보면, 총 26건의 프로젝트 중 융자금 당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tCO₂eq/백만원)이 2.0 미만인 프로젝트가 12

개, 2.0 이상인 프로젝트가 14개로 나타났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022년 선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상 2023~2032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근거]

총융자액당 온실가스감축량 (tCO2eq/백만원)	용자건수 (건)	총융자액 (백만원)	2022년 융자액 (백만원)	연간온실가스감축량 (tCO2eq)
2.0 미만	12	62,954	36,769	27,192
2.0 이상	14	61,370	15,916	25,605,959
전체	26	124,324	52,685	25,633,151

주: t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경험적 원단위(tCO2eq/백만원)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존 유사 사업인 클린팩토리구축 사업(2020~2021년)과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2021년)의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2.071tCO2eq/백만원으로 도출하였다. 동 사업에서 2022년에 지원한 26개 용자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사업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인 2.071 (tCO2eq/백만원) 보다 낮은 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12개였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근거]

연도	사업	지원금액 (백만원)	온실가스감축량 (tCO2eq)	경험적 원단위 산출계수 (tCO2eq/백만원)
2020	클린팩토리구축 사업	2,474	3,472	1.403
2021	클린팩토리구축 사업	16,146	33,148	2.053
	청정제조기반구축	2,232	6,561	2.940
합계		20,852	43,181	2.071

주: t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09.02

[2022년 용자 지원건별 온실가스감축 기대치 현황]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분	분야	총민간 투자액	총 용자액 (A)	2022 용자액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B)	총용자액 당 온실가스 감축량(B/A)
용자	석유화학	643,779	17,450	2,260	240,890	13.8
용자	섬유	28,108	24,590	15,690	5,053	0.2
용자	자원순환	5,030	5,000	576	733	0.1
용자	자원순환	10,219	6,620	513	30,110	4.5
용자	전기전자	16,500	9,894	9,894	2,194	0.2
용자	자원순환	9,374	7,556	3,000	11,765	1.6
용자	기타	1,992	600	300	252,991	421.7
용자	에너지 효율향상	4,300	2,300	300	3,026	1.3
용자	전기전자	1,200	1,200	1,200	105,000	87.5
용자	CO ₂ 활용	1,000	1,000	400	1,224	1.2
용자	디스플레이	3,300	3,269	2,832	1,711	0.5
용자	수소 생산	10,000	3,900	900	4,542,966	1,164.9
용자	CO ₂ 저장	3,250	3,250	150	951	0.3
용자	에너지 전환	500	500	251	3,648	7.3
용자	제지	7,840	5,000	780	1,897,240	379.4
용자	CO ₂ 활용	6,000	3,145	1,727	77	0.02
용자	비철금속	150	150	100	1	0.01
용자	섬유	3,000	2,500	1,900	207	0.1
용자	Zero 에너지건물	1,500	1,000	1,000	23,220	23.2
용자	자원순환	2,466,255	2,400	300	78,577	32.7
용자	자원순환	2,110	300	200	250	0.8
용자	자동차	1,000	1,000	500	826,039	826.0
용자	CO ₂ 포집	12,500	12,500	3,127	256,608	20.5
용자	이차전지	11,861	7,000	3,337	272,092	38.9
용자	Zero 에너지건물	500	500	500	43,066	86.1
용자	이차전지	13,500	1,700	948	17,033,512	10,019.7

- 주: 1. 총용자액은 2022년 대출승인금액, 2023년 용자 신청금액, 2024년 용자신청 금액을 합산한 액
수로 2023년 용자금액과 2024년 용자금액은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2022년 용자액은 2022년 실적행액 기준
3.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022년 선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상 2023~2032년 온실가스 감
축예상량의 평균값으로 산출
4. tCO₂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2년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용자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용자금 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 기대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첫해에 전담기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용자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용자금 집행 과정에서 자금 집행용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총 39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용자 추천을 하고, 3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결정하였다. 용자의 경우 2022년에 총 26건의 프로젝트에서 용자금이 인출되어 용자 지원이 시행되었고, 이차보전은 2건의 프로젝트에서 이차보전 지원이 시행되었다.

2022년 용자금이 인출된 26건의 프로젝트 중 1건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금실태 조사에서 시설투자 목적의 자금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용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동 프로젝트는 2022년에 총 29억 3,200만원의 용자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6월 현재 용자금 환수를 위한 법률검토 중으로 환수범위에 따라 환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22년 자금지원 중단 결정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tCO₂eq)

구분	분야	총민간 투자액	총 용자액 (A)	2022 용자 시행액	2022 용자 회수액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B)	총용자액 당 온실가스 감축량(B/A)
용자	디스플레이	3,300	3,269	2,832	검토중	1,711	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된 사업이나, 사업 착수 첫 해에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융자금 집행 과정에서 자금용도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세입부족으로 인한 불용 문제

가. 현 황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¹⁾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열·창호·보일러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2022년 계획현액 868억 9,800만원 중 70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61억 3,100만원을 이월, 106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86,898	86,898	0	0	86,898	70,121	6,131	10,646	90,97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일반 저소득 가구나 아동·노인·장애인이용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천서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한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 가구별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실사 후 창호·단열·바닥공사 등의 시공을 하거나 노후보일러 교체와 같은 물품지원,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지원대상 가구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시공 및 물품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21년까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서는 2022년에 2만 9,444가구를 대상으로 시공·물품을 지원하여 56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401

는 1만 8,641가구(63.3%), 차상위계층 가구는 5,588가구(19.0%),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는 5,215가구(17.7%)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2022년에 총 3만 6,235가구를 지원하여 89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공·물품 지원에 2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 외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에너지진단에 5억원, 사업운영비로 6억 4,900만원, 한국에너지재단 인건비 등 간접비로 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가구당 최대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2022년에는 가구당 평균 195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은 2022년에 시설별로 평균 770만원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2022년 집행 현황]

구분	집행 내용
시공·물품 지원	· 2.9만 가구 × 195만원 = 56,727백만원 · 326개소 시설 × 770만원 = 2,507백만원
냉방지원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3.6만 가구 × 25만원 = 8,920백만원
에너지진단	· 사업효과 분석 및 진단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실태조사 등 500백만원
사업운영비	· 현장점검, 콜센터 운영 등 649백만원
간접비	· 사업수행전담인력 인건비 76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은 2022년 교부액 701억 2,100만원 중 694억 3,200만원을 실집행하고 6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기관	사업기관 실집행(2022.12 기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한국에너지재단	70,121	0	70,121	69,432	0	68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전년 대비 지원 가구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계획현액 868억 9,800만원 중 106억 4,600만원을 불용하고, 61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다. 불용은 동 사업의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동 사업의 2022년 불용과 이월로 시공·물품 지원예산 집행액은 2021년 700억 3,600만원에서 2022년 592억 3,4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원가구는 2021년 3.3만 가구에서 2022년 2.9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냉방 지원은 에어컨 등의 구입비 절감을 통해 지원예산 집행액이 2021년 94억 1,500만원에서 2022년 89억 2,0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원가구는 2021년 3.5만 가구에서 2022년 3.6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시공·물품 지원	가구수	3.3만	3.3만	2.9만
	지원예산	67,900	70,036	59,234
냉방 지원	가구수	2.9만	3.5만	3.6만
	지원예산	6,900	9,415	8,920

주: 2020~2021년 지원예산은 실집행액 기준, 2022년은 결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총 8,085억원이 지원되었다. 2007~200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2009~2011년에는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2~2021년에는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자원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2008년	2009~2011년	2012~2021년	2022년	합계
재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복권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기후대응 기금	-
예산	385	772	6,060	868	8,08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함께 에너지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된 2020~2021년에는 이월과 불용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다. 2022년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되며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불용이 발생하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시공·물품 지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20~2022회계연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재원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0	에특회계	76,665	76,665	76,665	76,665	0	0
2021	에특회계	86,898	86,898	86,898	86,898	0	0
2022	기후기금	86,898	86,898	86,898	70,121	6,131	10,64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대응 기금은 2022회계연도에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타경상 이전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 부족이 발생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주요 세부사업	주요수입 내용	계획액		결산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유상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수입 등	730,584	447,639	318,826
일반회계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	1,076,635	763,154	763,154
특별회계전입금	교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00,000	300,000	300,000
기금전입금	전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00,000	200,000	200,000
총 계		2,459,423	2,170,897	2,046,509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에 기금 수입 부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후대응기금의 139개 사업성 세부사업 중 30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감액 조정하였다. 그리고 지출 조정 이후에도 수입액 부족이 발생하여 5개 사업에서 재원 없는 이월과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였다.

[2022년 기후대응기금 내 사업 중 재원없는 이월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수행 부처	2022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	이월	불용
		당초	수정				
기후변화협약대응	산업부	12,114	12,114	12,114	12,013	50	50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	행안부	27,587	27,587	23,172	19,088	3,648	436
그린뉴딜유망기업100	중기부	23,700	23,700	23,700	21,200	2,500	0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산업부	150,000	91,200	91,200	55,200	36,000	0
지역에너지센터	산업부	5,000	5,000	4,500	685	841	841

자료: 기획재정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수행한 첫 해에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으로 시공·물품 지원 가구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예산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갖추지 못한 기후대응기금으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

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기존 재원인 에특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2조2)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는 에너지복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 동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대응기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복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2021년 이전과 같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에특회계의 경우도 수입 부족분을 전력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에특회계 수입 확충 방안 없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기후기금에서 에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은 재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지자체 수요 및 사업 실효성 부족 문제

가. 현 황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¹⁾은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계획액 45억원 중 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2022년 8월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계획현액을 당초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감액 수정하였다.

[2022회계연도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5,000	4,500	0	0	4,500	686	841	2,973	4,9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는 기초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 지역 대학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분야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기획,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별로 최대 1억원을 1년간 지원하며, 센터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정부 보조금과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한다. 동 사업은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계획이 있는 기초지자체나 지자체 컨소시엄²⁾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1-308

2)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역에너지센터에 해당한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컨소시엄은 기초지자체가 대표 지방자치단체로서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야 한다.

동 사업은 2022년에 25개 신규 설립 지역에너지센터와 20개 계속 운영 지역에 에너지센터에 평균 1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용 수요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2022년에 2개 신규 설립 지역에너지센터와 6개 계속 운영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원하며, 2022년 계획현액 45억 원 중 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지역에너지센터와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지역 에너지센터는 2022년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지방비 매칭 준비 부족으로 예산 이 교부되지 못하고 지원 예산 8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2022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및 집행 내용	집행액
계획	· 25개 신규 지원 지역에너지센터 × 200백만원 × 50% · 20개 계속 지원 지역에너지센터 × 200백만원 × 50%	4,500
집행	· 2개 신규 지원 지역에너지센터 × 135.6백만원 × 50% · 6개 계속 지원 지역에너지센터 × 183.3백만원 × 50%	68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분석의견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신규 수요 부족 및 기존 사업 참여 기초지자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22년에 예산 불용이 크게 발생하였고,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목적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25개 신규 지역에너지센터와 2021년에 운영을 시작한 20개 지역에너지센터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었다. 신규 지역에너지센터 선정을 위한 2022년 8월 1차 공고에서는 3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고, 2022년 9월 2차 공고에서는 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2021년에 지원한 20개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센터 중 7개가 2022년에 사업을 포기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공고 및 선정 현황]

차수	공고일	신청 지자체	선정 지자체	협약체결 지자체
1차	2022.08.18.	3개(울진군, 영동군, 천안시)	5개 기초 (436백만원)	5개 기초 (436백만원)
2차	2022.09.23.	2개(익산시, 서울 은평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2022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너지센터는 신규 5개 센터와 계속 지원 13개 센터 등 18개 센터였다. 이 중 2022년 11월에 협약이 체결된 신규 센터 5개와 같은 해 12월에 협약이 체결된 계속 지원 센터 7개는 연도말 협약 체결로 정부보조금과 매칭되는 지방비가 준비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차년도로 보조금이 이월되었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2022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지원센터수 (협약기간)	2022 지원센터수 (협약기간)	2022 집행액	2022 이월액
계속지원 대상	· 17개 (2021.7.~2022.11.)	· 12개 (2022.12.~2023.11.)	550	441
	· 3개 (2021.12.~2022.11.)	· 1개 (2022.12.~2023.11.)	0	100
	· 7개 (2021.8.~2023.11.)	사업포기	0	0
신규지원 대상	-	· 5개 (2022.11.~2023.11.)	136	300
합 계			686	84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은 2022년 계획액 대비 지자체의 신규 수요가 부족하고, 2021년에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던 지자체의 사업포기로 지원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2022년 계획액 45억원 중 29억 7,300만원(66.1%)이 불용되었다. 지자체의 신규 수요 부족과 기존 사업 포기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 8개 센터 중 일부 센터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체험교육이나 홍보 등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지

역에너지센터를 통해 추진하려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지역에너지센터의 경우 2022년 주요 사업내용에 센터 홍보물 제작, 체험교육, 환경에너지 홍보 및 전시회, 에너지홍보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사례]

(단위: 백만원)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2022 총사업비
광주시	· 에너지교육 및 홍보 17.1백만원 · 직원 역량강화 및 선진지 교육 6.4백만원 ·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국민 DR 모집 홍보 및 설명회 40백만원 · 에너지전환 마을 조성 120백만원 ·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진단비 15.5백만원	200
서울 은평구	· 센터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18백만원 · 체험교육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30백만원 · 환경에너지 홍보 및 전시회 10백만원 · 에너지홍보 콘서트 등 행사비 12.2백만원	7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은 2022회계연도에 수입 부족으로 지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5개 사업에서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다.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부족을 고려할 때 동 기금 사업 중 사업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 효과 부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지역에너지센터지원 사업의 지자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수요에 따른 적정 예산 규모와 함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사전절차 지연 및 준비 미흡

가. 현 황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¹⁾은 도심지에 친환경 분야 혁신창업기업의 입주공간과 친환경 정주여건이 결합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린 뉴딜 사업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액 155억원 중 70억 1,700만원을 보조사업자인 창업진흥원에 교부·집행하였고,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으로 84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지자체 교부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교부액	실집행액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5,500	15,500	15,500	7,017	0	0	8,483	-	30,003
광주 건축비	14,000	14,000	14,000	5,517	3,500	18	-	-	-
대구 설계비	500	500	500	500	0	0	-	-	14,000
강원 설계비	500	500	500	500	0	0	-	-	14,000
창진원 운영비	500	500	500	500	-	-	-	-	500

주: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없음

3. 집행액은 창업진흥원에 교부된 금액이고, 지자체교부액은 창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재교부한 금액이며, 실집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금액이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의 일환으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소(충남 천안시 공모 선정) 설계비 5억원이 편성²⁾되면서 신규 추진되었다.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창업기업 앵커시설인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1-600

2)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의 신규 내역사업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으로 편성

복합허브센터 구축(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인근 창업기업 입주시설 및 주거·문화시설 등과 연계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선정 또는 지정된 조성지에 대해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설계·건축비 145억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설계비 5억원, 2차년도에 건축비 140억원을 지원한다. 이 때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에 대응하여 140억원 이상 매칭하여야 한다.

2022년도 계획액은 총 155억원으로, 2021년 선정된 광주광역시의 공사비 140억원, 2022년 지정된 강원도 원주시, 대구광역시의 설계비 각 5억원, 창업진흥원의 사업운영비 5억원으로 구성되었다. 창업진흥원은 이 중 광주광역시에 대해 2022년 6월에 설계가 곧 완료될 것으로 보고 공사비 35억원을 교부하였고, 강원 원주시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2년 내에 적격성 평가가 종료되지 않아 설계비를 교부하지 않았다.

조성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조성지가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적격성 평가·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설계·건축공사 등이 진행된다. 2020년, 2021년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는 공모를 거쳐 선정·추진되었고, 2022년부터 추진된 대구광역시, 강원도 원주시는 지정되었으며, 적격성 평가 결과 2023년 4월말 현재 강원도 원주시는 설계 진행 중이나, 대구광역시는 적격성 평가를 재 실시하고 있다.

[전국 그린스타트업타운 선정 및 지원 현황]

선정	주관기관	컨소시엄 대표협력기관	조성예정지	비고
2020	충남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역 인근	부분개소 ¹⁾
2021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역 인근	설계중
2022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제3산단內	협약체결중 ²⁾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內	설계중
2023	부산광역시	미정	부산항 인근	심의중 ³⁾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內	협약체결중 ²⁾

주: 1. 2023년 6월말 기준 작성

1) 복합센터 2개소(어울림 타워, 이노스트타워) 중 1개소(어울림 타워) 준공 완료('22.4월)

2) 적격성 평가 완료 후 창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중

3) 적격성 평가 심의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사업부지 변경, 적격성 평가 지연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거나, 설계가 변경되어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제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사전절차 준비 및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사업소요기간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1차년도에는 설계, 2차년도에는 건축을 지원하는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2022년간 선정된 사업지 모두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적격성 평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0~2021년도 조성지의 경우 사업기간이 3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성지별 추진경과]

선정 연도	선정 방식	지자체	대표협력기관	위치	추진 경과		
					선정·지정	설계·조성	준공·개소
2020	공모	충남도 천안시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천안역 인근	'20년	'21~'24년 (리모델링+ 신 축)	'24년 (예정)
2021	공모	광주 광역시	광주 테크노파크	광주역 인근	'21년	'22~'24년 (신축)	'24년 (예정)
2022	지정	대구 광역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3단지 內	'22년 (지정)	'23~'24년 (신축)	'24년 (예정)
2022	지정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 대학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① 우선 충남 천안시(2020년 공모 선정)는 사업 추진 중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되면서 설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당초 2년에서 4년 가량으로 늘어났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어울림센터를 조속하게 조성할 계획으로, 어울림센터³⁾는 2021년 3월~8월 동안 설계가 완료되었고, 1년 뒤인 2022년 8월에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⁴⁾’과 연계하고 그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이노스타워⁵⁾를 추가로 조성하게

3) 공유오피스,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국토부 지원) 등으로 구성(2~5층)

4) 그린스타트업타운, LH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근린시설 등 주상복합 타운형 인프라 조성

되었고, 2021년 12월~2022년 5월에 이노스타워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11월부터 이노스타워를 착공했고 2024년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즉, 천안시의 경우 다른 사업과의 통합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데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추진경과]

- ('20.9월) '20년 그린스타트업타운 공모사업 선정
- ('21.3월~8월) 어울림센터 설계 완료
- ('21.12월~'22.5월) 이노스타워 설계 완료
- ('22.8월) 어울림센터 개소
- ('22.11월~'24.12월) 이노스타워 착공 및 준공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그리고 광주광역시(2021년 선정)의 경우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 가량으로 늘어났다. 사업계획서 보완 등 사전준비에 4개월을 소요한 후, 2021년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는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⁶⁾ 등으로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련기관과 부지매각 등을 협의하고 사업부지를 확정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건축업체 공모를 거쳐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즉, 충남 천안시와 광주광역시 사례에 고려하면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3년 반 ~ 4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광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추진경과]

- ('21.5월) '21년 그린스타트업타운 공모사업 선정
- ('21.5~9월)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 부지확보 협의 등

5) 창업기업 입주공간, 실험실·R&D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국토부 지원) 등으로 구성(4~7층)

6) 참고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2021년 6월에 확정되어, 당초 사업부지 확보시 해당 계획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 당초 광주광역시는 토지매매 관련 공문을 득하는 등('20.11월) 사업부지 확보가 협의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매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마찰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사업관리지침 및 신규 그린타운 공고문 내에 사업부지 확보 증빙을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21.9월 ~ '21.12월) 설계용역 입찰공모 및 업체선정
- ('21.12월) 설계용역 착수
- ('22.3~10월)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 노선과 사업 부지가 겹치는 문제로 관련 기관 부지 매각 협의(국토부, 코레일 등)
- ('22.10월) 사업부지 조정 및 확정
- ('22.12월~'23.7월) 국토부 사업(도시재생사업) 연계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 중
- ('23.9월 ~24.7월) 건축 착공 및 준공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2022년도 계획액으로 광주광역시 건축비 14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창업진흥원은 2022년 6월에 설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사비 일부인 35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코레일과 갈등이 발생하여 7월에 광주광역시가 설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착공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는 설계변경을 2023년 7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 9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즉, 창업진흥원은 연내 설계완료 및 착공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기관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③ 강원도 원주시(2022년 지정)는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로 적격성 평가⁷⁾시 2번 보완의결되었고, 2023년 1월⁸⁾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2023년 7월부터 설계용역을 공모하여 2023년 3분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즉, 적격성 평가가 연내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는 전액 실집행되지 않았고, 적격성 평가 완료 후 2023년 1월에 설계비 4억원이 교부되었으며, 2023년 7월에 설계공모시 잔

7) 창업진흥원은 지정된 조성지에 대해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모선정된 조성지가 거치는 선정평가(「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제13조(선정평가))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적격성 평가 절차·평가내용 및 조사기간]

절차	요건검토	서면·현장평가	(사업계획 보완)	선정 확정
내용	사업부지 확보, 사업 계획 수립 등	외부 전문가가 평가	평가 결과 “보완” → (수정)사업계획 접수·재평가	평가 결과 “적합” → 최종 선정 안내
소요기간	지자체별 상이	1개월 내외	1개월 내외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 2022년 8월 1차 심의(보완), 2022년 9월 2차 심의(보완), 2023년 1월 3차 심의(적합)

액 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④ 대구광역시(2022년 지정)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10월 2차례 적격성 평가를 거쳤지만 보완의결을 받았고, 2차 심의 결과 조성예정지 부지 매입에 대한 확약 증빙(토지매매 동의서, 확약서 등) 확보 및 변경부지에 대한 타당성·활용계획 보완이 요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2022년 편성되었던 설계비 5억원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6월말 현재 적격성 평가가 완료되어 창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2022년도 동 사업 계획액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계획액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집행된 공사비가 없는데도, 총 35억원이 교부되었다. 2022년 6월 광주광역시가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곧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고, 창업진흥원에는 이따라 공사비를 교부하였으나, 7월에 코레일과 부지 갈등이 발생하여 2023년 6월말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설계완료여부 및 연내 착공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획액을 창업진흥원에 전액 교부했고, 창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대표협력기관에 재교부한 35억원 중 2022년 내에 집행된 금액은 없었다. 2022년 설계비·공사비 150억원 중 실집행된 금액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계획액 교부현황 및 2023년도 교부계획]

구분	선정 연도	용도	계획액 (백만원)	교부액 (백만원)	2023년 교부액 집행 현황·계획
광주광역시	'21 선정	공사비	14,000	3,500	'23.9월 건축업체 선정시 현장점검 및 잔액 105억원 교부
강원도 원주시	'22 지정	설계비	500	-	'23.1월 협약체결 후 4억원 교부 '23.7월 설계공모시 현장점검 및 잔액 1억원 교부
대구광역시			500	-	'23.6월 협약체결 후 연내 전액 교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2023년도 계획액에는 강원도 원주시 및 대구광역시의 건축비 각 140억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도 설계 종료 후 건축비를 전액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설계 공모를 2023년 7월에 할 예정이고, 대구광

역시는 6월말에 적격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협약체결 및 설계공모 시작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연내 설계 완료 여부 및 착공가능성이 불분명하다. 기존 충남 천안시 및 광주광역시 사례로도 사업기간이 3~4년 소요되었는데, 2022년 지정된 두 조성지에 대해 공사비 140억원을 전액 편성한 것이므로, 2023년도에도 건축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도 계획액 편성내역]

구분	선정연도	계획액 (백만원)	편성내역
강원도 원주시	'22지정	14,000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건축비
대구 광역시	'22지정	14,000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건축비
부산광역시	'23지정	500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설계비
경상남도 진주시	'23선정	503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복합허브센터 설계비
합계	-	29,00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은 향후 신규 조성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협의, 적격성 평가 등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실제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편성·교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지원 사업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사업¹⁰⁾의 내역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442억 9,500만원 중 39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자료: 환경부

동 내역사업은 1)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2)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3)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내내역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은 아래와 같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0)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2-600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주요내용]

구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내용	공공부문의 대표 유형 6개(광역정수장, 업무시설군, 문화·체육시설군, 하폐수·분뇨처리시설군, 연구시설군, 소각·매립시설군)별로 선도 모델 개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지자체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사업규모	(2021) 18억원 - 기본계획 수립 등 (2022-2023) 480억원 -6개소, (1개소*80억)	(2022) 115억원 -23개소, (1개소*5억원)	(2022) 87억 9,500만원 - 소속기관 4개소
사업 시행방법	-자치단체자본보조(5개소) -수자원공사 출자(1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직접수행
재원조달	국비 100%	국비 50% (BIPV는 70%)	국비 100%
사업기간	2021-2023년	2022년 ~	2022년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1.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집행 부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건물 및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6개 유형(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별 모델을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는 것이다.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498억(기본계획 수립 등 18억원, 6개소별 설계비+공사비 480억원)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2년도에는 6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 총 480억원에 연부율 50%를 적용하여 240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계획현액 240억원 중 60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2회계연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공공부문 탄소 중립 모델 개발	24,000	24,000	24,000	6,085	25.4	17,915	-	24,000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태양광·소수력·지열 등 에너지자립률 제고와 단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수단을 적용하며, 6개 유형별로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방식은 수자원공사 출자(1개소) 및 지자체자본보조(5개소)로 이루어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

설, 광역정수시설 등 6개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개소당 40억원(총지원금액 80억원의 50%)을 편성하였다.

[탄소중립 모델 지원 대상지]

구분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사업대상지	김해시 장유도서관	완주군 농업기술연구센터	전주시 자연생태관
적용설비	태양광, 지열,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지열,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발전, 에너지효율제고
구분	하폐수·분뇨처리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
사업대상지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화성정수장
적용설비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발전, 에너지효율제고	태양광, LFG(Land-Fill Gas), 에너지효율제고	소수력, 태양광, 에너지효율제고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 변경, 설계 범위 확장 및 추가 설계 소요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편성예산의 74.6%가 이월(실집행률 25.4%)되었으며,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델개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추진함과 동시에,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유형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의 6개 유형은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 광역정수시설로 구분되는데, 광역정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관리주체로, 2021년 8월 가장 빠르게 대상지를 고양정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 5개 유형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하였고, 총 2차례의 공모를 거쳐 2021년 12월에 5개 대상지를 모두 확정하였다.

당초 환경부는 사업 1차년도인 2021년에 6개 시설당 3억원씩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가 12월에 선정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차년도 상반기까지로 지연되었다('21.12.~'22.5.).

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수행자인 광역정수시설의 경우 2021년 5월에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8월 고양정수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고양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가 진행하여 2022년 2월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광역정수시설의 사업대상지가 고양정수장에서 화성정수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자	주요 추진경과
'21.5. - '22.2.	-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델개발 및 중장기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환경부)
'21.5. - '22. 2.	-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선도모델 발굴」용역 추진(수자원공사) * 시범사업 정수장(고양정수장) 선정('21.8.) 및 시범사업 정수장에 대한 기본계획 및 효과 분석 수행(~'22.2.)
'21.8. - '21.12.	- 지자체 사업대상 공모(1차: 8.2-9.10. 2차: 10.21.-11.17) * 3개 유형 대상지 선정(10월), 2개 유형 대상지 선정(12월)
'21.12. - '22.5.	-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광역정수장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 대상
'22. 7.	- 광역정수장 대상지 변경 (고양정수장 → 화성정수장)
'22. 하반기 ~	- 5개소 실시설계 착수 및 1개소(단양) 공사 착공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법」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¹¹⁾(2022-2031)이 2022년 10월 새로 수립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고양정수장 선정(‘21.8.) 시에는 2015년에 변경수립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2022년 10월 새로 수립된 「2040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정수장에 당초 예정하였던 소수력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새로 변경된 화성정수장은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¹²⁾,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교부액 40억원 중 6억 3,7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한편,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제외한 4개소에서 실집행률이 6.9%, 9.8%, 26.7%로 부진하였다.

[2022년 6개 유형 대상지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김해 장유도서관	4,000	4,000	4,000	4,000	392	3,608	0	9.8
완주 농업기술센터	4,000	4,000	4,000	4,000	275	3,725	0	6.9
전주 자연생태관	4,000	4,000	4,000	4,000	276	3,724	0	6.9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4,000	4,000	4,000	4,000	1,067	2,933	0	26.7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	4,000	4,000	4,000	4,000	3,438	562	0	85.9
K-water 화성정수장	4,000	4,000	4,000	4,000	637	3,363	0	15.9
합계	24,000	24,000	24,000	24,000	6,085	17,915	0	25.4

자료: 환경부

11)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2) 다만, 환경부는 변경대상지(화성정수장)에 대한 별도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은 없었으나, '21년「광역정수장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용역 당시 추진한 정수장별 기초현황(온실가스 배출량, 시설현황 등) 자료를 활용하여 소수력 발전이 가능한 대체사업지를 선정하였다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대상지별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설계 발주 전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이행에 장시간 소요, 설계 제안공모 유찰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고, 완주군의 경우 설계영역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22.8.) 및 추가적인 건축계획용역 이행('22.10.)으로 착공 일정이 순연되었다. 전주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체험물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시실 콘텐츠 설계·제작 용역 진행 등으로 착공 일정이 순연되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도입방안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설계 및 공사착공 일정이 순연되었다.

[2022년 5개 유형 대상지별 집행부진사유]

구분	집행부진사유
김해 장유도서관	- 설계 발주 전 사전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공공건축 심의) 이행기간 추가 소요 및 설계 제안공모 유찰, 실시설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22.11.-'23.2.)
완주 농업기술센터	- 설계영역 확장 등 사업계획이 변경('22.8.)됨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계획용역 이행('22.10.~)으로 설계 및 착공일정 순연
전주 자연생태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건물 내부 전시체험물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시실 콘텐츠 설계·제작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 및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가 발생하여 착공 일정 순연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 수소연료전지 도입방안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2.7.) 기간 소요에 따라 행정절차(실시설계 및 공사 등) 순연
K-water 화성정수장	-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도권 용수수요 증가 예측이 변경되어 당초 추진중이었던 고양정수장 소수력 개발 불가능 ⇒ 대상사업장(고양→ 화성정수장)이 변경('22.7.)됨에 따라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여 착공일정 순연

자료: 환경부

이에 각 사업대상지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일정이 모두 지연되었다. 당초 6개 사업지에서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였는데, 김해 및 단양을 제외한 4개소에서 설계 추진이 2023년 상·하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착공은 대부분 2023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설계 및 공사일정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일정]

구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공사 착공	
	당초계획	실제 추진	당초계획	실제 추진
김해 장유도서관	'22.8 - 9.	'22.8 - 12.	'22. 9.	'23.3 ~
완주 농업기술센터	'22.6 - 10.	'22.10 - '23.7.	'22. 12.	'23.8 ~
전주 자연생태관	'22.7 - 11.	'22.8 - '23.7.	'22. 12.	'23.8 ~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22.7 - 23.3.	'23.6 - 7.	'23. 4.	'23.9 ~
단양 폐기물종합처리장	'22.6 - 11.	'22.5 - 12.	'22. 9.	'22.8 ~
K-water 화성정수장	'22.7.	'22.9. - '23.4.	'22. 12.	'23.7 ~

주: 상기 일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 지열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소수력) 중 예산규모가 큰 기술요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여 2023년도 예산에 잔여 공사비(연부율 50%, 240억원)가 모두 반영되었는데, 2022년 공사에 착공된 대상지는 1개소에 불과하고, 2022년 실집행 부진(실집행률 25.4%)으로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예상되는바, 환경부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7-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사업효과 분석 미흡 및 대규모 국비 투입 필요성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혁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¹³⁾을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물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은 소속기관 4개소의 설계비 및 공사비로 87억 9,500만원(개소당 약 22억원)을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계획현액 87억 9,500만원 중 3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1,260	61,260	61,260	56,288	91.9	4,493	479	63,917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원	44,295	44,295	44,295	39,323	88.8	4,493	479	44,818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	8,795	8,795	8,795	3,823	43.5	4,493	479	14,818

자료: 환경부

13)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는 건물의 지붕 및 입면에 외벽마감재 대신 PV 모듈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시 사진]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단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모두 편성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공사 착공이 연말 및 차년도에 이루어져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환경부는 2022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4개소(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를 선정하였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 8개 건물, 그 외 기관은 각 1개 건물에 해당하여 총 11개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최대발전성능을 낼 수 있는 일반적인 태양광패널(PV)와 달리 설치 조건에 따라 발전성능의 차이가 있어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설치 전 건물 설계 검토 및 손실요인에 대한 예측 분석이 필요하다¹⁴⁾.

이에 2022년 예산이 편성된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 기관별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한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건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용역이¹⁵⁾ 2022년 사업대상 건물 8개를 포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총 27개 건물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됨에 따라, 8개 건물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 기획설계 용역을 별도로 추진(22.4.~7.)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14) 환경부 수행용역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태양광건설팅」(21.12.-'22.5.)

15) 2022년 5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8개월간 용역이 수행되었다(연구용역비 1억 9,500만원).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착공일정]

기관명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국립환경과학원 (8개 건물)	22. 5월 - 12월* (8개 건물을 포함한 27개 건물 전수 대상)	(기획설계) 22. 4월 - 7월 (실시설계) 22. 10월 - 12월	23. 2월 - 23. 11월
한강유역환경청	21.12월 - 22.5월 (각 1개 건물)	22. 6월 - 8월	22. 12월 - 23. 5월
원주지방환경청		22. 3월 - 4월	22. 5월 - 22. 6월
국립생물자원관		22. 8월 - 10월	22. 12월 - 23. 6월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환경부는 2022년도 단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4개 기관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모두 편성하였는데, 공사규모가 축소된 원주지방환경청¹⁶⁾을 제외한 3곳에서 실시설계가 2022년 하반기에 착수되었고, 공사 착공은 2022년 12월 이후에 이루어져 3개 기관의 실집행률이 17.9%, 41.7%, 46.8%로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편성 예산의 51.7%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¹⁷⁾.

환경부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존 건물 설계, 공공건축물 심의,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공사영역이 확장되어 공공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재이행하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

[2022회계연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 중립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2년 예산(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국립환경과학원	4,328	2,027	2,232	69	46.8
한강유역환경청	1,000	179	574	247	17.9
원주지방환경청	197	197	0	0	100.0
국립생물자원관	3,170	1,320	1,688	162	41.6
합 계	8,695	3,723	4,493	479	42.8

자료: 환경부

16) 환경부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의 구조안전진단 검토 결과, 벽면 BIPV 설치 위치를 변경했으며, 전력설비 구조상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태양광 설치용량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17) 2022년도에 집행된 공사비는 건물일체태양광 관급자재 구매대금 및 공사용역비 선금으로 지출된 비용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이라는 혁신기술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며,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설치 전 건물 설계 검토 및 손실요인에 대한 예측 분석이 필수적이었는바, 기본계획 및 건물태양광 최적 설치방안 수립에 다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비·공사비 예산을 단년도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향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으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시범사업의 공사 준공 일정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 시범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는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¹⁸⁾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도 시범사업 4개 기관에 이어 2023년도에 소속기관 3개 및 산하기관 4개 기관의 15개 건물을 대상으로 BIPV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총 14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1차년도, 연부율 30%반영)

또한, 환경부는 소속기관(20개 기관), 산하기관(12개 기관) 등 총 32개 기관 중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5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연도별 사업추진 로드맵¹⁹⁾을 수

18)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1년은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 대비 32%를 감축하는 것을 권장목표로 하였는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는 33.367%를 감축하여 권장목표를 달성하였다.

19)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현황조사 및 로드맵 마련('23.4~'23.11) >

주요 과업내용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수요조사
▶ 기추진한 환경부 소속기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성과분석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자료: 환경부

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22년도에 추진된 동 사업의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2023년 4월말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은 파악되지 못한 상태인데 환경부는 2023년에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권고기준을 충족²⁰⁾하고 있는데,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6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6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이행실적 목표에 미달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 근거 조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20)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기관의 경우 환경부 실적으로 일괄 보고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배출량 대비 32%를 감축하는 것이 권장목표였는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는 33.367%를 감축하여 권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수요조사 및 공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목표관리제 미달 대상 공공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은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권고감축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데, 이미 권고기준 이상인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동 사업을 2022년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이후, 2023년-2024년 2개년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 2023년 반영예산(연부율 30%) 및 향후 반영될 연부율 70%에 해당하는 예산(343억 4,000만원) 고려시 총사업비가 579억 5,300만원이 된다. 여기에 향후 로드맵 마련을 통해 27개 기관을 대상(건물 수 미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총사업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²¹⁾, 환경부는 동 사업의 중기재정소요를 면밀히 산출하여 사업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등 대규모 국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투입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 (단년도 편성)	2023년 예산 (연부율 30%)	향후 반영예정 (연부율 70%)	총계
예산액	8,795	14,818	34,340	57,953
대상	4개 소속기관 (11개 건물)	3개 소속기관, 4개 산하기관 (15개 건물)		-

주. 환경부는 2023년 예산에 반영된 대상 건물 외에 향후 27개 기관의 소속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총사업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202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2023~2027년 기준 719억 2,300만원에 해당된다.

[2023년~2027년 중기재정계획 소요예산]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소속기관	3,481	8,117	1,515	3,536	1,515	18,164
산하기관	11,237	26,220	3,762	8,778	3,762	53,759
소계	14,718	34,337	5,277	12,314	5,277	71,923

자료: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²³⁾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신설·증설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시한 대출이나 보증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2년 계획현액 20억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당초 동 사업은 연 5조원 규모의 대출상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기금사업비 조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22억 5,000만원(편성예산의 86%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조정하였다.

[2022회계연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14,250	14,250	△12,250	2,000	589	29.5	-	1,400	24,25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과제 이행을 위해 대규모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을 2022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산업은행이 2021년 4월 5조원 규모로 출시한 ‘탄소스프레드’ 상품²⁴⁾을 기준으로 10년간 총 50조원의 민간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2022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23)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1

24)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상품은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최고 금리우대 1%, 최장 10년 만기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년도 예산에 1년차 사업비(5조원)에 대한 평균 이자 차이 추정치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비용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 14,250백만원(순증)
- 5조원(1년차 사업비) × 0.57%(평균이자차이추정치) × 50%(보전비율) = 14,250백만원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 확대(6.5% → 13%) 및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추진(10년간 총 50조 자금 지원)
(예시) 탄소스프레드(산업은행 출시)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편성 예산 대비 4%에 불과하는 등 당초 예상과 달리 수요가 매우 저조하므로, 기업 수요 확대 등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 편성 시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상품 출시 현황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의 상품 출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총 5조원 대출 규모의 평균 이자 차이 추정치를 고려한 이차보전비용 1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수행금융기관 모집공고 결과 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2곳의 금융기관만 선정되었고, 각 금융기관에 대여를 신청한 기업 현황 또한 산업은행 17개 기업, 신한은행 1개 기업 등 총 18개 기업으로, 동 상품에 대한 기업의 신청 수요가 저조하였다.

상품과 신유망 산업분야의 저탄소 품목 관련 생산시설 설치사업 또는 R&D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저탄소 생태계' 상품 등 2가지 상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승인 및 대여 내역]

(단위: 개소수, 백만원)

취급은행	승인		대여(집행액)		이차보전지원금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합계	18	835,900	11	289,327	11	589
산업은행	17	832,900	10	286,727	10	579
신한은행	1	3,000	1	2,600	1	10

자료: 환경부

한편, 2022년도에 총 18개 업체가 8,359억원을 신청하여 모두 승인받았는데, 이 중 2022년도에 실제 대여가 이루어진 내역은 11개 업체 2,893억 2,7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초 5조원으로 전제한 대출 규모의 5.8%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이차보전지원금 또한 편성 예산의 4%에 해당하는 5억 8,900만원만 집행되었다²⁵⁾.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억원, 백만원, %)

예산편성시 전제한 대출규모(a)	실제 대출금액 (b)	비중 (b/a)	이차보전예산 (c)	집행액 (d)	비중 (d/c)
50,000	2,893	5.8	14,250	589	4.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업규모별 실제 대출이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 2개에 102억원, 중견기업 5개에 651억원, 대기업 4개에 2,140억원을 지원하였다.

25)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기금사업비 감액조정(2022년 12월 8일 실시) 예산현액은 4,950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대출금액 비중은 58.4%, 이차보전 예산현액 20억원 기준 이차보전액 집행 비중은 29.5%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말에 감액조정된 예산현액으로, 당초 환경부가 예산 편성시 전제한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기업규모별 대출 집행 현황 및 이차보전 금리]

구분	대출기업수	대출금액	이차보전금리
중소기업	2개소	102억원	2.6%
중견기업	5개소	651억원	2.3~2.5%
대기업	4개소	2,140억원	1.2~1.4%
총계	11개소	2,893억원	-

주. 이차보전금리는 환경부와 취급은행이 50:50으로 지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환경부는 동 사업이 신규사업임에 따라 홍보가 미흡하였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인한 참여은행의 실제 대출 이율 상승, 설치 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당초 기업 수요조사와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는 우대금리 지원폭을 확대하여 242억 5,000만원을 편성(신규 대출규모 3.52조원 전제)하였는데, 2023년 4월말 기준 총 3개 기업이 선정(2,325억원, 6.6%)되는 등 여전히 기업 수요가 저조한바, 환경부는 적극적인 기업 홍보, 수행기관 추가 발굴 등 동 사업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지원범위가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지원범위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 시행을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기준에 따르면,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보인다.

[이차보전 지원대상 규정]

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 ① 금융기관은 제5조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상품의 지원대상을 아래 각 호로 한다.

1.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자료: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참고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1531-310), 친환경설비투자(6232-602) 등 용자사업의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은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지원 범위를 각종 설비종류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순환경제 내 경제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사업 또한 지원범위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²⁶⁾”상의 경제활동 내용을 고려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사업의 목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26) 환경부는 2021년 12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으로 구분되며,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목표 내 총 67개 경제활동으로, ‘전환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에 총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 기업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7.1	신규지표로 과 거 타용자사업 만족도 조사 점 수를 감안하여 87.1점을 목표 치로 설정	녹색정책금융활 성화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설 문 조 사 결 과 보고문서(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실적	90.3	-			
	달성도	103.8	-			

자료: 환경부

그런데, 동 사업의 목적이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므로, 사업 목적에 따른 효과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환경부는 당초 성과지표 설정시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기업지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측하거나, 감축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지원기업 만족도를 시작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는 설명이나, 동 사업은 외부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²⁷⁾,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 등 동 사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22년 9월에 최초로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이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따른 평균 온실가스 잠재감축량 24% 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온실가스 감축량 24%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17조(지원대상 업체 결정) ① 지원대상 업체가 이차보전 대상 상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 상품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검증기관에 확인한 후 예산 가용액범위에서 지원대상 업체, 대출금, 지원금리, 대출금리 등을 결정한다.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상 성과목표]

(단위: %)

내역사업명	감축사업 유형	이행지표	2022년		2023년
			성과목표	실적	성과목표
녹색정책금 운활성화	인식제고/ 정책지원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따른 평 균 온실가스 잠재감축량* 24% 이상 * 지원사업장의 해당 프로젝트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24% 이상 감축	-	온실가스 감 축량 24% 이상 감축

자료: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또한, 동 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친환경설비투자(6232-602)²⁸⁾ 사업에서도 성과지표를 동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기업의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또한 성과지표를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설비투자(6232-602)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 기업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7.1	신규지표로 과 거 타용자사업 만족도 조사 점 수를 감안하여 87.1점을 목표 치로 설정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결과 보고문서(한국환 경산업기술원)
	실적	87.5	-			
	달성도	100.6	-			

자료: 환경부

28) 동 사업의 사업목적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신설 및 증설을 위한 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하여 경기상황 등으로 규모·재정·기술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정융자금 재정지원'으로, 용자사업에 해당한다.

(기후대응기금)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가. 현 황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³⁰⁾의 내역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및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또는 사업장)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조사업(국고보조율 중소 70%, 중견 50%)으로 구분되는데, 환경부는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계획현액 904억 200만원 중 774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30억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122,050	121,700	584	122,284	108,726	88.9	317	13,241	161,655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116,081	115,931	494	116,425	103,094	88.5	225	13,106	148,231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	90,402	90,402	-	90,402	77,402	85.6	-	13,000	131,342

자료: 환경부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30)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00

환경부는 2020년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 2025)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총 26억 2,000만톤을 할당하였고, 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만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 예산은 전년(147억원) 대비 557억원 증액하여 704억원을 편성하였고, ①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②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를 유연탄에서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연료전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예산(1개소,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2회계연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내역]

구분		2022년도 예산편성내역	비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 70,402백만원(A) - 중소기업(29,577백만원)= 31개소 × 1,363백만원 × 70% - 중견기업(40,825백만원)=42개소 × 1,944백만원 × 50%	계속사업 (15~)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00백만원(A) - 10개소 × 2,000백만원 × 50%	22년 신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10,000백만원(A) - 1개소 × 20,000백만원 × 50%	22년 신규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요]

- (개요)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 (절차) ①A할당업체가 B업체(중소·중견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 감축설비 설치 → ③B업체의 감축량을 A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추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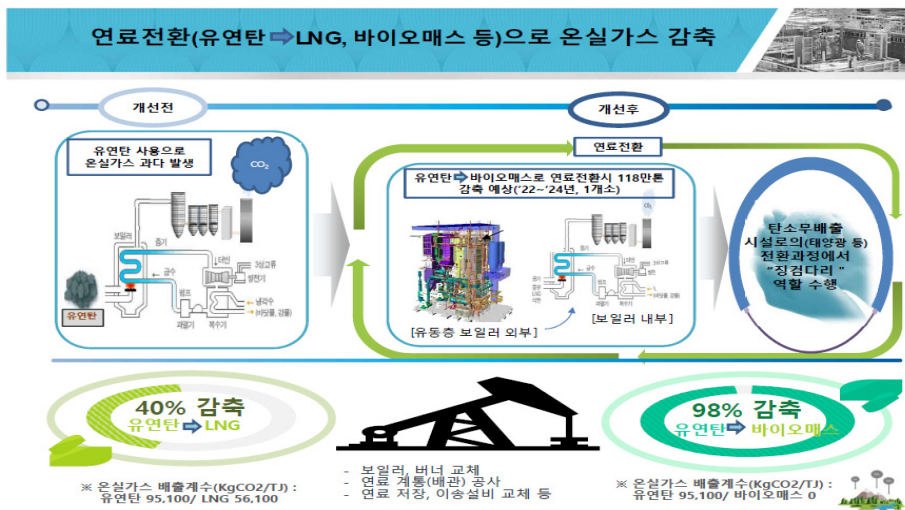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개요]

- (사업개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국고 50%)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
- (사업내용) 유연탄 → 바이오매스 전환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개념도>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전년 대비 신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물량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내역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향후 각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 대비 515% 확대하여 편성하였다(2021년 147억원 → 2022년 904억원).

2021년까지는 배출권거래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에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억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증액분	증가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14,700	70,402	55,702	378.9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00	10,000	신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0,000	10,000	신규
총계		14,700	90,402	75,702	515.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2년 집행 결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이 총 2개 업체 11개 설비, 16억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이 중 2022년도에 9개 설비만 준공되어 11억 4,600만원은 2022년도에 집행되었으나, 2개 설비 설치 비용인 4억 6,3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어 실효행률은 11.5%에 해당하였다.

[2022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집행액(b)	이월액	집행률 (b/a)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146	463	11.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연료전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1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역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대상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실집행률 0%).

[2022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00	0	10,000	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신청 수요가 저조했으며,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의 경우 선정된 업체가 시공업체 입찰공고 시 약 583억원의 공사비를 추정하여 공고했으나, 응찰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920억원(러시아 전쟁 등 원자재비 상승 반영)으로 예산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동 예산이 동일한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바, 집행이 저조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사업 예산의 일부를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수요 저조시 이와 같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및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선정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70,402	75,766	58,095	17,372	299	82.5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609	1,146	463	3,027	11.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환경부는 2023년에도 각 내내역사업별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데(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346.9억원 증액, 저탄소 청정연료 지원 62.5억원 증액) 예산 편성 시에 해당 사업별 증액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할당대상업체 663개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22.7.21-8.31)하였는데, 수요조사 결과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신청기업은 0개소에 해당하였고,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 협약을 맺은 대상업체가 계속하여 지원을 희망하여 1개소로 조사되었다.³¹⁾ 환경부는 향후 각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추어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및 2023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액분	증가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지원	70,402	105,092	34,690	49.3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10,000	10,000	0	0.0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00	16,250	6,250	62.5
총계		90,402	131,342	40,940	45.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2022년도에 동 대상업체의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481억 9,200만원이며, 4조 9,968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인 4,928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4조 1,936억 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104억 2,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48,192	548,192	548,192	4,996,848	492,821	4,193,603	310,424	9.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2022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222억 2,100만원이며, 이 중 98.9%인 1조 9,002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6억 3,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33,000	1,921,878	1,922,221	1,900,294	288	21,639	98.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세청의 자산은 32조 2,437억 9,400만원, 부채는 27조 5,212억 5,700만원으로 순자산은 4조 7,225억 3,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7조 5,489억 7,5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822억 1,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1조 5,180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2,123억 400만원(11.1%)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국세 4조 1,981억 3,300만원 감소에 따라 유동자산은 감소하였으나, 장기미수국세 7조 2,997억 2,800만원 증가함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25조 8,620억 8,700만원, 장기차입부채 511억 1,5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조 6,080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조 870억 3,700만원(12.6%)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 선수수익 2조 2,606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지급국세 5조 1,230억 4,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증가, 소송충당부채 1,709억 6,3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2,243,794	29,031,490	3,212,304	11.1
Ⅰ. 유동자산	17,548,975	21,704,989	△4,156,014	△19.1
Ⅱ. 일반유형자산	3,082,210	3,016,513	65,697	2.2
Ⅲ. 무형자산	94,563	100,719	△6,156	△6.1
Ⅳ. 기타비유동자산	11,518,046	4,209,270	7,308,776	173.6
부 채	27,521,257	24,434,220	3,087,037	12.6
Ⅰ. 유동부채	25,862,087	22,936,733	2,925,354	12.8
Ⅱ. 장기차입부채	51,115	60,394	△9,279	△15.4
Ⅲ. 장기충당부채	1,608,056	1,437,093	170,963	11.9
순 자 산	4,722,537	4,597,270	125,267	2.7
Ⅰ. 기본순자산	1,843,246	1,843,246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412,964	1,301,710	111,254	8.5
Ⅲ. 순자산 조정	1,466,327	1,452,314	14,013	1.0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3,741억 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2,863억 6,8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8,450억 8,300만원, 비배분비용 2,798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9억 9,700만원, 비배분수익 362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777억 600만원(△10.5%) 감소한 2조 3,741억 400만원이며, 이는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2,097억 3,800만원 감소에 따른 관리운영비 1,414억 1,300만원 감소와 대손상각비 2,073억 9,400만원 감소에 따른 비배분비용 2,082억 1,500만원 감소 및 기타수익 420억 600만원 감소에 따른 비배분수익 420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탈세대응강화(1,629억 9,300만원), 체납·징수관리(688억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3,129억 5,800만원과 복리후생비 2,446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798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85,371	255,521	29,850	11.7
가. 프로그램 총원가	286,368	256,797	29,571	11.5
나. 프로그램 수익	997	1,276	△279	△21.9
II. 관리운영비	1,845,083	1,986,496	△141,413	△7.1
III. 비배분비용	279,889	488,104	△208,215	△42.7
IV. 비배분수익	36,240	78,311	△42,071	△53.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74,104	2,651,810	△277,706	△10.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2,374,104	2,651,810	△277,706	△10.5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4조 5,972억 7,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7,225억 3,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252억 6,700만원(2.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조 3,741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조 4,853억 5,7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40억 1,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조 9,912억 9,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059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 재평가이익 140억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단위: 백만원, %)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4,597,270	4,500,815	96,455	2.1
Ⅱ. 재정운영결과	2,374,104	2,651,810	△277,706	△10.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485,357	2,383,361	101,996	4.3
Ⅳ. 조정항목	14,013	364,903	△350,890	△96.2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4,722,537	4,597,270	125,267	2.7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사업**이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사업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에 따라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출안내문 발송 비용 및 제도 홍보비 축소, 방문민원인 지원 인력 축소 등으로 41억원이 감액(137억원→96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이 있다.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11억원이 증액(13억원→24억원)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 내역**을 보면 **부과징수지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 등 사업비**에서 67억원(4,398억원→4,331억원), **인건비**에서 20억원(13,303억원→13,283억원), **기본경비**에서 24억원(1,629억원→1,605억원) 등 총 111억원이 감액되었다.

국세청은 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 ②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 ③ 반사회적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세청이 운영하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여야 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 건수의 지속적 증가로 연례적인 이용 증액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최근 3년간 매년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증액 집행하였다.

둘째, 국세청은 복수직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밀알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면서 이를 근거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성과평가, 격려금 지급 및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에서 밀알정보를 조회하기만 하면 활용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밀알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서는 월 15일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지급 또는 전액 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업무경비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국세청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정형데이터로서 민간의 가공·활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존의 성과지표들의 경우 일부 내역사업에 대한 지표이거나 단순 산출지표 등으로 세부사업의 실질적인 목표 및 성과를 측정·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

각종 신고포상금의 제도개선 및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가. 현 황

포상금(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자(또는 기관)에게 격려·포상을 위해 지급하는 상금, 상여금 및 격려금, 예산 절약상여금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¹⁾를 근거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통해 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제도로는 승소장려금과 예산성과금제도가 있고, 각종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포상제도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	1,350	3,913	289.9
	미발급 포상금	1,135	3,650	321.6
	발급거부 포상금	215	263	122.3
조사활동지원	탈세제보 포상금	18,121	14,952	82.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781	1,314	73.8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포상제도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소송수행비용	승소장려금	582	582	100
압류재산공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818	1,477	180.6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성과금	0	80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29	0	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각종 내·외부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내부직원들에게 업무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의 탈세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국세징수의 성과를 제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 세부사업에서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현행의 지급 기준 및 한도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각 세부사업·제도별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이용 증액이 발생하고 있다.2)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³⁾ 사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와

2)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 부족으로 836백만원 이용
2021년 신고포상금 지급 부족으로 1,307백만원 이용
2022년 신고포상금 지급 부족으로 2,563백만원 이용

3)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지급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간한도액인 200만원을 수령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포상금을 한도액까지 수령하고 나서 제3자를 통한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2018년	24,250	7,170	1,498	12,081	2,800	230	12,169	4,370	1,268
2019년	28,126	7,662	1,478	13,195	2,742	222	14,931	4,920	1,256
2020년	37,147	11,931	2,369	16,111	4,244	338	21,036	7,687	2,031
2021년	38,039	13,025	2,842	13,887	3,215	263	24,152	9,810	2,579
2022년	38,287	16,461	3,913	12,788	3,394	263	25,499	13,067	3,650

자료: 국세청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한도액 수령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전 체		한도액 수령	
	수령인원	지급액	수령인원	지급액
2018년	5,407	1,498	105	210
2019년	5,676	1,478	85	170
2020년	8,060	2,369	245	490
2021년	8,302	2,842	406	812
2022년	7,979	3,913	589	1,178

자료: 국세청

현행 기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이다.⁵⁾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매년 늘어나면서⁶⁾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 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4) 한국세정신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포상금 노린 '금파라치' 3년새 5배 급증”, 2022.10.11

5)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의무 위반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세청은 현행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⁷⁾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제도는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지급하는 것이다(최고 20억원).

다만,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현황을 보면 매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2018년에 지급된 1건을 제외하고는 집행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고건수	지급건수	예산액	지급액	미지급건수
2018년	54	1	43	27	-
2019년	53	-	29	-	-
2020년	64	-	29	-	-
2021년	75	-	29	-	-
2022년	39	-	29	-	1 ¹⁾

주: 1)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에 따라 포상금 지급보류 중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중요한 자료(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잔액 등)가 포함되고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포상금의 지급이 가능한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계좌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발간책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⁸⁾

6) 2018년 64종→2019년 69종→2020년 77종→2021년 87종→2022년 95종→2023년 112종

7) 코드: 일반회계 7111-253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예산의 일부 감액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외에도 국세청의 각종 세부사업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의 집행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연례적 이·전용 증액이 되는 사례도 있고,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증액한 후 불용이 된 사례도 있었다.

[기타 포상금제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포상금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전용	불용
조사활동지원	탈세제보 포상금	2020	15,696	16,122 ¹⁾	224	-
		2021	16,621	14,040	-	2,581
		2022	18,121	14,952	-	3,169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2020	1,984 ²⁾	1,782	-	-
		2021	1,781	1,434	-	347
		2022	1,781	1,314	-	467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명의위장신고 포상금	2020	20	48	31	3
		2021	20	21	6	5
		2022	20	37	17	-
압류재산공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20	835	1,206	377	6
		2021	818	1,423	684	79
		2022	818	1,477	664	5

주: 1) 집행 부족액 202백만원은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예산에서 사용

2) 예산액 중 202백만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집행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과태료(벌금) 2천만원 이상 지급 → 1천만원 이상 지급

조사활동 지원⁹⁾ 사업의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안에서 포상금 지급률 인상, 소득처분세액 및 거래처 추징세액의 포상금 기준금액 포함, 포상금 수시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세무조사의 수행으로 탈세제보 처리건수 및 추징세액이 감소하여 해당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압류재산공매¹⁰⁾ 사업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2020~2022년까지 3년 연속 이·전용을 통해 포상금을 증액하여 집행한 후 일부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용은 국회에서 정한 사업 예산집행 한도의 예외이므로 반복적인 이·전용의 발생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신고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포상금 신고 대상 등을 바탕으로 포상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성격상 정확한 예산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각종 신고포상금의 제도 변화 사항, 최근 집행 실적 및 외부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신고포상금 규모를 적정히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시 필요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소송수행비용¹¹⁾ 사업을 통해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¹²⁾ 2022년도의 경우 승소장

9) 코드: 일반회계 2131-302

10) 코드: 일반회계 2232-301

11) 코드: 일반회계 2133-301

12) 승소장려금 지급기준

◦ (기본승소장려금) 10만원(소가 3~10억원), 20만원(소가 10억원 이상)

려금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승소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예산편성		예산집행		
	건수	예산액	인원	건수	집행액
2018	2,733	582	209	2,496	582
2019	2,799	582	204	2,264	534
2020	2,605	582	205	2,267	577
2021	2,427	582	186	1,236	582
2022	2,223	582	197	1,407	58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에 따르면 승소장려금은 당초 국무총리 훈령의 위임으로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1995년 국무총리 훈령 폐지로 현재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¹³⁾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소송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되므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의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자체 훈령에 의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의 경우 「관세법」 제324조¹⁴⁾에 근거하여

- * 국가가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별 지급액에서 패소 건당 10~20만원 차감
 ○ (특별승소장려금) 고액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전심패소사건, 중요사건 등에 대하여
 기본승소장려금 외 추가 지급(45만원~2,000만원)

13) 「소송사무처리규정」

-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승소금액비율과 승소노력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세부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규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승소장려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600만원으로 한다.

14) 「관세법」

-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법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2013.2.)¹⁵⁾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승소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 및 한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포상금의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¹⁶⁾

-
-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15) 제19대국회 임기만료폐기(2016.5.29.)

16) 국세청은 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세청 훈령(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성과우수격려금을 2021회계연도부터 기존 포상금(310-03목)에서 기타운영비(210-16목)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현 황

정보화 사업이란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세청 소관 사업 중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은 다음 7개 사업이다.

[2022년도 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FIU정보통합분석 시스템 운영 (정보화)	927	927	-	-	-	927	909	-	18	815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정보화)	47,739	47,739	-	±7	-	47,739	43,877	-	3,862	55,126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62,899	62,899	-	-	-	62,899	60,999	-	1,900	44,526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11,248	11,248	-	±37	-	11,248	11,234	-	14	10,653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화)	3,311	3,311	-	-	-	3,311	3,203	-	108	2,981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2,165	2,165	-	-	-	2,165	2,095	-	70	2,047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2,396	2,396	-	-	-	2,396	2,332	-	64	2,223
합 계	130,685	130,685	-	±44	-	130,685	124,649	-	6,036	118,37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국세청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에 따라,¹⁾ 기존의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7133-500) 사업을 2022년부터 ①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7133-500), ②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7133-501), ③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7133-502)으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다수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국세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국세청 보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²⁾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21조³⁾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p. 13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 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운영하며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하고 있다.⁴⁾

국세청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건수는 전체 151건으로, 파일데이터 150건, 오픈 API 1건이다(2023년 4월 기준). 이 중 오픈 API 1건은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를 행안부 기준 DB와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나머지 150건의 파일데이터 내용을 살펴보면, MP4 형식이 80건, CSV 형식이 44건, HWP 형식이 12건, PDF 형식이 6건 등이다. 이 중 MP4 형식이나 HWP, PDF 형식 파일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단순 정보 제공적 성격의 비정형 데이터⁵⁾로, 데이터 간 결합이나 가공, 분석 등 처리·활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보기 어렵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정의된 구조가 없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에는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 보고서(문서), 메일 본문 등이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가 없어 비정형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내용에 대한 질의 처리(query processing)를 할 수 없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국세청 제공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현황]

(단위: 건)

데이터 유형		건수
구분	확장자	
파일데이터	MP4	80
	CSV	44
	HWP	12
	PDF	6
	기타	8
	합계	150
오픈 API	XML, JSON	1

자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2023.4. 기준)

실제로 국세청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시한 파일데이터 중 절반을 차지하는 80개의 MP4 파일(동영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안내 슷품 영상(54건), 국세청의 코로나 대응방안 홍보 영상, 기타 각종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소개 영상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들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납세과정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공공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에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국세청이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안내 정보, 종합과세 해설, 개정세법 해설 등 납세자에게 단순 설명을 제공하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는 민간의 추가적 가공·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 제24조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세청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는 민간에 대한 개방·제공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가치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중 공공에 개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을 통해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한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분석을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일반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국세통계포털(TASI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통계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국세통계자료들을 가공하여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세통계시스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성과관리 추진 방향에 맞추어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 구축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운영·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국세청의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⁷⁾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과제를 연구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과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세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49억 5,700만원), 빅데이터 활용

7) 코드: 일반회계 7133-502

연구과제 개발(36억 4,300만원), 정보분석시스템 운영(26억 4,800만원)의 3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연간 챗봇 상담 응답률’로 설정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2022년 챗봇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관리용역비 2억 1,900만원으로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의 약 1.9%에 불과하다.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연간 챗봇 상담 응답률(%)	목표	-	-	-	85.8	87.7	(응답건수) ÷ (질문건수)	당해연도 연간 챗봇 상담서비스 응답률	전산집계
	실적	-	-	-	86.7	-			
	달성도	-	-	-	101.0	-			

자료: 국세청

특히 동 사업의 목적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연간 챗봇 상담 응답률’이라는 성과지표는 일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단순 산출 지표로서 실제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되는 빅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성과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⁸⁾ 사업은 국세상담, e-민원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우편물 자동화센터, 정보화센터, 국세통신망 유지·관리 등 국세행정 전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의 내역사업⁹⁾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연간 통신장애 평균 복구시간’으로, 국세청은 네트

8) 코드: 일반회계 7133-500

9) 국세상담시스템 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e-민원시스템 운영, 세무정보안내 공공요금, 해외금융정보교환 분석시스템 운영, 국제거래통합분석시스템 운영,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운영, 포렌식 장비 운영,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네트워크 통합 운영,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화센터 운영, 우편물자동화시스템 운영, 정보화 업무 지원

워크 관제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된 통신망(네트워크)의 복구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간 통신장애 평균 복구시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세원관리 시스템 운영의 성과를 ‘통신장애 복구시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동 사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특히 동 사업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수가 13개로 다수이고 시스템별 운용 목적이 모두 상이하다는 점에서 모든 내역사업을 포괄·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연간 통신장애 평균 복구시간 (분)	목표	95.0	80.4	76.3	70.4	66.1	$\{(80.8+78.1+75.9) \div 3\} \times 0.90$ 최근 3년간 실적의 90% 수준으로 설정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시간 누적치를 발생건수로 나누어 평균 복구시간 산출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에 의한 장애시간 복구 실적 집계
	실적	80.8	78.1	75.9	66.4	-			
	달성도	114.9	102.9	100.5	105.7	-			

자료: 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매뉴얼」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의 업무성과 측정시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를 활용하며, 업무 목표와 부합하는 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지표 예시로서 장애복구 소요시간 외에도 업무처리 오류율, 업무처리시간 개선율, 사용자 만족도, 업무처리자동화율, 서비스 이용 증가율, 보안조치 이행률 등의 다양한 성과측정 지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성과관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 하에 세부처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2~3개에서 프로그램당 1개 이하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성과지표 설정 기준]

- ① (핵심성 및 포괄성) (현행) 개별사업 지표 → (개선) 핵심업무 포괄 지표
 - 국정과제, 업무계획,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 부처 핵심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 ② (국민 체감도) (현행) 행정편의적 복합지표 → (개선) 직관적 지표
 -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적 관심 및 확산효과가 커 수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
- ③ (신뢰성) (현행) 주관적 지표 → (개선) 공신력 있는 객관적 지표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근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출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앞서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사업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1개당 성과지표 1개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양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정부의 성과목표관리 방향(「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이 계속 유지된다면 국세청도 핵심성 및 포괄성, 국민 체감도, 신뢰성 등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홈택스 고도화 추진 및 모바일·인공지능·클라우드 혁신 전략 수립을 디지털 혁신 과제로 제시하였는바,¹⁰⁾ 국세청의 국세행정지원 프로그램(7100)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보화 사업이 국세청의 핵심업무가 될 것이므로, 정보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국세청 보도자료, 2023.2.2.

III

개별 사업 분석

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부과·징수자료수집비 사업¹⁾은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고충처리 현지확인,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탐문·현장확인·검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490억 5,000만원 중 99.7%인 48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부과·징수자료수집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과·징수 자료수집비	49,318	49,050	-	-	49,050	48,889	99.7	161	49,03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부과·징수자료수집비 사업은 예산 전액이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되어 있다.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는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실비를 업무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에게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되는 ‘직원정보자료수집비’와 관서별 정보수집전담팀·심리분석팀의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관서정보자료수집비’로 구분된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131-301

1-1.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 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중 직원정보자료수집비는 세무·전산직 복수직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실비를 업무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분야별 단가는 중요조사·전문·취약 분야에 대하여 월 30만원, 중요조사·전문·취약 외 조사분야 및 체납전담분야는 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세원관리 업무에 월 17만원, 민원·납보²⁾, 기타(징세 등)에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업무분야별 특정업무경비 지급단가]

(단위: 만원)

구 분	중요조사, 전문·취약분야	조사분야, 체납전담분야	세원관리	민원,납보 기타(징세 등)
지급단가	30	24	17	10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복수직 4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밀알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라 성과평가, 격려금 지급 및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밀알정보의 실질적인 활용도 측정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밀알정보 활용 실적 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정원은 20,242명으로 국세청 전체 정원 21,584명의 93.8%에 해당한다. 이는 세무·전산직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 중 임기제·별정직(기능직, 운전직 등) 공무원과 일용직·사무보조원 등의 직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 내국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

이와 같이 국세청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직원정보자료수집비인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복수직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밀알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 직원이 탈세정보 등을 수집하며, 팀장급 이하는 밀알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한다.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인원]

(단위: 명)

구 분	총 정원	총 현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지급대상 정원	지급대상 현원
2018년	20,368	20,602	19,125	19,246
2019년	20,883	20,804	19,652	19,464
2020년	21,061	20,590	19,847	19,283
2021년	21,748	21,207	20,605	19,974
2022년	21,584	21,133	20,242	19,943

자료: 국세청

밀알정보는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세원 정보를 말하며, 세원관리·탈루유형 발굴·사후검증·체납징수 등 세정 전반에 걸쳐 활용된다. 국세청은 밀알정보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 업무별로 차등화하여 제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조직 BSC³⁾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BSC 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승진·인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밀알정보의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3)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밀알정보 제출, 채택 및 활용 현황]

(단위: 건, %)

구 분	밀알정보 제출(A)	밀알정보 채택(B)	채택률 (B/A)	밀알정보 활용(C)	활용률 (C/B)
2018년	109,321	95,819	87.6	200,779	209.5
2019년	96,492	81,677	84.6	215,179	263.5
2020년	95,323	81,762	85.8	337,641	413.0
2021년	94,157	82,985	88.1	354,939	427.7
2022년	97,576	85,839	87.9	417,728	486.6

주: 활용건수는 정보 요청자별 중복 제공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국세청

다만, 밀알정보의 제출 대비 채택률은 2022년 87.9%로 평균 80% 후반 수준으로, 제출한 정보의 대부분이 밀알정보로 채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은 기존에는 세무조사 등 세액추징에 밀알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만 활용가점(0.2, 0.5점)을 부여하였으나,⁴⁾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증가하는 심리분석·세원관리 업무에도 밀알정보를 활용한 경우 0.00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부과·징수자료 수집비’ 사업의 성과인 밀알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⁵⁾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밀알정보의 활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제도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2021~2022년도 밀알정보 활용가점별 실적을 보면 전체 가점 부여 실적 중 실제 세액추징에 밀알정보를 활용하여 가점(0.2, 0.5점)이 부여된 경우는 0.3%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는 심리분석·세원관리 업무에 활용되어 가점(0.001점)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해당 밀알정보에 탈루혐의(재산은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중요 증빙을 첨부하고 있어 조사추징, 사후검증 및 체납 징수에 직접 기여하여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2점, 1억원 이상은 0.5점을 부여

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9.11., p. 242

[밀알정보 수집 및 활용실적]

(단위: 건, %)

구분	수집실적			활용실적				
	총건수	채택건수 (채택비율)	불채택 건수	총건수	활용 가점			
					건수	0.001	0.2	0.5
2021	94,157	82,985 (88.13)	11,172	354,939	128,365	127,933	275	157
2022	97,576	85,839 (87.97)	11,737	417,728	195,742	195,198	316	228

자료: 국세청

다만, 밀알정보는 국세청 전 직원이 전산 시스템에서 소속 관리자 결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밀알정보를 조회하기만 하면 심리분석·세원관리 업무에 밀알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보아 0.00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해당 밀알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된 실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국세청은 밀알정보 수집 성과를 개인·조직 BSC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밀알정보 수집실적이 우수한 개인·부서 및 활용우수자에게 본부 기본경비 중 기타운영비로 성과격려금을 지급하거나 납세자의 날에 업무유공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 표창과 격려금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표창 인원	성과격려금 지급액	성과격려금 지급 인원		
			수집우수 (개인)	수집우수 (부서)	활용우수 ¹⁾
2018년	3	29	46	12	22
2019년	3	19.2	30	11	11
2020년	1	11	25	7	8
2021년	3	12	18	5	9
2022년	3	12	17	2	10

주: 1) 활용우수는 활용우수자와 해당 정보 제출자에게 격려금 동시 지급

자료: 국세청

이와 같이 국세청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밀알정보 제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성과 평가, 격려금 지급 및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밀알정보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측정하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밀알 정보 조회 여부를 활용실적에 포함하기보다는 해당 정보가 실제 세액추징 등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측정·반영할 수 있도록 밀알정보 활용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특정업무경비 지급시 실제 근무일수와의 비례성 제고 필요

가. 현황

국세청이 2022년에 집행한 특정업무경비는 19,806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직원정보자료수집비 458억 1,000만원, 193팀에게 지급된 관서정보자료수집비 30억 7,900만원, 역외정보담당관실에 지급되는 역외정보수집활동비 18억 1,000만원과 기타 활동(조사, 감사, 예·결산 업무) 팀에 집행된 3억 6,400만원이다.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직원정보 자료수집비	관서정보 자료수집비	역외정보 수집활동비	기타 ¹⁾		전체
집행액	45,810	3,079	1,810	364		51,063
지급인원	19,806 (명)	193 (팀)	1(과) (본청 역외정보 담당관실)	조사	217(팀)	-
				감사	213(명)	
				예·결산	9(명)	

주: 1) 조사활동지원(195백만원), 감사활동비(155백만원), 예·결산활동비(14백만원)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서는 근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할계산 기준을 수립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에서는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 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경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는 조달청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 사례를 살펴보면, 월정액 지급시 실제 근무 일수를 고려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업무와 무관한 연가, 교육훈련, 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수가 해당 월에 일정 기준 이상(연속 및 비연속 포함, 근무일 기준)일 경우 해당 일수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당월 일수 기준)하여 지급하고, 경비 지급 처음 및 마지막 월은 무조건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다.⁶⁾

다만, 국세청이 수립한 2022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에서는 “매월 국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매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정액을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 근무자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자·휴직자 등 부과·징수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미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소 월 15일만 근무하면 특정업무경비의 월정액을 다 받을 수 있고, 1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서, 개인별로 지급받는 특정업무경비 액수와 근무 일수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직원 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6) <예시>

1) 3.3일 업무 시작 및 당월 연가 2일 있는 경우 - 4일 공제
2) 4.23일 업무 시작 및 당월 연가 1일 있는 경우 - 23일 공제

가. 현 황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¹⁾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송달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세금신고 및 세법개정 등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617억 3,200만원 중 615억 8,500만원(99.8%)을 집행하였고 1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고지서 등 발송	55,959	55,959	-	5,773	-	61,732	61,585	-	147	47,70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 등기우편·일반우편·모바일 발송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등 세법에서 서류의 송달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송달의 효력이 없는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 등은 일반우편과 모바일 발송을 하고 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00

[고지내용별 발송 방식]

고지내용별	발송 방식	비고
고지·독촉·강제징수 등	등기우편	서류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발생이 요구되는 경우
각종 신고 안내문 등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서류송달에 따른 법적 효력이 불필요한 경우

자료: 국세청

이 중 모바일 안내문 발송은 2019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전자고지」 시범사업에 국세청이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1차 발송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발송은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를 대상으로 각각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페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는 KT 컨소시엄과 수의계약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 대상이 되는 각종 신고 안내문을 1차로는 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를 통해 발송하고, 1차 발송이 실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컨소시엄)를 통해 2차로 발송하며, 2차 발송도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최근 5년간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발송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모바일 발송이 시작됨에 따라 일반우편의 발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우편물 발송건수 및 요금 지급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등기우편				일반우편				모바일	
	우편물센터		지방청 · 세무서		우편물센터		지방청 · 세무서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8	15,651	30,939	2,246	4,531	38,385	11,654	1,099	363	-	-
2019	16,462	34,331	2,221	4,800	29,170	9,366	914	321	5,083	593
2020	13,528	30,526	2,431	5,626	22,257	7,781	782	297	17,223	1,927
2021	13,376	32,287	2,485	6,191	16,341	6,081	858	333	24,273	1,829
2022	18,593	45,416	2,049	5,407	16,737	6,822	521	252	30,247	2,327

자료: 국세청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우편 단가와 모바일 발송 단가를 비교해보면 송달의 효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우편(규격 내) 발송단가는 건당 430원이고, 모바일 발송의 경우 카카오페이(발송+열람) 99원, KT 165원으로, 1·2차 모바일 발송 단가를 합쳐도 일반우편 단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부터 모바일 발송을 시작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2022년의 경우에는 약 3,000만건의 모바일 발송을 통해 10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우편 단가와 모바일 발송 단가]

(단위: 원)

연 도	등기우편	일반우편 (규격 내)	일반우편 (규격 외)	카카오페이			KT
				전자문서		알림톡 (문자)	전자문서(MMS)
				발송	열람		발송
2018	2,130	330	540	-	-	-	-
2019	2,180	380	590	-	110	-	143
2020	2,480	380	590	-	110	-	165
2021	2,530	430	640	22	88	11	165
2022	2,530	430	640	16.5	82.5	11	165

자료: 국세청

그런데 2022년도에 국세청 모바일 발송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으로 편성된 5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3억 4,700만원이었고, 일반우편의 경우 2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68억 5,200만원으로 초과집행되었다.

[우편요금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세사업명	편성내역	집행내역
우편요금	◦ 55,405백만원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우편물센터): 41,390백만원(17,295천건×2,480원×96.5%)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6,245백만원(2,518천건×2,480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우편물센터): 7,566백만원 · 우편발송 2,566백만원 (7,341천건×380원×92%) · 모바일발송 5,000백만원 (34,484천건×145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204백만원(536천건×380원)	◦ 61,178백만원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우편물센터): 45,415백만원(18,593천건×2,530원×96.5%) -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6,312백만원(2,049천건×3,080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우편물센터): 9,199백만원 · 우편발송: 6,852백만원 (16,737천건×430원×95.2%) · 모바일발송: 2,347백만원 (30,247천건×77원) -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지방청 및 세무서): 252백만원(521천건×485원)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우편발송 예산 절감을 위하여 모바일 발송 대상을 비중을 확대(82.4%)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집행 결과 모바일 발송은 전체 건수 대비 6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법인,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발송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모바일 발송실패 사례²⁾도 많아 실제 발송 건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휴대전화 2회선 이상 보유,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및 이용 정지 등

[2021~2023년 일반우편 및 모바일 발송건수 예·결산 현황]

(단위: 천건, %)

구분		일반우편 발송 (우편물센터)		모바일 발송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예산	7,681	20	30,772	80	38,403
	결산	16,342	40.2	24,273	59.8	40,615
2022년	예산	7,341	17.6	34,484	82.4	41,825
	결산	16,737	35.6	30,247	64.4	46,984
2023년	예산	16,341	34.1	31,601	65.9	47,942

자료: 국세청

[2021~2022년 모바일 발송 실패건수]

(단위: 천건, %)

구분	모바일 발송건수		모바일 발송 실패건수(비율)
	열람(카카오페이)	재발송(KT)	
2021년	17,549	6,724	2,790 (10.3)
2022년	23,014	7,233	2,332 (7.2)

자료: 국세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발송의 단가가 우편 발송에 비해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서 모바일 발송 건수는 당초 목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우편발송의 경우 물량 증가로 인해 연례적인 이용 증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의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이용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 · 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2.12 .20.)	부과 · 징수지원 (2131-300)	220-01	1,156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코로나19 세정지원 축소로 감소하였던 고지서 등 발송 건수가 예년수준으로 회복하 여 우편발송 예산 부족 사유 로 납세고지서 등 발송 예산 의 공공요금으로 이용
이용 (‘22.12 .2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110-04	520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이용 (‘22.12 .2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1,586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이용 (‘22.12 .2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2	997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이용 (‘22.12 .20.)	인건비 (7101-100)	110-01	2,370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료: 국세청

다만, 국세청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법인, 수신 거부자 제외) 발송하면서도 일부 안내문의 경우 특정 연령대(55세~70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상인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내용별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지침은 없으며, 관련 소관 국·실에서 안내문 내용, 안내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내용별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기준]

(단위: 건)

고지내용	모바일 발송대상 연령기준	우편 발송 건수	모바일 발송 건수
(등록임대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55세 미만	73,141	123,409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안내문	55세 미만	275,065	46,057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55세 미만	-	45,127
명의도용방지 안내문	60세 미만	-	36,640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60세 미만	5,691,933	5,678,738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60세 미만	1,099,486	388,30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60세 미만	4,865	9,135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안내	65세	30,235	25,22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	65세	355,112	1,480,478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신고 등 안내문	70세 미만	137,932	451,995

주: 연령 기준은 만 나이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³⁾에 따르면 고령층(만 55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4.2%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피쳐폰도 고령층의 14.2%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층 중에서도 모바일 형식으로 안내문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발송에 실패하더라도 우편을 통한 고지가 가능하므로 모바일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을 높여 모바일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 한해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나아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특정 플랫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12.)

폼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⁴⁾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의 효과성 및 국민 편의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세청은 현행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일반우편 발송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KISA, 더 편리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정착에 힘쓴다! - 선택권 강화, 표준 연계체계 마련 등 이용자 중심으로 체계 개편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2022.8.4.

확정채무 지급의 적정예산 편성 및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패소율 관리 필요

가. 현 황

확정채무 지급 사업¹⁾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자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476억 9,100만원을 전액(100%) 집행하였다.

[2022년도 확정채무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확정채무 지급	3,656	3,656	-	44,035	-	47,691	47,691	-	-	3,71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소송수행비용 사업²⁾은 중요 심판·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당초 적법한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80억 8,700만원 중 80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소송수행비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송수행비용	8,087	8,087	-	-	-	8,087	8,083	-	4	8,08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133-300

2) 코드: 일반회계 2133-301

나. 분석의견

확정채무지급 사업과 소송수행비용 사업은 국세청의 적법한 부과처분을 전제로 납세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은 최근의 고액소송 패소율 및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이·전용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확정채무지급 사업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자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① 패소소송비용(국가 패소 확정으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② 확정채무(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 패소확정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송물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대부분)가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2022년도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에 패소소송 비용 30억 9,000만원, 확정채무 5억 6,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으로 총 440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패소소송비용에 42억 1,200만원, 확정채무 43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다.

[확정채무 지급 사업 2022년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2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 패소소송비용	3,090	3,090	1,122	4,212	4,212
- 배상금 (310-02)	3,090	3,090	1,122	4,212	4,212
· 확정채무	566	566	42,913	43,479	43,479
- 배상금 (310-02)	566	566	42,913	43,479	43,479
합 계	3,656	3,656	44,035	47,691	47,691

자료: 국세청

최근 5년 국세청의 패소소송비용과 확정채무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패소소송비용은 202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이·전용을 통한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확정채무는 5년 연속 이·전용 증액을 통한 초과 집행이 발생하였다. 특히 확정채무의 경우 2022년에는 인건비 사업과 부과징수지원 사업으로부터 429억 1,300만원을 이·전용하여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소송비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예산액	2,572	2,342	2,749	3,090	3,090
집행	지급건수	230	176	158	114	140
	지급액	3,497	3,397	3,282	2,667	4,212
	이·전용 등	954	1,055	533	△423	1,122
	(세목명)	인건비	인건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코드)	110-01	110-01	220-01	220-01	220-01

주: 이·전용 등은 이용·전용·내역변경·조정 등 포함

자료: 국세청

[확정채무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예산액	411	385	469	566	566
집행	지급건수	24	15	27	29	13
	지급액	529	788	1,640	1,523	43,479
	이·전용 등	144	403	2,498	1,882	42,913
	(세목명)	인건비	인건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인건비
	(코드)	110-01	110-01	220-01	220-1	110-01

주: 이·전용 등은 이용·전용·내역변경·조정 등 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확정채무 지급 예산은 소송 패소를 원인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우발성이 높아 연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소송비용과 확정채무는 의무지출 사항으로서 경제 규모의 확대에 고액소송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복사건이 많아지는 등 소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관련 비용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확정채무 지급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집행지침상의 규정과 달리 인건비와 타 비목 간 전용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근의 고액소송 패소를 및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확정채무 지급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이·전용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대형로펌과의 소송 및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적법한 부과처분을 유지하여 국세행정의 정당성·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제고하고 세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수행비용 사업을 통해 중요 심판·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³⁾하는 등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소송수행비용 사업의 2022년도 예산에는 변호사 수수료, 고문변호사 비용, 법률상담실 운영 및 승소장려금 지급에 총 80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80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다.

3)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론 3회 이상 진행된 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후행사건,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액사건(50억원 이상)
2.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선행사건
3. 선례가 없는 법령해석사건
4. 금융,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5.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② 소송대리인은 쟁점별 수행이력·패소율·사건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사건과 소가가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송수행비용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 8,087백만원 - 변호사 수수료 7,441백만원(587건 × 12.7백만원) - 고문변호사 비용 48백만원(12명 × 33만원 × 12월) - 법률상담실 운영 7백만원(월 55만원 × 12월) - 등기송달료 6백만원(월 0.5백만원 × 12월) - 업무추진비 3백만원(월 25만원 × 12월) - 승소장려금 582백만원(2.8천건 × 204천원)	◦ 8,083백만원 - 변호사 수수료 7,441백만원 - 고문변호사 비용 45백만원 - 법률상담실 운영 7백만원 - 등기송달료 5백만원 - 업무추진비 3백만원 - 승소장려금 582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소송가액별 패소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사이 국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22년도의 경우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은 50%로 절반 수준이었다.

[소송가액별 패소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억원 미만	패소건수	35	25	21	23	31
	패소율	6.5	5.2	4.5	5.5	6.6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패소건수	52	74	52	56	62
	패소율	8.3	10.8	9.0	9.1	10.3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패소건수	51	37	33	41	40
	패소율	23.2	20.3	17.7	20.2	21.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패소건수	15	11	10	18	7
	패소율	37.5	34.4	28.6	34.0	21.2
100억원 이상	패소건수	17	16	12	11	19
	패소율	40.5	41.0	30.8	23.4	50.0
계	패소건수	170	163	128	149	159
	패소율	11.5	11.4	9.8	11.1	12.0

주: 패소건수 및 건수패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한편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의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0% 중후반 수준의 패소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의 경우 2022년도에 패소율이 44.2%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형로펌과의 소송 패소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처리건수	244	165	216	242	232
	패소건수	73	51	50	61	57
	패소율	29.9	30.9	23.1	25.2	24.6
고액소송 (50억원 이상)	처리건수	57	54	47	75	52
	패소건수	22	20	16	21	23
	패소율	38.5	37.0	34.0	28.0	44.2

주: 1. 대형로펌: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가나다 순)

2.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불복 인용률을 낮추기 위하여 고액 심판사건을 중심으로 조세전문 대리인을 적극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인은 선택이 없는 쟁점,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 사건 등 난이도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선임되어 내부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 비해 패소율이 높을 수 있고, 실제 국세청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한 소송의 패소율은 41%(건수 기준)로 전체 패소율 12% 대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리인 선임 소송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기준	전체	처리	1,469	1,421	1,309	1,341	1,325
		패소	170	163	128	149	159
		패소율	11.5	11.4	9.8	11.1	12.0
	대리인 선임	처리	123	145	148	132	122
		패소	59	62	52	52	50
		패소율	48.0	42.8	35.1	39.4	41.0

주: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소속된 내부 변호사의 평균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3.7년으로 비교적 짧고⁴⁾, 신규 변호사 채용 공고에 대한 지원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⁵⁾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이 증가하는 조세소송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 및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 외부의 전문가 활용도 필요하지만, 내부 변호사의 채용방식이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평균 재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세청의 자체적인 소송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하여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하고, 불복결과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신분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⁶⁾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는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⁷⁾

다만, 이와 같이 소송 결과를 직원의 성과에 직접 반영하는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과세 업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증 및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2018년 2.6년, 2019년 3.0년, 2020년 2.8년, 2021년 3.5년, 2022년 3.7년

5) “국세청의 변호사 구인난 ‘심각’…징세과 6급 채용 공고, 올해만 5번째”, 세정일보, 2023.3.17.

6) 국세청,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2.7.22.

7)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국세청 보도자료, 2023.2.2.

가. 현 황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¹⁾은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제도²⁾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자료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62억 2,900만원 중 90.3%인 5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9,640	9,332	-	△3,103	6,229	5,623	-	606	8,213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압류재산공매³⁾ 사업은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행정비, 대위등기비의 지원 및 체납 추적팀의 보호장비 구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67억 1,400만원 중 89%인 59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압류재산공매	5,194	5,194	-	1,520	6,714	5,973	96	645	3,99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3137-300

2)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

3) 코드: 일반회계 2232-301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법률의 개정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관련 예산을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에서 국세청은 3단계 상용근로·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세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불용 및 타 사업으로 이용하였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8개 인적용역 업종⁴⁾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 내용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인적용역,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2단계)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3단계) 상용근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1단계 및 2단계의 경우 인적용역,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관련 법안이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법안 개정은 2021년 6월에 국회 의결되었다.

4)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이행 계획 및 현황]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세법개정 (실시간 소득파악)	인적용역, 일용근로 (‘21.7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21.11월~)	상용근로, 기타소득 (‘22.7월~)
이행여부 및 이행현황	○	○	× (‘24.1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산재보험 적용 특고 등 (‘21.7월~)	플랫폼 종사자 (‘22.1월~)	기타특고 (‘22.7월~)

자료: 국세청

다만, 국세청은 3단계 상용근로·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세법 개정이 2022년 7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에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에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홍보비, 도움 창구 운영에 따른 일용임금 등 관련 예산 5억 9,5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31억 300만원은 연말에 이용(2022.12.20.)하여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예산 부족분에 사용하였다.

상용근로·기타소득 제출주기 단축 관련 개정안은 상용근로소득(반기 → 월), 일회성 강연자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연간 → 월)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여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도 일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적법한 제도에 기반하여야 하는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개정될 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법률 개정의 지연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압류재산공매의 내역사업인 보호장비 사업에서는 바디캠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배정된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다.

보호장비 사업은 2022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수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추적팀의 보호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2년도 보호장비 사업에 1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방검조끼 7억 3,000만원, 바디캠 6억 2,700만원이다.

바디캠은 몸에 장착하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장치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는데, 국세청에서 체납자 추적·징수활동을 위해 바디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및 운영 규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하여 규율하고 있어 바디캠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공매 사업에서 보호장비 구매를 위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바디캠 구입에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바디캠 구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⁶⁾

그러나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1. 9. 28. 정부 제출)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었고, 결국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세청은 2022년도에 바디캠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해당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다. 이후 2023년 3월 14일에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었는바, 국세청은 향후 필요한 경우 바디캠 구매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의 개정을 전제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보호장비 등의 구매 예산 편성시에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 장비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관세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75억 6,800만원이며, 6,20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4%인 582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5,532억 5,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9억 7,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568	37,568	37,568	620,441	58,217	553,253	8,971	9.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2022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129억 7,100만원이며, 이 중 96.1%인 5,89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8억 4,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14,134	611,608	612,971	589,269	3,895	19,844	96.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관세청의 자산은 4조 1,728억 3,900만원, 부채는 2조 8,373억 1,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355억 2,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조 7,936억 3,400만원, 투자자산 7억 9,800만원, 일반유형자산 1조 3,281억 6,300만원, 무형자산 421억 9,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0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5,644억 4,900만원(△38.1%) 감소하였다. 이는 미수국세 등 미수채권 2조 5,845억 6,100만원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2조 5,819억 9,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조 7,941억 600만원, 장기차입부채 267억 400만원, 장기충당부채 165억 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7,159억 5,400만원(△48.9%) 감소하였다. 이는 미지급국세 등 기타유동부채 2조 5,859억 9,100만원 감소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 1,237억 6,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172,839	6,737,288	△2,564,449	△38.1
Ⅰ. 유동자산	2,793,634	5,375,633	△2,581,999	△48.0
Ⅱ. 투자자산	798	207	591	285.5
Ⅲ. 일반유형자산	1,328,163	1,311,821	16,342	1.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2,197	41,807	390	0.9
Ⅵ. 기타비유동자산	8,047	7,820	227	2.9
부 채	2,837,318	5,553,272	△2,715,954	△48.9
Ⅰ. 유동부채	2,794,106	5,380,722	△2,586,616	△48.1
Ⅱ. 장기차입부채	26,704	32,273	△5,569	△17.3
Ⅲ. 장기충당부채	16,508	140,277	△123,769	△88.2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335,521	1,184,016	151,505	12.8
Ⅰ. 기본순자산	691,124	691,124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197	△164,465	163,268	△99.3
Ⅲ. 순자산 조정	645,594	657,357	△11,763	△1.8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282억 1,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462억 8,600만원, 관리운영비 4,783억 8,800만원, 비배분비용 679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644억 2,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354억 3,400만원(△30.8%) 감소한 5,282억 1,5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순원가 196억 1,700만원 감소, 관리운영비 186억 6,700만원, 감소, 기타비용 등 비배분비용 755억 3,300만원 감소, 기타수익 등 비배분수익 1,216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프로그램(504억 9,700만원)과 수출입통관 프로그램(285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303억 2,400만원과 경비 1480억 6,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679억 5,700만원, 비배분수익은 기타수익 1,268억 5,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관세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46,286	165,903	△19,617	△11.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46,286	165,903	△19,617	△11.8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478,388	497,055	△18,667	△3.8
III. 비배분비용	67,962	143,494	△75,532	△52.6
IV. 비배분수익	164,421	42,803	121,618	284.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28,215	763,649	△235,434	△30.8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528,215	763,649	△235,434	△30.8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1,840억 1,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3,355억 2,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515억 600만원(12.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354억 3,400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 또한 기초 대비 1,649억 2,6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05억 6,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7,496억 9,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82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17억 6,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관세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184,016	1,152,579	31,437	2.7
Ⅱ. 재정운영결과	528,215	763,649	△235,434	△30.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92,483	641,922	50,561	7.9
Ⅳ. 조정항목	△11,762	153,164	△164,926	△107.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35,522	1,184,016	151,506	12.8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밀수단속 사업이 있다. 밀수단속 사업은 온라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내역사업 용역비 등 3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특송화물 통관지원**, ② **통관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다. 2개 증액 사업 모두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단속을 위한 것으로,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특송물류센터 X-Ray 검사시설 확장 24억원,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비파괴 검사장비 도입 3억원 등 총 27억원이 증액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없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수출입통관촉진 및 안전관리**, ② **정보관리(정보화)**, ③ **관세행정활동지원** ④ **인건비** 등이 있다. 증액사업은 없으며, 감액사업으로 수출입통관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여행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인쇄비용(수용비) 2억원 감액(4억 8,400만원 → 2억 8,400만원),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은 세관 정보화 지원(수용비) 1억원 감액(23억 6,800만원 → 22억 6,800만원), 관세행정활동지원은 국내·외 여비등 8억 8,200만원 감액(77억 1,800만원 → 68억 3,600만원),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은 연가보상비 4억 9,500만원을 감액(29억 3,100만원 → 24억 3,600만원) 등 총 24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다.

관세청은 ① 완전한 경제·일상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 구현**, ③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④ 불법·부정무역 단속으로 **대외경제질서 확립**, ⑤ 개인무역시대에 최적화된 **관세행정으로 혁신**, ⑥ 디지털 시대의 **관세행정 지능화 및 선진화**를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관세청의 2020~2022년도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3~0.4% 수준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다. 관세청의 전체 미수납액 중 가산금 비중이 91.3%이고 관세청 전체 불납결손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95.6%로 가산금이 관세청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관세청이 2022년도에 실시한 일제정리기간의 가산금 징수실적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8억 2,200만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세청의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2022년도 검사비용 지원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2022년에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2023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지원 금액의 상한을 두거나 지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청은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연도 신청 건에 대한 지원이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셋째, 관세청은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을 통해 드론을 도입하여 항만감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보유한 드론의 잦은 오작동과 기체 결함 등의 문제

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및 인천 세관의 드론 운용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부산 세관의 경우 2022년 5월부터는 드론 운용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을 도입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도 없다는 점에서 당초 드론을 도입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가산금은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가산금으로 기본 가산금 3%에 증가산금 매월 0.75%가 부과된다. 이는 「관세법」 제41조¹⁾를 근거로 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관세법」 개정²⁾에 따라 가산금이 폐지되고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이 가산세³⁾로 전환되었다.

가산금에 대한 관세청의 2022년도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5,154억 5,900만원 중 19억 7,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049억 1,600만원이며 85억 7,2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관세법」

제41조(가산금) 삭제 <2019.12.31.>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략

2)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로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⑦ (생략)

[2022회계연도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코드)	2022							2023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가산금 (12-58-581)	1,000	1,000	1,000	515,459	1,972	504,916	8,572	1,35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가산금의 수납실적이 저조하므로 관세청은 연례적 조치로 실시하는 일제정리기 간을 내실화하고, 관세 및 가산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22년도 가산금 세입예산을 2021년도 수입예상액(12억 6,000만원)에 가산세 전환 효과(2억 6,000만원)를 차감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액 기준 수납률은 197.2%로 높게 나타났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0.4%로 낮은 수치이며 전년도 0.3%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도 가산금 불납결손액은 85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34억 5,500만원 대비 148.1% 증가하였다.

[관세청 가산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C/B)
					징수 유예	통관 진행중	정리 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납 정리중 ¹⁾			
2020	770	432,405	1,631	127,737	3	237	23,069	39,869	64,560	3,037	211.8	0.4
2021	1,260	459,429	1,473	154,501	0	177	7,746	29,483	117,095	3,455	116.9	0.3
2022	1,000	515,459	1,972	504,916	0	105	12,137	12,323	180,351	8,572	197.2	0.4

주: 1) 납부독려, 재산압류, 교부청구 등 강제징수 활동 중

자료: 관세청

이를 앞서 살펴본 관세청의 전체 세입 결산과 비교해보면 관세청의 전체 미수납액 5,532억 5,300만원 중 가산금 미수납액(5,049억 1,6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1.3%이며, 관세청 전체 불납결손 89억 7,100만원 중 가산금 불납결손액(85억 7,2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5.6%로 관세청의 세입 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산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舊 「국세징수법」 제21조3)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2020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한 국세청의 경우 2022년도 가산금 예산액 4,301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 4조 6,725억 1,100만원, 수납액 3,648억 6,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 84.8%,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7.8%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가산금 수납률과 비교하면 관세청의 가산금 징수실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가산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C/B)
					납부기한 등 연장	정리 유예	체납 정리중			
2020	740,900	5,311,973	747,474	4,178,452	12,650	378,316	3,787,486	386,047	100.9	14.1
2021	565,000	5,074,409	554,108	4,043,022	11,222	366,159	3,665,641	477,279	98.1	10.9
2022	430,133	4,672,511	364,862	4,061,836	8,865	343,772	3,709,199	245,813	84.8	7.8

자료: 국세청

3) (舊)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18.12.31. 삭제)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관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가산금 수납률이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이나 다른 세입의 수납률과 비교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관세청은 고세율 농산물 체납(1.4조원, 전체의 74%)이 대부분으로 무재산·폐업 등으로 인한 체납액의 지속 이월로 가산금 수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가산금 등에 대한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상시적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수행하고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제정리기간의 운영은 관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수납률 제고방안에 포함되는 연례적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수납률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산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별 실적을 보면 2022년도 일제정리기간의 가산금 징수실적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8억 2,200만원 대비 그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일제정리 기간별 가산금 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기간	건수	금액
2018	상반기	'18.05.14. ~ 06.08.	4,604	261
	하반기	'18.10.29. ~ 11.23.	4,932	286
2019	상반기	'19.05.27. ~ 06.21.	4,484	222
	하반기	'19.11.04. ~ 11.29.	3,959	446
2020	상반기	'20.06.01. ~ 06.26.	495	23
	하반기	'20.11.09. ~ 12.04.	890	582
2021	상반기	'21.06.07. ~ 07.02.	412	768
	하반기	'21.11.08. ~ 12.03.	391	54
2022	상반기	'22.06.07. ~ 07.01.	117	7
	하반기	'22.10.31. ~ 11.25.	535	34

자료: 관세청

가산금은 단순히 정부의 세입 재원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행정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금전상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가산금 미수납액은 법집행의 실효성을 낮추고 성실한 납부자와

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가산금이 2020년 이후 가산세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관세법 부칙 경과조치⁴⁾에 따라 법 시행(2020.1.1.) 전 납세신고 또는 부과지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⁵⁾, 재산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금융 재산 등 압류 시 소멸시효⁶⁾는 중단되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 가산금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금의 성격상 근본적으로는 본세인 관세의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인바, 관세청은 미수납액의 유형별 관리,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강화, 미수납액 정리기간 운영 내실화 및 확대, 각종 행정제재 강화 등 관세 및 가산금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관세법 부칙(제16838호 '19.12.31.)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5) 다만, 2025년 이후에는 관세법 시행(20.1.1.) 전 납세신고 또는 부과지 분의 부과제척기간(5년) 도래로 인해 가산금이 신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는 10년, 이외 관세는 5년

I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지정·고시 필요

가. 현 황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¹⁾은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 비용 및 검사비용 지원 업무 용역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73억 4,600만원 중 99.7%인 7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비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7,346	7,346	-	-	-	7,346	7,322	-	24	6,74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은 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비용 부담 경감, ② 공익확보, ③ 민원해소 및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관세법」 제173조제3항²⁾ 및 「관세

이상아 예산분석관(iv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

2)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화주의 검사비용³⁾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사비용 지원은 지원요건 심사 및 금액 심사 등 검사비용 지급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2022년도 지원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 취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한을 두거나 지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비용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이 시작된 2020년부터 비용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지원 검사비용 집행률이 29.3%로 저조하였으나,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의 경우 집행률이 100%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수출입화물 검사비로 편성된 예산액 68억원 대비 실제 검사비용 지원 신청액수가 7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이 이루어졌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컨테이너화물 정밀검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연도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원 예산액	신청 검사비용	지원 검사비용 ¹⁾	집행률
2020	7,134	2,836	2,090	29.3
2021	8,625	8,217	7,411	85.9
2022	6,800	7,710	6,800	100.0

주: 1)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건수(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입건)·수출직제지·수출반입후)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도에 편성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은 2022년 12월 15일자로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다. 「관세법」 제17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검사받은 건의 비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세청은 당해연도에 검사 및 신청 건수가 많아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월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액 누계	432	788	984	1,395	2,500	3,096	3,777	4,335	5,012	5,545	6,403	6,800
집행률	6.4	11.6	14.5	20.5	36.8	45.5	55.5	63.8	73.7	81.5	94.2	100.0

자료: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예정액 포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예산	집행액	실 소요액	비 고
2021	8,625	7,411	7,411	
2022	6,800	6,800	7,300	+500 ¹⁾
2023 (3월 기준)	6,200	2,105	-	

주: 1) 2022년에 신청한 7,710백만원 중 지급요건 등을 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검사비용을 예산 부족으로 2022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23년 초에 지급한 금액임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비용 지급신청 건은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실제 검사비용 지원의 평균 소요시간(신청 → 지급)은 약 14일 정도로 추정된다.⁴⁾ 따라서 검사비용 지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 말까지 지급처리가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가급적 2022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2022년도 검사비용 지원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2023년도 예산(62억원) 편성 시 예산안 제출시점인 2022년 5월까지의 검사비용 집행액과 연평균 물동량 증가율(6%)을 토대로 단순 산술적 방식으로 추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의 소진으로 신청액 중 당해연도에 지급되지 못한 비용이 다음 해에 지급되고 있고 검사비용의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검사비용 지급액의 상한 제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검사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검사규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⁵⁾

따라서 현재 관세청은 화주가 실제로 지불한 검사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화주가 지불한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검사비용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한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내역사업을 통해 수출입업체 대상 홍보 등 운영비 예

4) 예산이 투입되는 검사비용 지원사업의 특성상 신청·심사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시스템(관세청)과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회계시스템(기재부)이 상호 분리되어 있어 검사비용 지원센터에서 수기 관리하는 자료로 파악하였다.

5)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수출입 물량의 증가, 검사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검사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연말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금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수입·수출입검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206】검토보고서, 2019.11. 기획재정위원회, p.30)

산 5,800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산출내역]

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검사비용지원 사업운영비	5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58백만원 가.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및 설명회 개최 (58백만원)

자료: 관세청

다만, 2020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첫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관세청의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검사비용을 신청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2년의 경우 검사비용 신청액이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의 홍보 및 설명을 위한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의 위탁 규정 취지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1호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제8항7)에는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6) 「관세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 4. (생략)

7) 「관세법」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은 기본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고시하지 않고, 매년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첫 해인 2020년에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부터는 매년 해당 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이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1회 공고 실시 이후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비용지원 업무용역비 위탁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2 년도 예산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 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계약 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2020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198	2020년 수출입화 물 검사비용 지원 업무 민간위탁	198	198	(주) ○○○ ○○○	'20.7.1~ '20.12.31	일반 경쟁	-
2021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445	2021년 수출입화 물 검사비용 지원 업무 민간위탁	445	442	(주) ○○○ ○○○	'21.1.1~ '21.12.31	일반 경쟁 →수의	단독응찰 에 따른 유찰
2022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458	2022년 수출입화 물 검사비용 지원 업무 민간위탁	458	449	(주) ○○○ ○○○	'22.1.1~ '22.12.31	일반 경쟁 →수의	단독응찰 에 따른 유찰
2023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453	2023년 수출입화 물 검사비용 지원 업무 민간위탁	453	445	(주) ○○○ ○○○	'23.1.1~ '23.12.31	일반 경쟁 →수의	단독응찰 에 따른 유찰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2020년 7월 최초 사업 시행 시, 관세법 시행령대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의 위탁을 고려하였으나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선정이 어려워 부득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세업무 경력자·무역학과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구성하고 중요사항은 관세청 사업담당자·세관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완하여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시행 첫 해 이후 계속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동일한 수탁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의미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⁸⁾ 및 실태조사⁹⁾, 기술평가¹⁰⁾

8) 「관세법」

제20조(지정요건)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등의 규정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고시할 경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공성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관세법 시행령」은 검사 비용 지급 업무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고객지원센터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신청서 심사, 지원금액 확정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국회는 관세청에게 “화주에 대한 검사비용 지급 업무를 「관세법 시행령」 규정대로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¹¹⁾

이러한 점에서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또는 적출·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

4 제9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

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세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제21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10)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2. 제26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
3. 그 밖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현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통관·회계·경영분야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통관물류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수출입안전검사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 합계 점수 순위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결정한다.

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2.11.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을 법령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할 필요

가. 현 황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¹⁾은 관세탈루심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급증하는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심사²⁾ 수요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면서도 공인심사에 소용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서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9억 9,000만원 중 96.5%인 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관세탈루심사	2,123	2,123	-	30	2,153	2,093	-	60	2,098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990	990	-	-	990	955	-	35	99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관세청은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을 일반용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세법령상의 위탁규정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세탈루심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은 「관세법」 제255조의3³⁾ 및 제329조제5항제3호⁴⁾,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⁵⁾에 근거한다. 이에

이상이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2) 수출입업체 등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출입통제·시설보안·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

3)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

따르면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관세청은 동 사업이 수행된 첫 해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업무의 실제 주체는 관세청이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업무 일체가 아닌 ‘심사 지원’ 업무를 위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5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예산액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 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계약 금액)	수탁 기관		
2019	일반용역비 (210-14)	1,17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사업	1,178	1,119	(사) ○○○ 진흥 협회	수의 계약	법령에 의한 위탁

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예산액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 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계약 금액)	수탁 기관	계약 기간		
2020	일반용역비 (210-14)	99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사업	990	945	(사) 〇〇〇 진흥 협회	'20.1~12	수의 계약	법령에 의한 위탁
2021	일반용역비 (210-14)	99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사업	990	941	(사) 〇〇〇 진흥 협회	'21.1~12	수의 계약	법령에 의한 위탁
2022	일반용역비 (210-14)	99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사업	990	947	(사) 〇〇〇 진흥 협회	'22.1~12	수의 계약	법령에 의한 위탁
2023	일반용역비 (210-14)	99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사업	990	947	(사) 〇〇〇 진흥 협회	'23.1~12	수의 계약	법령에 의한 위탁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 기반 재작성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제반 비용으로,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행해야 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210-14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근거 법령인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을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로 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심사 업무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관세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AEO 공인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관세청에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지원 업무를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관세법령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으로 단독 지정·고시(2018.12.)된 (사)○○○진흥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에 의한 위탁”이라고 하면서도 동 위탁사업을 일반용역비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관세청이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지정·고시한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경비 잔액 국고 환수 절차, 성과평가, 위탁대상업무 편람 작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청은 동 사업을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요건들을 준수·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서 관세청의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의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 위탁 사업’과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접수심사 위탁 사업’은 동일한 위탁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각 항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민간위탁사업(320-02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0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관세청은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위탁’ 사업을 일반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최초 지정공고시 단독 지정된 수탁기관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탁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탁기관 추가 지정 공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18년에 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다. 이때 계획상 예정 지정 기관은 2개 기관이었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사)○○○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하여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2018.12.). 이후 추가 지정 공고 등은 없었기 때문에 2019년~2023년의 심사업무의 위탁은 (사)○○○진흥협회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⁶⁾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인 심사 업무의 일관된 운영 및 위탁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 2018년 지정 후 추가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수탁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세부평가 점수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기관을 둘 이상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수탁기관이 단독 지정된 2018년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공인심사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평균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복수 지정을 통해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위탁할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계획 공고 → 지정신청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신청기관 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심의 →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공인(서류)심사 업무 위탁계약 체결

[AEO 공인심사 평균 소요 기간]

(단위: 일)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류심사	50	55	65	77	71
현장심사	47	49	40	52	60
총 심사기간	97	104	105	129	131

자료: 관세청

나아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지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인 경우 수탁기관의 실적 평가나 그에 따른 환류 조치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위탁사업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업무의 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수탁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사업¹⁾은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관세행정 고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개도국 세관 절차의 선진화를 지원하며 개도국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53억 700만원 중 72.2%인 3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도국관세행정 현대화지원(ODA)	5,307	5,307	-	-	5,307	3,834	-	1,473	8,04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사업²⁾을 통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또는 BPR 사업의 대상국 발굴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사업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531-302

2) 코드: 일반회계 1441-501

[ODA 사업 집행절차]



(자료: 관세청)

이에 관세청은 2022년도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하여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BPR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하여 앙골라, 부룬디, 잠비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 사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보츠와나에 대한 BPR(업무재설계)을 수행하고 마다가스카르('22~'26), 과테말라('22~'26)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였다.

[단계별 사업내용 비교]

세부사업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내역사업	사업타당성 조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 목적	프로젝트 유형의 ODA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이행 절차(16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 '13.8.23.)로,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행 가능성 및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	우리 관세 제도·절차가 내재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해외로 확산하여 우호적 통관환경을 구축하고, 개도국의 무역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함으로써 우리 IT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기여
추진 내용	프로젝트의 목표, 예상 결과, 구현계획, 사업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 수립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운영·유지보수, 기자재 설치, 초청 연수를 통한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 등
사업절차	ICT·관세행정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사업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선정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 체결 → 시스템 구축 수행사 선정 → 개발사업 수행 → 운영·유지보수 지원
'22년 추진 내역	사업대상국 발굴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①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② 앙골라 BPR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③ 부룬디 BPR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④ 잠비아 BPR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①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현대화 사업 ②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③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사업 ④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 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및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도국 세관 절차의 선진화를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수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자 선정시 계약유형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탁사업자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대상국과의 사전협의 및 추진 상황 점검을 면밀히 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요조사·후보국 선정(Y-2) → 사전타당성 조사(Y-2) → 사업시행 계획 심의(외교부·국무조정실)(Y-1) → 예산심의(Y-1) →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Y) 순으로 수행하며,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안 편성·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전자통관시스템구축 사업은 ① 시스템(S/W) 분석·개발, ② 관련 기자재(H/W) 설치, ③ 운영·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사업관리 위탁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난이도,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수행 전문가가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측면을 지원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구축 사업은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상대국 실시기관과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사항을 합의하여 작성하는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 체결 및 시스템 현대화 사업 수행사 선정을 위한 조달 발주 절차 지원이 중요하여 대상 사업(시스템 현대화)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쏠 단계에 걸쳐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동 위탁 사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낙찰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일반 연구비 (260-01) 1,864	①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사업	317 (4,984)	315 (4,886)	○○○○○ ○○○○○ 연합회	'22.12.28. ~'26.12.27.	일반경쟁 ⇒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② 과테말라 전자통 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1,312 (5,849)	1,298 (5,775)			
	③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사 업	121 (365)	108 (327)	○○ 기술단	'22.5.11. ~'22.11.7.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④ 과테말라 전자 통관시스템 고도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	138 (384)	124 (344)		'22.5.10.~ '23.1.5.	

자료: 관세청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³⁾ 본문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전자통관시스템 위탁관리 사업(③, ④)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4.22, 4.15)의 40일 전보다 늦은 3월 15일, 4월 1일에 각각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 공고기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

3)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입찰공고 기간은 입찰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조달청에서 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원칙적인 공고기간인 40일보다 단축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적용되는 특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정해진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고, 당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서도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⁴⁾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의 취지, 기획재정부 계약지침의 목적 및 한시적·특례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내용, 성질, 용역수행자의 유형이나 업종 등이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요건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등으로 매출이나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시적·특례적 계약지침을 근거로 모든 경쟁입찰의 입찰공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의 경우 용역기간이 30~32개월인 장기계약으로서 해당 위탁사업자는 대상 사업(시스템 현대화)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친 사업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바, 입찰

4) 이는 한시적 조치사항으로 2022.12.31.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2022.12.30. 재연장되어 2023.6.30.까지 적용 연장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3.12.31.까지 연장되었다(2023.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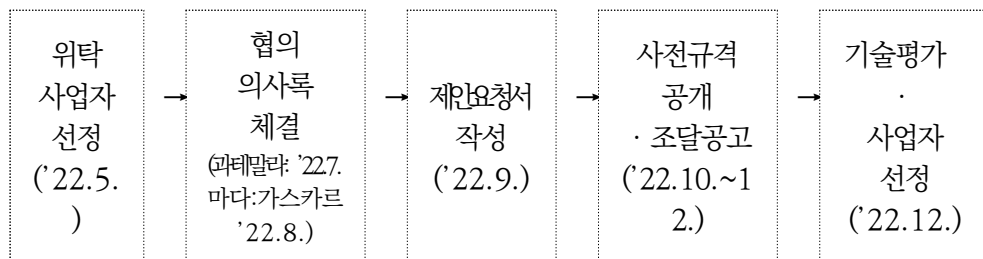
공고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둘 경우 용역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명시된 입찰공고 기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도에 시작된 마다가스카르와 과테말라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①, ②)은 2020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에 사업시행계획 및 예산심의가 이루어졌고, 2022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

과테말라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2년 3분기에 사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역시 2022년 4분기에 사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2건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계약은 2022년 12월 말이 되어야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과테말라의 경우 수원국(개도국)의 복잡한 행정절차⁵⁾ 등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지연되었고,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무관한 사무기기 지원을 시스템 구축 사업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 중에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절차]



자료: 관세청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은 면밀한 사업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국(개도국)의 특성 및 위탁사업자 선정 이후 협의의사록 체결부터 사업자 선정을 통한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

5) 1단계(과테 조세청과 R/D체결, '22.7월) → 2단계(駐과테말라 한국 대사관과 외교문서 교환, 10월) → 3단계(과테 조세청과 세부협력문서 서명, 11월)

※ 통상 1단계인 R/D 체결만 이루어지나 과테말라 내부절차에 따른 요청으로 2, 3단계도 이루어짐

등을 감안할 때, 위탁사업자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전 대상국과의 협의 및 추진 상황 점검을 면밀히 하여 실제 계약 체결이 계획 대비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사전타당성 검증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 2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개도국을 지원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상황이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본 사업의 착수시 수원국의 사업 진행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사업의 개도국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내역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BPR)은 국가별로 사업 수행사를 선정하고, 수원국 업무 프로세스 현황을 분석하여 미래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시범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개도국의 경우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많고, 우리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행정 현황 분석을 통한 미래모형설계 등 업무재설계(BPR)가 사업성공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2년도 BPR 사업의 대상 4개국(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보츠와나) 중 조지아, 보츠와나의 BPR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2022년 12월에 마무리된 반면,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이해된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2022년도 4월 중순까지는 사업에 적극적이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의 아제르바이잔 측의 예산용도 변경 요구⁶⁾ 및 사업 실행 거부로 사업 지속이 곤란하여 사업이 중단(2022.5.31.)된 것으로 나타났다.

6)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SCC)는 관세 분야에 자체 현대화를 추진중으로 이미 파악된 분야에 대해 컨설팅 대신 사업금액의 50%를 ICT 자원 업그레이드에 할당 요구(2022.4.21.)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2,836	2,836	-	2,836	1,444	1,392	2,236
일반수용비(210-01)	18	18	-	18	18	-	14
국외여비(220-02)	80	80	-	80	26	54	860
일반연구비(260-01)	2,738	2,738	-	2,738	1,400	1,338	2,162

자료: 관세청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BPR 사업은 계약액 6억 7,100만원 중 1억 1,500만원(컨설팅비, 직접경비 등)만 투입되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내역사업에서는 사업 대상국 4개국 중 2개국의 불가항력 사유(우크라이나 전쟁) 및 사업 실행 거부(아제르바이잔)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3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아제르바이잔 BPR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계약액	컨설팅비 (투입인력)	직접경비				합 계 (집행액)
		① 보고서 인쇄비	② 통·번역 (투입인력)	③ 현지방문 (실비+취소수수료 등)	④ 초청 연수	
671,000	80,729	-	31,229	3,012	-	114,970

주: 계약종료일인 '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컨설팅비 및 통·번역비는 인력 투입률에 의거,
직접경비는 투입된 인력·자재 등의 비용 증빙 내역을 받아 실비 정산

자료: 관세청

2022년도 BPR 사업대상이었던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보츠나아에 대하여는 2020년에 BPR 수행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⁷⁾ 해당 결과 보고를 통해 각 국에 대한 BPR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

7) 조사기간: 2020.10.19.~11.17.

구하고 2022년도 BPR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전쟁, 협의되지 않은 요구사항)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BPR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사전타당성 검증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 2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고, 개도국을 수원국으로 하여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대내외적 상황이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청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 이전에 수원국의 사업 진행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함으로써 ODA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¹⁾은 세관이 보유한 통관·감시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장비 고장과 불시장에 발생시 신속 대처하는 등 차질 없는 검색업무를 지원하고, 통관·감시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고장소요 부품 등을 지원하여 장비 가동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101억 5,500만원 중 97.9%인 99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10,155	10,155	-	-	-	10,155	9,937	-	218	10,08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이 보유한 드론의 잦은 오작동과 기체 결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드론 운용 실적도 저조하여 당초 드론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은 향후 드론 보유 및 지속적인 운용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처분을 포함한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2017.11.)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관세청은 타 부처 주관 실증사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43-301

업에 참여하였고(2017~2018년)²⁾, 자체 시범운영 등을 통해 드론을 항만감시업무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CCTV, 감시정을 이용한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드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의 드론 보유현황]

세 관	도입 연월	수량 (대)	도입금액	기체크기	비고
부 산	'19.12월	9	592백만원	970 × 970 × 500mm	총10대(△1) ¹⁾)
인 천	'20.12월	4	397백만원	1,850 × 1,850 × 750mm	

주: 1) 드론 1기가 해상추락 사고로 불용처분('22.7월) ⇨ 전손 보험처리('22.9월)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드론 활용과 관련한 내부 지침으로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2021.11.)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기별 월평균 2시간, 5회 이상(야간 1회 이상 의무 포함) 비행 기준, 점검 및 인원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드론을 보유한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의 월별 평균 드론 운용 시간을 보면 기기별 월평균 운용시간이 각각 20.7분, 67.5분으로 지침상의 기준인 2시간(120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산세관의 경우 기기 결함 오작동 사고 등으로 인해 2022년 5월부터는 드론 운용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보유 드론 운용시간]

(단위: 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	9	30	18	-	-	18	10	-	28	40	9	13.5
2021	35	6	14	28	11	14	19	14	17	69	105	106	36.5
2022	61	72	58	57	-	-	-	-	-	-	-	-	20.7

주: 기기결함 오작동 사고로 운용 중단('22.4월) → 조달청 하자신고('22.7월) → 조달청 중재하에 세부 이행 사항¹⁾ 합의('22.12월) → 합의사항 이행 中으로 운용 실적 저조

1) 무상보증 8개월 연장, 전 기체 수리점검 및 비행테스트, 비행테스트 완료된 기체로 조종자 교육 등
자료: 관세청

2) 2017년 산업자원부 주관 실증사업 및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규제샌드박스 참여

[인천세관 보유 드론 운용시간]

(단위: 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	-	-	-	-	-	-	-	-	-	-	-	-
2021	90	120	41	90	53	59	-	16	53	16	91	57	57.2
2022	64	61	72	60	61	30	60	61	65	67	83	126	67.5

자료: 관세청

실제 부산세관에 도입된 드론 10대의 경우 모두 동일한 모델로 기체결합이 의심되는 전복·추락사고(12회)가 지속 발생하여 1대는 불용 폐기하였고, 나머지 드론에 대하여도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대한 하자신고를 통하여 조달품질원의 중재로 합의사항3)을 이행 중에 있다.

[부산세관 도입 드론 사고발생 내역]

사고일자	드론 호기명	사고내용	비고
'20.04.03.	6호기	이륙 후 전복	
'20.07.07.	9호기	이륙 후 전복	
'20.08.14.	1호기	비행 중 추락	
'21.04.27.	4호기	이륙 후 전복	
'21.05.22.	6호기	복귀 중 추락	
'21.11.01.	3호기	복귀 중 해상추락	불용폐기
'21.11.17.	2호기	착륙 직후 전복	
'21.12.22.	6호기	착륙 직후 전복	
'22.01.06.	8호기	착륙 직후 전복	
'22.01.25.	4호기	이륙 후 해상추락	
'22.02.14.	10호기	착륙 중 전복	
'22.04.10.	10호기	이륙 후 변화가의 건물과 충돌	

자료: 관세청

3) 기체 점검·수리(교체), 합동 비행 테스트 및 교육(비행 실습) 수행, 무상보증 8개월 연장

또한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한 2019년부터 현재(2023.5.)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한 실적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드론의 운용 및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관세청은 조달계약 절차(국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에 따라 외국산과 비교하여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산 드론(14대)을 도입함에 따라 드론의 오작동, 기체결함 등의 지속으로 정상적인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실적은 없으나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청은 기타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내역사업의 2022년도 예산에 드론 유지보수를 위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실제 2022년에 집행된 금액은 3,100만원이며, 그 중에서도 실제 드론 관리용역에는 1,40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1,700만원은 드론이 아닌 컨테이너 검색기 관리용역의 추가 비용 발생분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드론 유지보수 예산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52백만원	◦ 31백만원 - 인천세관 드론 관리용역비(유지보수계약) 집행: 14백만원 - 컨테이너검색기 관리용역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일부 집행: 17백만원 * 휴일 대체근무 및 고장수리비 등 사후 정산

자료: 관세청

드론 유지보수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관세청은 부산세관의 경우 장비도입 이후에는 연 단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① 기체결함으로 의심되는 전복·추락사고(12회) 지속으로 전면 운용 중단되었고(2022. 4.), ②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에 하자신고(2022. 7.)로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편성예산 2,8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고, 인천세관의 경우 기기 결함으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4개월 연장되어 8개월분(1,600만원)만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1,400만원에 낙찰·집행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드론 유지보수 예산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세관	예산	집행	불용사유
부산	28	-	- 장비도입 이후에는 연단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① 기체결함으로 의심되는 전복추락사고(12회) 지속으로 전면 운용 중단(2022. 4.), ②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에 하자신고(2022. 7.)로 유지보수계약 미체결
인천	24	14	- 기기 결함으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4개월 연장되어 8개월분 16 백만원만 계약을 진행 → 14백만원 낙찰집행

자료: 관세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2023년도 드론 유지보수 예산은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액되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세관에서의 실질적인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오작동 및 기체 결함 등의 문제로 유지 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투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항만감시업무에의 활용 및 감시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당초 관세청의 드론 도입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세청은 향후 드론 보유 및 지속적인 운용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처분 여부를 포함하여 관리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밀수단속지원 사업¹⁾은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지적재산권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외환거래 및 관세포탈사범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세청 조사직원들의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11억 2,200만원 중 91%인 1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밀수단속업무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밀수단속	9,631	9,522	-	6 △6	9,522	9,207	-	315	6,880
밀수단속업무 지원	1,128	1,128	-	△6	1,122	1,020	-	102	1,26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외환조사요원 등 전문위탁교육사업비에 편성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위탁교육과 상관없는 조사국의 경상적 경비 목적으로 집행하였는바, 사업예산 편성 목적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밀수단속업무 지원 사업은 범칙사건 수사 관련 통역료·번역료, 범칙물품 감정료 등, 국내외 기업정보 조회 수수료, 밀수단속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경비사업으로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4의 내역사업

서, 밀수단속 수사지원 경상경비에 5억 9,800만원, 압수품 보관료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압수품 보관료에서만 1억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밀수단속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	편성내역(1,128백만원)	집행내역(1,020백만원)
밀수단속지원	①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 59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4백만원 - 국내외 기업 정보 이용료: 85백만원 - 수사관련 감정·번역·통역료 등: 187백만원 - 외환조사요원 위탁교육: 45백만원 - 마약감별 테스트기: 90백만원 - 마약 등 밀수예방 홍보: 83백만원 - 밀수단속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34백만원 - 명예세관원 활동지원: 20백만원 - 수사 전문서적 구입 등: 40백만원	①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 598백만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공공요금: 14백만원 - 조사관련 감정·번역·통역 등 일반수용비: 550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34백만원
	② 압수품 보관료: 530백만원	② 압수물품 보관 임차료: 422백만원

자료: 관세청

밀수단속 업무 지원 경상경비 중 외환조사요원 등 전문 위탁교육에는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감독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능력 배양을 위해 회계관련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19년에는 교육 인원 25명, 단가 1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부터 교육 인원이 45명으로 늘어 이후 매년 동일하게 4,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다.

[외환조사요원 위탁교육사업 예산편성내역]

연도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2019	2,500만원(= 25명 × 100만원)	2,500만원
2020	4,500만원(= 45명 × 100만원)	4,500만원
2021	4,500만원(= 45명 × 100만원)	4,500만원
2022	4,500만원(= 45명 × 100만원)	4,500만원
2023	4,500만원(= 45명 × 100만원)	4,500만원

자료: 관세청

2022년에는 외환검사요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이 실시되었고, 위탁교육사업 예산 4,500만원 중 4,174만원이 집행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등에 의한 제약으로 외부 위탁교육 외 노하우 및 수사기업 등에 대한 내부교육을 병행하여 이에 따른 교육용품, 소모품, 토론회 등의 비용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외환조사요원 위탁교육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외환검사인력 양성 위탁교육에는 1,775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외에 “조사관련 업무용 소모품 구매”, “조사총괄과 워크숍 관련 행사장 이용수수료”, “업무계획 수립 토론회” 등에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조사요원 위탁교육 예산 집행내역]

(단위: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조사관련 업무용 소모품 구매(조사2국)	1,475,000
조사관련 업무용 소모품 구매(조사2국)	3,071,900
범칙조사 관련 수사자료표 등 물품 구입(조총-1515)	3,256,000
밀수단속관련 조사 소모품비(조총-1066)	1,164,900
밀수단속 업무지원(조사업무 소모품 구매)	1,527,700
밀수단속 업무지원(교육용품 구매)	231,300
밀수단속 업무지원(교육용품 구매)	880,000
2022년도 외환검사인력 양성 위탁교육	17,750,000
2022년 조사총괄과 워크숍 관련 행사장 이용수수료	1,100,000
2023년 조사업무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국 업무토론회 비용	4,708,000
2023년 업무계획 수립 토론회(조사2국)	66,000
2023년 업무계획 수립 토론회(조사2국)	369,990
2023년 업무계획 수립 토론회(조사2국)	2,139,500
조사업무 소모품 구매(조사2국)	499,400
조사업무 소모품 구매(조사2국)	3,500,000
합계	41,739,690

주: 위탁교육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2년도에 교육 대상 인원 및 교육 과정이 축소되어 실제 위탁교육에는 1,775만원만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산을 내부교육의 병행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인 전문위탁교육 수행과는 맞지 않으며,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일부 교육용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조사국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나 내부 행사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상적 경비는 조사국 기본경비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재정법」 제45조2)에서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청은 매년 수행하는 외환조사요원 등에 대한 전문위탁교육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향후 실제 교육 대상 인원 및 교육 프로그램 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교육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조달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939억 8,700만원이며, 6,353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2%인 5,730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622억 4,3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조달특별회계	492,962	493,987	493,987	635,313	573,070	62,243	0	90.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002억 1,600만원이며, 이 중 95.4%인 4,77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74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4억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1	81	81	52	0	29	64.2
조달특별회계	492,962	493,987	500,135	477,274	7,483	15,377	95.4
합계	493,043	494,068	500,216	477,326	7,483	15,406	95.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83억 400만원 (12.7%)이 증가한 3,39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32억 9,000만원(6.4%)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362,456	300,862	300,862	339,166	38,304	△23,29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022회계연도 조달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9억 5,200만원(△4.4%)이 감소한 2,80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15억 5,700만원(34.2%)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209,131	294,665	293,640	280,688	△12,952	71,55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다.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조달청의 자산은 2조 4,979억 3,600만원, 부채는 98억 5,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4,880억 7,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6,639억 900만원, 일반유형자산 8,013억 5,600만원, 무형자산 236억 5,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04억 2,500만원(3.8%) 증가하였다. 이는 혁신시제품 사업으로 인한 선급금,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를 위한 회전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자산 701억 7,000만원 증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136억 8,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0억 6,400만원, 장기차입부채 57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억 7,700만원(6.2%)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 리스계약 추가에 따른 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 7억 6,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497,936	2,407,512	90,425	3.8
Ⅰ. 유동자산	1,663,909	1,593,739	70,170	4.4
Ⅱ. 투자자산	3,413	3,888	△475	△12.2
Ⅲ. 일반유형자산	801,356	757,675	13,681	1.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23,653	17,912	5,742	32.1
Ⅵ. 기타비유동자산	5,605	4,298	1,307	30.4
부 채	9,858	9,281	577	6.2
Ⅰ. 유동부채	4,064	4,245	△181	△4.3
Ⅱ. 장기차입부채	5,795	5,033	762	15.1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4	△4	△100.0
순 자 산	2,488,078	2,398,230	89,848	3.7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930억 5,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481억 3,600만원, 관리운영비 403억 6,200만원, 비배분비용 3,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879억 9,000만원, 비배분수익 530억 7,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594억 7,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75억 3,600만원(15.3%) 감소한 1,525억 3,100만원이며, 이는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및 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106억 3,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39,855	△166,035	26,181	△15.8
가. 프로그램 총원가	148,136	129,513	18,622	14.4
나. 프로그램 수익	287,990	295,548	△7,558	△2.6
Ⅱ. 관리운영비	40,362	38,374	1,988	5.2
Ⅲ. 비배분비용	34	11,302	△11,268	△99.7
Ⅳ. 비배분수익	53,072	63,708	△10,636	△16.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2,531	△180,067	27,536	△15.3
Ⅵ. 비교환수익 등	△59,473	△68,560	9,087	△13.3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93,058	△111,508	18,450	△16.5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3,982억 3,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조 4,880억 7,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98억 4,800만원(3.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930억 5,8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2억 6,2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2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한 5,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로 인한 감소 32억 6,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398,230	2,129,226	269,004	12.6
II. 재정운영결과	△93,058	△111,508	18,450	△16.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2	0	52	0.0
IV. 조정항목	△3,262	157,496	△160,759	△102.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488,078	2,398,230	89,848	3.7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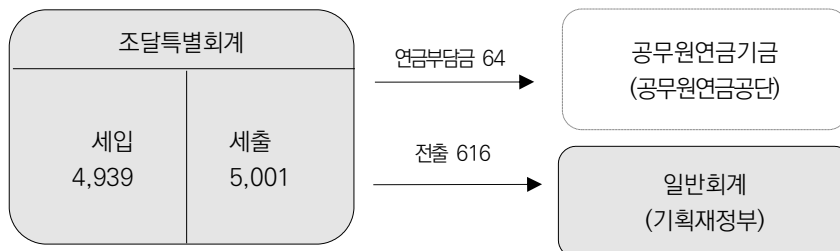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조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616억원이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연금부담금 64억원을 전출하였다.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② **일반회계 전출 사업**이 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사업은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 및 채용상담회 개최 예산을 대면교육(4주)에서 대면(3주) + 비대면(1주) 교육으로 조정하여 4,000만원이 감액(31억 8,000만원 → 31억 4,000만원)되었고, 일반회계 전출 사업은 국회 세출예산 증가 등에 따라 자본계정 잉여금 감소로 150억원이 감액(755억원 → 605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세입**은 ① **전년도세계잉여금(자본)**, ② **계정간전입금**이 있다.

전년도세계잉여금(자본)은 부산금곡비축기지 3년 분할 매각대금 일괄 수납에 따른 초과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341억원이 증액(4억 → 345억원)되었고, 계정간전입금은 손익계정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자본계정 전입금 증가로 세입예산 4,000만원 증액(1,275억 2,000만원 → 1,275억 6,0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① **자본계정 전출**, ②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③ **원자재 및 긴급수급 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이 있다.

자본계정 전출 사업은 손익계정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전출금 4,000만원이 증액(1,275억 2,000만원 → 1,275억 6,000만원)되었고,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은 요소(수) 등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신속한 물량확보 및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국회 신규 사업으로 48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자재 및 긴급수급 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안정적인 보관과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위한 비축창고 신축 설계비 반영으로 11억원 증액(0원 → 11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희소금속 이관**, ② **혁신제품 스카우트 제도 운영**, ③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④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이 있다. 희소금속 이관은 “희소금속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혁신제품 스카우트 제도 운영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제품 후속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것”,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체제 등을 구축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②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사업**, ③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사업**, ④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 홍보 사업**, ⑤ **조달행정역량강화 사업**, ⑥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 등이 있다. 청사 이전 지원(손익)사업은 서울지방조달청사 이전 사업이 변경되어 이사비 등 4억 9,000만원이 감액(5억 9,000만원 → 1억원)되었고, 기타 주요사업들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 등이 감액되었다.

조달청은 ①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 ②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창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유도**, ③ 물가안정과 원자재 수급 조절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창고 신축**, ④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비축물자사업수입의 경우 예산액을 단순 3개년도 방출실적과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큰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비축물자 중 비철금속의 경우 목표재고량이 적정히 설정되지 않거나 목표한 재고량을 비축하지 못하였으며,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이관이 결정되었으나 광해공단의 이관예산 미확보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비축 계약이 체결된 1건에 대하여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비상시 정부 우선사용 특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축물자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 달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은 요소(수) 생산 차질 문제 해소를 주 목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조달청은 내부 심의회 의결을 통해 당초 요소 및 요소수 구매를 위한 예산의 집행목적 변경하여 활성화, 형식 등의 긴급수급조절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다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셋째, 청사 이전 지원 사업(손익, 자본)의 미추진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다. 조달청은 現서울지방조달청사에 공공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지방조달청사를 2022년 12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現서울지방조달청 부지의 택지 개발에 대한 지역의 반발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토부·LH의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사 이전 지원 사업의 추진 재개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1

조달청 비축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분석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¹⁾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2조 제3호²⁾ 및 동법 시행령 제3조³⁾ 등에 따른 비축물자(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판매에 따른 판매차익과 외상 및 대여 판매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20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징수 결정액 214억 1,600만원 중 175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고(수납률 81.8%), 38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비축물자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예산액
	본예산	추경							
비축물자 사업수입	2,032	2,032	2,032	21,416	17,526	3,890	-	81.8	7,32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6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1-1.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 추계와 비축목표 설정의 정확성 제고 및 민·관공동비축제도 활성화 필요

가. 현 황

비축물자사업수입은 비축물자 판매에 따른 판매차익과 외상 및 대여 판매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조달사업법」 제30조제2항⁴⁾에 따라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의 세입이 된다.

나. 분석의견

조달청의 비축물자사업수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조달청의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액은 20억 3,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4억 1,600만원, 수납액은 175억 2,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86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1년도에도 비축물자사업수입 예산액은 42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51억 1,700만원, 수납액은 399억 9,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2.2%였다. 반면, 2020년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74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20년의 경우 수납률이 4.8%에 불과한 반면, 최근 2년간(2021~2022년도) 비축물자사업수입 수납액이 세입 예산액 대비 800~900%에 달하는 초과 수납이 발생하는 등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큰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바, 조달청의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조달사업법」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최근 3년 비축물자사업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7,400	7,400	-	7,400	355	355	4.8	100.0	0	-
2021	4,200	4,200	-	4,200	45,117	39,994	952.2	88.6	5,123	-
2022	2,032	2,032	-	2,032	21,416	17,526	862.5	81.8	3,890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1년 초 2022년도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액을 산정시 2018년~2020년 3개년도 사업(방출)실적과 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2021년도의 비축물자 방출실적이나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정부의 비축 및 방출 계획의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도별 비축물자 방출실적]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498	1,932	2,034	7,420	5,364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1~2022년에 비축물자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높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연초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시장 불안으로 인해 시장 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차원에서 방출량이 늘어나 비축물자사업수입이 증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도 주요 원자재 품목의 방출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조달청은 금액 기준으로 21억원 방출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액의 242% 수준인 50억 7,400만원을 방출함에 따라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주요 원자재 품목의 방출계획 대비 방출실적 현황]

(단위: 톤, 억원)

품목	방출계획(A)		방출실적(B)		변동내역(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알루미늄	24,959	838	52,410	2,222	27,451	1,384
구리	7,610	889	12,483	1,544	4,873	655
납	1,497	44	748	24	△749	△20
아연	4,415	172	15,347	793	10,932	621
주석	279	116	701	331	422	215
니켈	176	41	424	160	248	119
계	38,936	2,100	82,113	5,074	43,177	2,974

주: 납을 제외한 주요 원자재 품목에서 계획 대비 방출실적이 많아 수납액이 약 2,974억원 증가함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에서 이전 3개 연도 사업실적과 수익률을 단순 평균하여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액을 산정하는 것은 비축물자사업수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부의 비축물자 관리 계획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연례적으로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큰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달청은 비축물자사업수입과 달리 2022년 비축물자의 목표재고량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년도인 2021년도의 수입수요량 및 경제성장률 등까지 반영하여 목표치를 산출하고 있는데, 비축물자사업수입도 세입 추계 시 시장동향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달청이 보유 중인 비축물자 중 희소금속과 관련하여서는 희소금속의 유상이관을 진행 중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유상 이관 대금⁵⁾이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향후에도 단계적 유상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유상 이관에 따른 차익 역시 「조달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이 부분도 비축물자사업수입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경제 여건과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이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비축물자사업수입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희소금속(코발트) 유상이관 예산(89억 6,600만원) 확보('22.12.24)

둘째, 조달청은 비축물자별로 적정 규격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축 여력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재고량을 관리함으로써 비축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비축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비축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비축재고량을 확보하여 비상시 즉시 방출·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축물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⁶⁾ 및 제7조⁷⁾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하고(수급상황, 비축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된 비축 목표량 설정 가능), 비축목표량, 구매·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초에 당해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단”)은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비축대상 품목 및 목표재고일수를 정하고, 매년 연간 목표재고량을 산정하여 비축(구매)·방출 계획을 수립한 후 수급상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축·방출하는 방식으로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조달청이 관리하는 6대 비철금속⁸⁾에 대한 2022년도 비축량 현황

6)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비축목표의 설정) ①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축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비축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축 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7)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비축사업계획) ① 조달청장은 비축목표량, 구매·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 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초 당해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관계부처, 원자재 관련 업체, 중소기업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국내외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관은 당해 연도 비축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비축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8) 통상적으로 철 이외의 모든 금속을 통틀어 비철금속으로 총칭하나, 우리나라(조달청 기준)는 구리, 알루미늄, 납, 니켈, 아연, 주석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제조업 등에 널리 활용되는 금속을 ‘비철 금속’으로, 부존량이 적거나 편재되어 있고 추출과정이 까다로우며 산업적 활용도는 높은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을 살펴보면, 납의 경우 목표 재고 비축 달성률이 134%인 반면, 나머지 5종류의 비철 금속(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니켈)의 경우 목표재고 대비 실제 재고(실재고) 달성률이 80% 이하로 나타났다.

[비철금속 비축 현황(최근 5년 연도말 기준)]

(단위: 톤, %)

품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재고	실재 고	달 성 율	목표 재고	실재 고	달 성 율	목표 재고	실재 고	달 성 율	목표 재고	실재 고	달 성 율	목표 재고	실재 고	달 성 율
알루 미늄	162218	16060	99	150645	16355	109	173988	16333	93	191562	16567	87	218173	17490	80
구리	47,296	55905	118	28,466	54710	192	40,626	54262	134	38,512	39390	102	46,756	34899	75
납	8,066	13492	167	8,509	12988	153	6,350	13099	206	7,343	12389	169	8,691	11641	134
아연	10,588	11391	108	9,537	9,900	104	7,296	7,346	101	6,224	6,163	99	5,273	3,824	73
주석	2,697	3,180	118	2,720	3,005	110	2,796	3,046	109	2,988	2,242	75	3,179	2,416	76
니켈	3,537	4,225	119	3,730	4485	120	5,082	4557	90	5,307	4,529	85	6,340	4,862	77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목표재고량보다 많은 납을 비축하고 있었는데, 납의 판매원가가 구매원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기존 재고를 방출하는 대신 방출물량을 시장에서 새로 구매하여 방출해왔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납 재고량은 조달청이 책정한 목표재고량보다 항상 과다하게 비축되고 있었고, 반면 비축 목표재고 달성률이 낮은 알루미늄, 주석, 니켈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목표재고 대비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목표재고량 책정 시 10자리 기준으로 정의된 HSK코드(관세청 수입품목 코드) 세부규격을 기준으로 목표재고량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납, 니켈 캐소드의 경우 HSK코드 10자리 기준이 아닌 중분류로 구분된 6자리 기준으로 목표재고량을 과다 산정하였고, 니켈 브리켓은 니켈 캐소드보다 수입 수요가 많은데도 과소 비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⁹⁾

또한 2021회계연도 조달청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도 조달청은 긴급시가 아님에도 일부 비축물자의 재고량을 안전재고¹⁰⁾ 목표량 이하로 관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비축물자 안전재고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다.¹¹⁾

따라서 조달청은 비축물자별로 적정 규격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축 여력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목표재고량을 관리함으로써 비축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관 공동비축 대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활성화하여 비축물자의 국내 재고량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불안 및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비축물자의 목표재고 달성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조달청이 발표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에서는 비축자금 및 시설 제약으로 인해 적정 목표재고량 확보가 곤란하고,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조달청 비축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바, 비축물자의 목표재고량 달성 측면에서 민·관공동비축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조달사업법」 제32조¹²⁾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가 구매한

9) 감사원, 「감사보고서 -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 (금속 비축사업 중심으로)」, 2022.12.

10)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유지하는 재고

11) 국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12) 「조달사업법」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를 조달청 시설에 비축하는 제도로써, 비상시 정부 우선사용 특약을 설정한 경우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단위: %)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감면율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 + 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자료: 조달청

이는 비축물자의 국내 비축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조달청의 민·관 공동비축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알루미늄, 탄산리튬의 비축은 각각 2016년, 2017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구리 1,713톤만 공동비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관공동비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톤)

연도	업체	품목	비축기지	비축기간	입고량	방출량	비고
2012	○○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12.12. ~ 현재	1,112	-	
2013	△△상사	알루미늄	부산청	'13. 1. ~ '16. 2.	5,807	5,807	종료
2015	□□□□	탄산리튬	부산청	'15. 9. ~ '17. 8.	2,076	2,076	종료
2021	○○ 자산운용	구리	부산청	'21. 6. ~ 현재	601	-	

자료: 조달청

현재 부산청 비축기지에 공동비축 중인 구리 1,713톤의 경우, 조달청은 연간 2회 사용료(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약 2억 6,820만원으로 연평균 2,682만원 수준이다.

[공동비축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현황]

(단위: 원)

연도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계
2013	10,861,950	13,763,710	24,625,660
2014	15,115,790	16,276,310	31,392,100
2015	15,991,470	15,926,990	31,918,460
2016	14,725,700	16,970,990	31,696,690
2017	11,048,020	20,385,440	31,433,460
2018	6,696,650	22,099,800	28,796,450
2019	5,819,450	12,851,480	18,670,930
2020	5,189,580	13,333,260	18,522,840
2021	5,321,710	15,679,330	21,001,040
2022	7,503,440	22,668,040	30,171,480
계	98,273,760	169,955,350	268,229,110

주: 1)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2) 2023년은 5월 기준으로 보관관리비 3,741,440원, 시설사용료 11,536,170원 부과 및 납부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민간의 비축시설은 일정 기간(1년~2년) 동안 창고 전체를 임대하는 방식인 반면 조달청은 민관공동비축 물량만큼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연간 사용료를 1㎡당 단가로 간접 비교 시 민간은 약 138,000원/㎡·년¹³⁾, 조달청은 약 85,000원/㎡·년¹⁴⁾으로 조달청이 부과하는 비축시설 사용료는 민간의 62%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공동비축 중인 구리 1,713톤의 경우 비상시 우선사용 특약이 설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달청은 우선 매각은 협약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선 매각 협약 미체결 건이라도 국내 원자재 실물 확대 측면에서의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달청은 현재 자체 비축기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원자재를 장기야적¹⁵⁾하거나 민간창고 임차료¹⁶⁾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공동비축물자에 대한 우선사용 특약 등이 없이 민·관공동비축제도를 통해 민간 대비 저렴하게 비축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민간에 혜택만 부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제도의 취지인 원자재 수급 위기상황 대응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비축방식을 다변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비축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조달청은 민·관 공동비축 대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우선 사용 특약을 장려하는 등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운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2023년 임대창고 2곳(대한통운, 롯데로지스)의 평균 단가

14) 2022년 사용료(3천만원)를 비축 면적(354㎡) 당 단가로 환산

15) 비축 알루미늄의 87%인 약 12만톤 야적 보관 중

16) 마스크 비축을 위한 민간창고 임차비용 지출 : (2020) 548백만원, (2021) 2,047백만원, (2022) 1,706백만원

1-2.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희소금속 이관 추진 및 비축업무 공백 방지 필요

가. 현황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제2조17) 등에 따라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재난·국가위기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속자원 등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고, 광해공단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2호18) 등에 따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광산물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속자원의 경우 국제유동성과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아 가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이 강한 비철금속 6종은 조달청이 비축을 담당 중이며, 국제유동성이 낮고 안정적 수급과 산업육성·자원안보 등의 목적이 강한 희소금속종은 광해공단이 조달청 비축창고를 활용하여 비축을 담당 중이다.

[금속자원 분류 현황]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35종)
구리, 알루미늄, 납, 니켈, 아연, 주석	리튬,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럼,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코발트, 갈륨, 인듐, 탈륨, 붕소, 게르마늄, 비스무스, 셀레늄, 텔루륨, 희토류(17종), 백금족(6종), 니켈, 비소, 안티모니, 주석, 마그네슘, 인, 카드뮴, 실리콘

자료: 감사보고서 -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 2022.12., 감사원

「조달사업법」 제29조19),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10

17) 「조달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광산물의 비축·매매 및 대여

19) 「조달사업법」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조20) 등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목표재고량, 구매·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 등을 종합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촉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관은 비촉사업계획, 가격수준,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촉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하되 효율적인 비촉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증량구매, 구매보류 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회소금속의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한 비촉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소금속 구매시기, 수량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광해공단으로의 회소금속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가격 결정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고, 회소금속 9종의 완전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광해공단과 협력하여 국내 회소금속 비촉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 ②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촉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촉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20) 「조달청 비촉사업 운영규정」

제6조(비촉목표의 설정) ①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 발생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촉목표 수준을 충분한 규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촉목표량은 수급상황, 비촉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 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촉 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비촉사업계획) ① 조달청장은 비촉목표량, 구매·방출 실적, 국내외 가격동향,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초 당해연도 비촉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촉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관계부처, 원자재 관련 업체, 중소기업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국제 원자재시장 동향, 국내외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촉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관은 당해 연도 비촉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에 준하여 비촉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시기 및 수량) 계약담당관은 비촉사업계획, 가격 수준, 방출량,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촉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비촉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량구매, 구매보류, 파생상품거래 등을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철금속 6종의 경우 조달청이, 희소금속 35종 중 19종을 조달청과 광해공단이 나누어 비축하여 왔으나, 이원적인 금속 비축사업 운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통해 전략비축 목적의 희소금속은 광해공단이 비축하는 것으로 하는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 개선방안’이 2019년 6월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 9종에 대한 비축업무를 광해공단으로 이관하는 후속조치가 실시되었으나, 조달청과 광해공단은 이를 위한 이관 방법 및 이관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희소금속 이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관 전 이관대상 희소금속의 비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년 6월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을 확정·시행하였다.

공동기준의 주요 내용은 광해공단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²¹⁾에 따라 시장가격으로만 매입이 가능한 점과 이관 시 국제가격을 적용한 2011년 이관 선례에 따라 이관 당시의 국제가격으로 유상이관하고, 희소금속 9종의 인도, 검수검사, 대가지급을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이관 전까지 비축기능 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이었다.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주요 내용]

관리 기준	주요 내용
① 이관조건	• (이관시기) 2022년까지 대가지급·인도·검수검사를 완료하도록 노력 • (이관가격) 이관 당시의 국제가격 기준
② 이관전 관리	• 연도별 비축사업계획은 (구)광물자원공사가 수립하여 조달청에 통보 • (구)광물자원공사 기준으로 대여·방출 실시(조달청 상시방출은 중지) • (구)광물자원공사는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및 수량성질 검정 실시
③ 업무분담	• (조달청) 비축자산 보관 관리 • (구, 광물자원공사) 시장동향, 사업계획, 구매, 방출, 대여 등 수급관리 전반

자료: 한국광해광해공단

2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재부령)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에 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21년에 조달청·광해공단 합동 현장실사(2021. 2~4월) 및 관련 실무회의를 실시하는 등 희소금속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광해공단의 이관 여건 충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021년 3월 9일에 제정되었고, 광해공단은 이관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후 실무회의를 실시(2021.11., 2022.1., 2회)하여 이관 세부조건 협의안(이관가격 산정 방식 등)을 마련하였으나, 광해공단은 예산 확보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희소금속의 이관 추진 과정에서 2019년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시행 후 이관 전 희소금속 비축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조달청이 일부 희소금속(탄산리튬과 탄산스트론튬) 구매 추진을 임의로 중단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²²⁾가 있었다.

실제로 2019년에 개선방안이 시행된 이후 관리 공동기준(2020년 6월) 시행 전까지 조달청은 이관대상 희소금속에 대한 자료와 구매계약 추진 현황 등 현안 사항을 광해공단과 협의하거나 인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비축업무의 공백은 2019년 6월 13일 이후 탄산리튬과 탄산스트론튬의 목표재고량 대비 재고량 부족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비축물자를 원활하게 국내 수요업체에 방출(판매)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된바 있다.²³⁾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19년 6월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희소금속 비축기능이 광해공단으로 조정되면서 적극적인 계약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22) 감사원, 「감사보고서 -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 , 2022.12.」

23) 감사원, 「감사보고서 -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 , 2022.12.」

[조달청 희소금속 보유재고 현황]

(단위: (무게)톤, (면적)m², (금액)백만원/부가세 제외)

품 목		비축량	원가		시가 ¹⁾²⁾		보관장소 (조달청비축기지)	보관공간 면적
			단가	총액	단가	총액		
페로실리콘		11,774	1.4	16,535	2.3	25,669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6,574
망간	페로	7,029	1.7	12,024	2.0	13,088	부산, 인천, 대전	3,015
	실리코	2,700	1.5	4,071	1.9	4,707	부산, 인천	877
코발트		126	41.8	5,275	56.9	6,513	부산, 인천	33
바나듐	오산화	660	19.7	13,049	30	18,126	부산, 인천	618
	페로	329	29.2	9,637	57	17,198	인천, 대전	308
리튬		585	7.8	4,576	101.5	53,987	부산	768
비스무트		68	28.1	1,922	12.6	785	부산	54
인듐		10	501.5	4,789	330.1	2,871	인천	16
스트론튬		99	1.1	110	2.8	254	부산	206
탄탈럼		0.5	596.2	298	561.7	255	대구	1
합 계		23,381		72,286		143,453		12,470

주 1) 2023년 3월 말 기준

2) 희소금속의 국제가격은 아시안메탈(Asian Metal), 아거스메탈(Argus Metal) 등의 국제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참조(단, 탄산리튬, 탄산스트론튬은 수입가 참조)/ 적용환율은 주간환율 평균값 인용

자료: 조달청

이후 광해공단의 희소금속 구매예산 및 보관창고 확보 지연으로 인해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개정본」(2022.12.)에서는 이관 시기가 당초 “2022년 까지”에서 “조속히”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조정되었는바, 광해공단이 2023년도 이관 예산 89억원을 확보하면서 조달청과 광해공단은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이관가격 산정 방식(국제가격 적용), 이관 방법(인도 조건 등), 이관 시기, 이관대상 광종의 검사·검수(성분·중량·입도) 기준, 이관 후 정산 및 대금지급조건 등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광물자원공사로 구성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최초 구매와 최종 판매로 손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2011년에 페로몰리브덴 및 페로크롬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할 때 국제가격을 적용한 선례 및 광해공단의 매입 규정에 시가로만 매입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합의 시에 ‘희소금속 9종의 이관 시 적용 기준 가격을 이관 당시의 국제가격(단, 국제가격이 없는 광종은 유통시장 가격)으로 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과 광해공단의 희소금속 이관은 정부기관 간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희소금속의 국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관비용이 결정될 경우 이관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실제 신규 자원비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은 구매원가 이상의 수입을 조달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여 향후 조달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해당 수입은 일반적인 조달 사업 예산으로도 집행될 수 있어 희소금속 비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희소금속 이관 예산이 이관시점의 국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편성될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변동에 따라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관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미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⁴⁾

실제로 이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의 연동 방식이나 10년 이상 장기 보관 광물에 대한 신품가격 인수와 관련하여 조달청과 광해공단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광해공단의 광물적재공간(비축기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희소금속 비축기능 이관의 조속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희소금속 이관이 정부 내부거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달청은 이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이관가격 및 방식 등 세부조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희소금속 9종의 완전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해공단과 협력하여 국내 희소금속 비축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2022. 10., p.251

1-3. 비축물자 재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수단 마련 필요

가. 현황

「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25)에서는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이하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법인 및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이용업체 등록 제한과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전매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법령상 금지된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적발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조달청의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고 제재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출된 비축물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국내시장의 물자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물자를 상시 공급하기도 하지만, 원자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방출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원자재는 국제시장에서 가격 파동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가격 등락이 심하여 시세차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청의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하여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2021년 조달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업체 454개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결과 93개 업체가 전매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5개 업체를 감사 기간 중 조사한 결과 2,575톤(201억원)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조달청은

25) 「조달사업법」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국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비축물자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한다)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이용업체가 당초 지급한 금액과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201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철금속을 전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내부 보고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후 조달청은 감사원 조사를 통해 적발된 전매사실 확인 5개사에 대하여 등록말소 조치 및 3개사²⁷⁾에 대하여 환수²⁸⁾ 고지를 발송하였고, 88개사 전매 여부 및 차액을 조사하여 총 34개사 전매업체를 적발하였다.²⁹⁾ 또한 전매 방지를 위해 이용업체에 과세정보 주기적 제출 의무화, 전매 적발시 위약금 부과 등을 포함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고시)을 개정(2023.3.30.)하였다.

다만, 조달청에 따르면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적발 및 제재와 관련하여 전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조사 방식인 세금계산서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사실 여부의 확인 및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령상 금지된 전매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공받아 직접 비축물자의 전매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방출된 비축물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6) 감사원, 「감사보고서 -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 , 2022.12.」

27) 2개사(폐업, 전매차익 없음) 제외

28) 3개사 전매차액: 1억 7,200만원

29) 전매 34개 업체에 전매차액 2억 4,400만원 고지

가. 현 황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계기로 마스크 수급 불안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선제적으로 감염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비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2020년 3월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마스크 1억 5,000만 장을 조달청이 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2020회계연도 1차 추경(1억 장, 700억원) 및 3차 추경(5,000만 장, 350억원)에 마스크 비축예산이 반영되었다.

[2020년도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	119,382	-	119,382	113,148	-	6,234	-

주: 2020년 추경은 제3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또한 2020년 4월 24일에는 마스크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었고, 공적마스크¹⁾ 제도 종료(2020.7.12.) 이후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 9,000만 장을 인수(계약단가 인 935원)하는 한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의 비축물자사업자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구매·비축해오고 있다.

조달청은 2021년도 회전자금운용계획에서 마스크 5,000만 장을 구매 및 방출할 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방출로 인한 손실금(218억원)을 예상하였고, 2022년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는 2022년도 마스크 총재고량 1억 200만 장 중 수요가 없는 의료

이상이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여 공적판매처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한 마스크

인용 마스크 1,000만 장을 제외한 9,200만 장을 방출할 계획을 수립하여 153억원의 손실금을 예상하였다.

[2021년도 마스크 구매 및 방출 계획(안)]

(단위: 만장, 억원)

품 목	'20년 재고		'21년 계획 ¹⁾				'21년 예상재고	
			구매		방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²⁾
마스크	15,000	1,006	5,000	200	5,000	200	15,000	788

주: 1) '21년 구매·방출 수량 5,000만장 / 구매·방출 (예상) 단가 @ 400원

2) '21년 예상재고(788억원) = 1,006억원^{2020년 재고금액} [5,000만장^{방출수량} × (@836원^{재고단가} - @400원^{방출예상단가})]

자료: 조달청 2021년도 회전자금운용계획

나. 분석의견

코로나19 위기 정보 수준의 하향 조정 및 주요 방역 조치의 전환에 따라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조달청의 마스크 비축을 위한 민간창고 임차 비용 지출 및 마스크 방출 손실 등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마스크 목표 비축량을 감축하고 현행의 직접 비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긴급수급조절물자로서 마스크 비축을 시작한 이후 마스크의 특성(유효기간 3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상방출²⁾하고, 신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고순환을 하고 있으며, 운영재고는 1년 주기로 총 비축량의 1/2~1/3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스크가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당시 마스크 목표 비축량은 1억 5,000만 장이었는데, 2022년 12월 중대본회의에서 결정된 마스크 목표 비축량 현행화 방안에 따라 기존 목표 비축량 1억 5,000만 장에서 5,300만 장으로 변경·확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에 비축물자 사업자금의 마스크 비축자금 규모도 1,006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축소 운용되고 있다.

2) '21~'22년 간 국방부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연간 약 1억개 이상 방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황사용 등으로 연간 약 2천만개 방출 예상

연도별 조달청의 마스크 목표 비축량 및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목표 비축량 및 재고 현황]

(단위: 만 장)

기준일자	마스크 목표 비축량	재고 현황	비 고
2020.12월 말	15,000	15,000	
2021.12월 말	15,000	10,187	
2022.12월 말	15,000	5,121	
2023. 5월 말	5,300	3,800	2023.1.1. 목표비축량 변경

자료: 조달청

조달청이 비축하는 마스크는 유통기한(3년) 경과로 인한 폐기 우려로 재고순환이 필요하고, 잔여 유통기한 및 시중거래 가격을 감안할 경우 재고원가 이하 방출이 불가 피하다. 이로 인해 조달청은 2020년 공적마스크 약 1억 장(KF94 등)을 비축하였으나 시중의 마스크 가격 하락³⁾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2021년에는 264억원, 2022년에는 150억원의 마스크 방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방출 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비 고
마스크	-	△26,400	△15,000	- 공적마스크 구매 및 재고원가 미만 방출에 따른 손실 발생

주: '20년 공적마스크 약 1억 개(KF94 등)을 비축 후 시중의 마스크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비철금속 방출수익으로 보전하여 자본금(1,006억원)은 유지

자료: 조달청

또한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마스크를 민간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사업⁴⁾에 관련 임차료가 편성·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마스크 비축을 위하여 집행한 민간창고 임차료는 3년간(2020년~2022년) 43억 1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에도 마스크 비축 보관시설 임대료에 16억 4,8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3) 조달청 계약가격(KF94): ('20.3) 935원(공적마스크) → ('22.12) 240원(MAS 최빈가격)

4) 조달특별회계 1235-334의 내역사업

[연도별 마스크 보관창고 임차료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4
마스크 비축보관시설 임차료	예산액	420	2,448	2,448	1,648
	집행액	548	2,047	1,706	366

주: 2020~2022년 4월은 실집행금액

자료: 조달청

조달청이 마스크 비축을 위해 조달청 보유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창고를 임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달청은 2020년 6월 말 비철금속 재고량(247,405톤) 기준의 창고 소요 면적 대비 창고 사용 가능 면적이 약 43.9%에 불과하여 창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조달청 창고 내에 마스크 비축이 곤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창고 면적 현황]

(단위: m²)

창고 보유 면적	창고사용 가능면적(A)	'20.6월말 재고량 대비 창고 소요 면적(B)	부족 면적(A-B)
90,526	32,383 ¹⁾	73,843	41,460

주: 1) 한국광해공업공단 임대면적(30,346m²), 임대면적 외 희소금속 보관 면적(14,476m²) 및 기계실 등 부대시설, 통로, 작업공간 등 비축불가면적(13,321m²)을 제외한 면적임('20.6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되었고, 2023년 1월에는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3월에는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시기	구분	변경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화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 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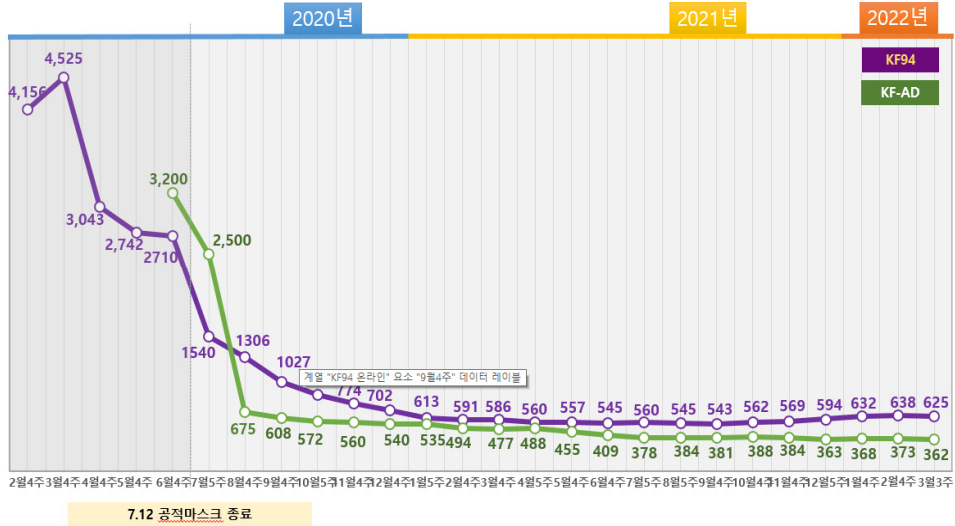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2023년 3월)부터 마스크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보도자료(2022.3.23.)에 따르면 2022년 3월 3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145만 개로 2021년부터는 원활히 공급되고 있었고,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모두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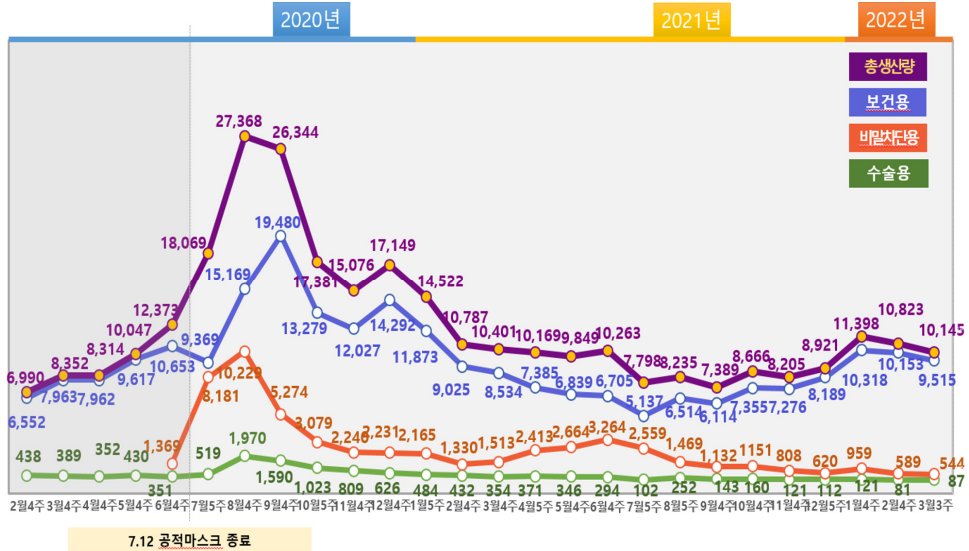
(단위: 만/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3.23.)

[마스크 온라인 가격 동향]

(단위: 만/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2.3.23.)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현재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마스크의 목표 비축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달청은 마스크 목표 비축량의 감축은 식약처 및 기재부와 함께 협의할 사항으로 향후 시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의 하향 조정 및 주요 방역 조치의 전환에 따라 마스크 수급 상황 및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조달청의 지속적인 대량 마스크 비축은 민간창고 임차 비용의 지출과 재고순환을 위한 원가 이하 방출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달청은 관계기관인 식약처 및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마스크 목표 비축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달청은 2022년 9월 발표한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에서 비축물자를 정부 시설에 장기 비축하는 방식은 특수시설 보관이 필요하거나 장기 보관시 물성(物性)이 변하는 물자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비축방식의 다변화⁵⁾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보관이 필요하거나 장기 보관시 물성이 변하는 품목은 수요처 시설에 보관하여 재고순환을 하면서 비축량을 유지하는 ‘타소 비축’ 방식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마스크 역시 3년의 유통기한이 있어 재고순환이 필요한 품목이고 이로 인해 원가 이하 방출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마스크를 직접 비축(방출·재구매)하는 현행의 방식을 타소 비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현행) 조달청 비축시설에 장기 보관 ⇒ (확대) 현행 + 단기·타소·선물연계 비축

1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관련 집행계획 변경 문제

가. 현 황

긴급수급조절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²⁾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비축물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³⁾은 요소(수) 공적구매 염가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및 제경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수급조절물자를 긴급 공적구매하고 구매지원 및 비축하는 것으로, 조달청은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액 480억 6,600만원을 회전자금으로 전출함으로써 전액(100%) 집행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조달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3)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5

[2022회계연도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48,066	48,066	-	-	48,066	-	-	-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⁴⁾에 따라 조달청 조달특별회계는 사업운동을 위해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회전자금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수요물자사업비(조달물자의 구매대금 등 대지급), 비축물자 구매대금 및 물류비 지급, 그 외 여유자금 운용(시중은행 예치)이다. 이 중 비축물자사업은 원자재의 사전 비축을 통해 국제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철금속, 희소금속 등 원자재를 비축 후 필요할 때 중소기업에 방출하여 회수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는 2021년 10월부터 요소 수입 급감으로 발생한 요소수 생산 차질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 정부수요 물량을 공급하고(381억원) 요소 및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가 추가되는 경우 긴급 공적 구매(100억원)하는 것이었다.

4)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요소 및 요소수 (380억 6,600만원)	요소 공적 구매 후 염가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 4만톤 × 518달러(수급대란 이전 톤당 482달러 - 현재 1,000달러) × 환율(1,131원)	23,435
	요소수 공적 구매 후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 20만리터 × 만리터당(10,000달러) × 환율(1,131원)	226
	요소 및 요소수 구매 지원을 위한 제경비	14,405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100억원)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 추가 시 긴급 공적구매	10,000
합 계		48,066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조달청은 2022년 7월 1일에 동 사업에서 요소 및 요소수 관련 목적으로 증액된 예산 약 381억원 중 차량용 요소수 구매계약에 활용된 2억원을 제외한 379억 원에 대하여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120억원), 차량용 요소(60억원), 염화칼슘(20억원) 등의 비축으로 약 200억원을,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로 약 179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22년 7월 13일에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 추가 시 긴급 공적구매 목적으로 100억원을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 28일에는 조달청의 2022년 제5차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⁵⁾를 개최하여 2022년 조달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 변경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당초 “요소(수) 공적 구매 후 염가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에 편성된 예산 378억 4,900만원을 요소(수) 이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긴급 공적구매(지원) 및 비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8월 11일에 해당 예산(378억 4,900만원)을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다.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022년 제5차 조달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의결 내용]

(단위: 백만원)

~ 에서		~ 으로	
사업내용	금 액	사업내용	금 액
요소 및 요소수 공적구매 후 염가방출에 따른 손실	23,61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긴급 공적구매, 구매지원 및 비축	37,849
요소 및 요소수 구매지원을 위한 제경비	14,238		
합 계	37,849	합 계	37,849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22년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 대응 목적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자체적인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목적을 변경하여 다년도에 걸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당초 주된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내에서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외의 예산은 조달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 480억 6,600만원 중 요소(수) 관련 예산은 380억 6,600만원이었고, 그 외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공적구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100억원이었다. 그런데 조달청은 호주산 요소수 손실금 보전에 2억원을 집행한 후, 요소(수) 염가 방출에 따른 손실보전 및 요소(수) 구매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378억 4,900만원을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공적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자체 계획 변경함으로써 활성탄 등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위해 약 20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9억원은 추가 비축품목 발굴 및 비상시 긴급조달물자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자체 사업계획을 확대·변경함으로써 동 사업예산 480억 6,600만원 전액을 조달특별회계에서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다.

[2022년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 추진경과]

일자	추진내용	세부내용
7.1	집행계획 수립	- 활성화 긴급수급물자 지정 -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화탄(120억원), 차량용 요소(60억원), 염화칼슘(20억원) 등의 비축으로 약 200억원 집행계획 수립 -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로 약 179억원 집행계획 수립
7.13	회전자금 전출	- 100억원 전출(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
7.28	'22년 제5차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의결	- 당초 요소(수) 공적 구매 후 염가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에 편성된 예산(378억 4,900만원)을 요소(수) 이외 긴급수급물자의 긴급 공적구매(지원) 및 비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내역 조정
8.11	회전자금 전출	- 378억 4,900만원 전출(조달특별회계 → 회전자금)
11.30	긴급수급물자 지정	- 염화칼슘 긴급수급물자 지정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사업 예산의 집행계획 변경에 대해 조달청은 요소수 제조업체의 재고 확보 수준, 수입 다변화 등 요소수 사태 완화에 따른 집행 필요성이 저하된 요소(수) 관련 예산을 요소(수) 이외 긴급수급물자의 긴급 공적구매(지원) 및 비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내역을 조정하였고, 국민생활 밀접물자⁶⁾ 또는 핵심산업 소요 경제안보 물자⁷⁾ 등 신규 비축 추진 및 비축품목의 지속 발굴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자체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산 집행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및 비축 현황(2023년 4월 기준)을 보면, 조달청이 동 사업 예산을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화탄, 염화칼슘 등의 비축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2022년 7월 1일 당시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화탄만이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추가 지정되었고, 이후 염화칼슘은 2022년 11월 30일에 지정되었다.

6)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화탄, 차량용 요소, 시설제용 염화칼슘

7) 반도체 식각·세정 및 2차전지(전해질) 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형석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및 비축 현황]

구 분	지정 일자	비축 현황
① 마스크	'20.4.24	38,846,734개
② 차량용 요소	'21.11.10	3,000톤
③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22.7.1	1,890㎥ ('23.5월 입고 예정)
④ 제설제용 염화칼슘	'22.11.30	3,000톤 (동절기 대비로 '23.하반기 추진 예정)
⑤ 형석	'23.3.14	5,000톤 ('23.4월 구매계약체결 예정)

주: 비축현황은 2023년 4월 말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물품 보관 기간이 짧아 재고순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구매 계획을 사전에 상세히 수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염화칼슘은 2022년 11월 30일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2023년 4월 기준)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⁸⁾ ②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로 계획을 조정한 179억원에 대해서도 조달청은 이를 2023년의 비축사업추진 계획에 포함시켜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집행계획(목적 및 규모)을 과도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비축자금(긴급수급조절물자 신규자금) 479억원의 경우 2022년도 회전자금 운용계획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도 회전자금 운용실적에서는 해당 예산이 지급예비시재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8) 염화칼슘 3천톤(10억원)은 '23.7.4. 계약체결됨

[회전자금 비축물자 사업자금]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실적(A)	2022년		전년대비 (C-A)	계획대비 (C-B)
		계획(B)	실적(C)		
자 금 규 모	13,031	13,510	13,510	479	-
비축재고자산(-)	10,634	12,634	9,660	△974	△2,974
비축소요자금(-)	112	112	109	△3	△3
파생상품거래자금(-)	19	19	224	205	205
지급예비시재액(-)	2,266	266	3,517 ¹⁾	1,251	3,251

주: 1) '22. 12월말, 비축물자 미입고에 따른 미집행금액(1,579억원: 비철금속 1,476억, 비축마스크 51억, 요소수 등 긴급수급물자 52억) 및 비축마스크 구매자금(953억),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자금(427억) 등 포함

자료: 조달청, 「2023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2023.1.30.

한편 조달청은 사업내역을 변경하여도 요소(수) 수급상황 불안 시 긴급구매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동 사업에서 요소(수) 이외의 기타 긴급수급물자 비축에는 별도 예산 100억원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완화되었다는 사유로 요소(수) 손실보전 및 구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집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국회에서 결정된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달청은 동 사업을 통해 회전자금으로 전출되어 2022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에 대하여는 활성탄, 요소 비축량을 확대하고, 염화칼슘, 반도체·2차전지 소재인 형석 등 핵심산업 소요 물자를 신규 비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약 395억원을 집행하며, 잔여자금 약 84억원은 신규 비축품목 발굴 후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동 사업이 당초 요소(수) 위주의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내부적인 계획변경을 통해 동 사업 예산 전액을 회전자금으로 전출함으로써 총 4년(2022~2025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장기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시 정부 전체의 재원 배분을 고려하여 확정된 예산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연도별 경제안보품목 구매 계획(~'25년)]

(단위: 억원)

총계	연도별	품목별 집행(계약기준)계획					잔액
		활성탄	차량용 요소	염화칼슘	형석	계	
479	'22년	22 (1.8천 ⁸⁾)	30 (3천톤)			52	84
	'23년	30 (2천 ⁸⁾)	30 (3천톤)	10 (3천톤)	40 (5천톤)	110	
	'24년	63 (4.2천 ⁸⁾)		10 (3천톤)		73	
	'25년				160 ¹⁾ (2만톤)	160	
	계	115 (8천 ²⁾)	60 (6천톤 ³⁾)	20 (6천톤 ⁴⁾)	200 (2만5천톤 ⁵⁾)	395	

주: 1) 형석은 수요기업의 무수불산 생산공장 증설계획('25) 이행시 '25년 이후 160억원 추가 구매 가능

2) 연간 국내 소요량의 약 2개월분

3) 연간 국내 소요량의 약 1개월분

4) 친환경제설제 연간 소요량의 약 2개월분

5) 연간 국내 형석 소요량의 약 3개월분

자료: 조달청(2023.4. 기준)

또한 실제로 조달청이 2022년도에 체결한 긴급수급조절물자 계약은 총 2건(활성탄, 차량용 요소)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탄의 경우 조달청은 2022년 11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5월 8일에서야 10억 9,7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1억 3,900만원은 2023년 7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차량용 요소의 경우 2022년 12월에 납품계약을 체결(실비정산으로 2023.3. 수정계약)하여 2023년 3월에서야 대금 25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즉, 동 사업을 통해 회전자금으로 전출한 480억 6,600만원 중 조달청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보를 위해 집행한 금액은 2023년 5월 기준 총 36억 4,400만원에 불과하다.

[긴급수급조절물자 계약 체결 내역]

품목명	계약 일자	계약물량	계약금액	비고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22.11.16	1,890m ³	2,236백만원	'23.5.8 일부 지급(1,097백만원) '23.7월 지급 예정(1,139백만원)
차량용 요소	'23.3.27	3,000톤	2,547백만원	'23.3.17 대금지급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2023년 5월 기준)

위 논의를 종합하면, 조달청은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가 안정화되자 국회에서 정한 예산내역을 내부심의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회전자금에 대한 다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동 사업을 통해 진출된 회전자금의 2022년도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관련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라는 긴급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당초 주된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외의 예산은 조달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조달청은 향후 이와 같은 예산 집행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비축여건을 고려한 비축창고 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¹⁾은 국가비상사태나 위기에 물가안정과 수급 조절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은 2022년도 예산현액 10억 7,700만원 중 57.7%인 6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을 이월하고 3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원자재 및 긴급수급 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1,077	1,077	-	-	1,077	621	154	302	9,221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동 사업은 군산비축기지 야적장 부지에 연면적 14,929㎡(4,523평)의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보관용 전용 창고 2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38억 2,300만원(2022.6. 조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4년(설계 12개월, 공사 18개월)으로 계획되었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y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62-509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축기지별 적재율과 잔여 비축가능량 등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비축창고의 신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은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수급지원을 위하여 2022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 확정 당시 조달청은 설계 1년, 공사 1년 6개월의 기간 소요를 예상하고, 2022년 내에 설계를 마친 후 2023년부터 시설공사 및 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비축창고 신축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계획 대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2022년도에 편성된 10억 7,700만원의 예산 중 조달청은 설계비로 6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 조달수수료 600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57.7%에 불과하며,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²⁾에 따라 이월 처리된 예산 1억 5,400만원은 설계 완료 후 집행될 예정이다.

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22년도 비축창고 신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구 분	금 액	'22 예산 금액	'22 집행 금액
1. 시설공사비	21,905,560	-	
2. 설계비	1,067,664	1,067,664	615,008
1) 설계용역비	898,128	898,128	
2) 녹색건축 인증	112,266	112,266	
3) 제로에너지 인증			
4) 측량 및 지질조사비	11,237	11,237	
5) 손해배상공제증권	2,655	2,655	
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660	7,660	
7)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수수료	10,890	10,890	
7)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1,628	1,628	
8) 지열설비이용검토서	21,000	21,000	
9) 설계안전성 검토 비용 수수료	2,200	2,200	
3. 감리비	1,559,792	-	
1)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559,792	-	
4. 시설부대비(계약수수료 등)	50,441	8,606	6,033
1) 공사계약 수수료	31,836	-	
2) 설계용역계약 수수료	8,606	8,606	6,033
3)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수수료	9,999	-	
합 계	24,583,457	1,076,270	621,041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은 비축창고 신축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 57조3)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데, 당초

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 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설계 용역기간에는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기간 등이 불포함되어 해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설계 기간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다만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지원·관리하는 주무부처이고,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초 설계 용역 소요 기간 산정시 적정성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고 조기에 용역을 착수함으로써 사업이 계획 대비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조달청의 비축 여력이 제한되어 비축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축창고 신축 사업의 지연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비축기지별 적재율과 잔여 비축가능량 현황을 살펴보면 합계 기준으로 전체 사용가능 면적 129,355㎡ 대비 잔여면적은 32,977㎡이고, 잔여면적 중 군산의 경우 대부분이 군산 비축창고 신축부지 및 공사 부대공간 확보를 위한 야적장 면적(약 22,300㎡)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700㎡이다. 따라서 현재 조달청이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비축가능 잔여 면적은 10,674㎡ 정도로, 전체 면적의 약 8% 규모에 불과하다.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는 경우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4)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7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협의(2023년 2월~4월)

[비축기지별 적재율과 잔여 비축가능량 현황(2023.2월말 기준)]

(단위: m³)

비축 기지명	건축 당시 목적	사용가능면 적	현재 보관 중인 물자 및 물자별 점유면적	잔여면적
부산	대형비축기지	47,516	알루미늄(30,401), 구리(3,215), 납(1,995), 아연(70), 주석(113), 니켈(1,031), 페로실리콘(258), 망간(3,055), 코발트(23), 바나듐(646), 리튬(387), 스트론튬(206), 비스무트(54)	6,064
인천	대형비축기지	22,231	알루미늄(15,649), 구리(1,212), 납(446), 아연(264), 주석(330), 니켈(894), 페로실리콘(1,200), 망간(1,065), 코발트(17), 바나듐(345), 인듐(16)	793
군산	대형비축기지	47,222	알루미늄(19,222), 구리(2,787), 납(956), 아연(227), 주석(27)	24,003 ¹⁾
대구	소형비축기지	3,509	알루미늄(1,958), 구리(317), 납(277), 아연(144), 주석(27), 니켈(95), 탄탈럼(1)	691
광주	소형비축기지	3,123	페로실리콘(2,771)	352
대전	소형비축기지	2,841	알루미늄(94), 구리(218) 페로실리콘(525), 망간(1,073), 바나듐(266)	667
경남	소형비축기지	1,381	알루미늄(685), 페로실리콘(468)	229
충북	행정용품창고 활용	572	페로실리콘(418), 황성탄(0.2)	154
강원	행정용품창고 활용	960	페로실리콘(936)	24
합계		129,355	96,378	32,977

주: 1) 잔여면적의 대부분이 군산 비축창고 신축부지 및 공사 부대공간 확보를 위한 야적장 면적(약 22,300m²)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700m²임

자료: 조달청

또한 현재 조달청 비축 알루미늄의 87%인 약 12만 톤이 야적되어 있고,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장기야적 원자재 현황을 보면 2023년 3월 기준 15,080톤이 장기야적되는 등 장기야적 원자재가 계속 남아 있으며, 긴급수급조절물자(마스크) 비축을 위한 창고 임차 비용도 2022년에는 17억 600만원이 집행되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 창고의 임차비용 지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야적 원자재 현황]

(단위: 톤)

비축기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부산	897	108	108	-	-	-
군산	-	23,041	23,041	22,394	18,250	15,080
합계	897	23,149	23,149	22,394	18,250	15,080

주: 연도별 입고일자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야적물량(알루미늄주괴)

자료: 조달청

[연도별 마스크 보관창고 임차료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4
마스크 비축보관시설 임차료	예산액	420	2,448	2,448	1,648
	집행액	548	2,047	1,706	366

주: 2020~2022년 4월은 실행행금액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조달청은 원활한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관리에 있어 비축 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조달청 자체적으로도 비축물자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한 창고시설 부족을 조달청 비축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⁵⁾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달청의 비축목표 대비 실적과 원자재 및 긴급수급물자 비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축물자에 대한 안전한 비축 및 관리를 위하여는 군산 비축기지 창고 신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달청은 비축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5) 조달청,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 2022.9.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¹⁾은 조달청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2년에 75억 500만원(2차 추경 기준 74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3,600만원이 전용 증액되었고, 73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7,505	7,492		136	7,628	7,301		327	7,62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연례적으로 타 사업에의 전용을 통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배상금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처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배상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배상금(310-02목)은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이다.²⁾

2022년도 조달청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는 4,000만원의 배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2022년 조달청이 집행한 배상금 규모는 3억 5,300만원이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11-251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년도 조달청 배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서울청	40	172
	구매총괄과		132
	대구청		16
	대전청		13
	강원청		9
	광주청		10
	인천청		1
합 계			353

자료: 조달청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달청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소송 관련 배상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배상액의 초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조달청의 소송 관련 배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소송 건수		합계 (C)	승소율(%) (A/C)	배상금	
	승소(A)	패소(B)			예산액	집행액
2018	182	50	232	78.4%	0	64
2019	166	38	204	81.4%	30	57
2020	151	43	194	77.8%	40	128
2021	147	27	174	84.5%	40	128
2022	122	35	157	77.7%	40	353

자료: 조달청

「국가재정법」 제46조제2항³⁾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3)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배상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고,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조달청은 매년 배상금 예산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타 사업(기관운영 인건비)에서 전용을 하고 있고, 2022년에는 배상금 예산액 4,000만원의 7.8배인 3억 1,4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배상금 부족금을 충당하였다.

[2022년도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2.6.28.)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소송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22.7.27.)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소송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22.9.16.)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11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소송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22.10.19.)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소송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22.11.14.)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소송 배상금 부족금 충당
전용 (‘22.11.14.)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110-01 (보수)	17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310-02 (배상금)	품질점검에 따른 유해물 질 검출 안전 관리물자 교체비용 충당
합계			313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배상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초과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조달청은 2020년부터 배상 규모가 큰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액 등4)이 발생하여 배상금의 집행액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기관운영 인건비의 보수(110-01목)를 수차례 전용하여 배상금(310-02)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금의 경우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해당되어 인건비와의 전용이 가능하나,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의 예외 사례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조달청은 2023년 예산에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배상금 예산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4월 기준으로 조달청이 집행한 배상금은 6,400만원으로 이미 2023년도에 편성된 배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상황이다.⁵⁾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배상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사·점검 및 처분 과정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조달청의 배상금 집행실적과 조달청이 수행 중인 소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규모로 배상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배상금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2020년: 손해배상액 65백만원, 2021년: 손해배상액 40백만원,
2022년: 부당이득금 반환 114백만원, 손해배상액 177백만원

5) 총 2건: 소송비용액: 5백만원, 손해배상금 64백만원

가. 현 황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¹⁾은 조달사업 성과관리, 조달행정서비스 제고,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및 가격조사활동비 보전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59억 4,000만원 중 5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2년도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달행정 역량강화	5,945	5,940	-	-	5,940	5,513	-	427	6,04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내역사업인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사업에서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직은 조달사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무직 인건비 등은 별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통합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사업은 원자재시장분석가, 정부조달관련 법령 해석 및 변호사 자문, 국제협력 지원, 나라장터 고도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동 사업을 통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조달사업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32-366

[조달사업 전문인력 현황]

내역	소속 부서	인원(명)	업무
나라장터 운영지원 (정보보안 등)	전자조달기획과	1	정보보안 관련 전문 업무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석 및 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조달관련 법령해석 변호사
국가계약법규해석 전문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6	계약법규해석 관련 지원
국제협력 전문가	국제협력담당관	1	국제조달협력 지원
원자재시장분석가	원자재비축과	3	원자재시장 분석 지원
국제조달 전문가(외자)	해외물자와	1	해외조달 데이터 관리 및 국제통상·계약업무 지원
조달정보화 전문위원	전자조달기획과	1	조달통계 정보화 지원
해외조달전담 헬프데스크 상담원	조달수출지원팀	3	해외시장 진출지원 상담
소송사무 보조인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	소송사무 보조
맞춤형 서비스 BIM 설계전문가 보수	시설사업기획과	1	BIM 설계관리
합계		20	

자료: 조달청

그런데 동 내역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조달사업 전문인력 20명에 대한 보수 외에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90명에 대한 보수와 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내역사업	편성내역	집행내역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2021) 4,526 백만원 → (2022요구) 4,663백만원, + 3.0% - (산출) 상용임금 상승률 반영, 국 단위 조직신설로 비서 1명 신규채용(+32백만원)	◦ 상용임금: 3,528백만원 - 조달사업 전문인력 보수 : 1,129백만원(20명 * 56백만원) - 본청 공무원 보수 : 283백만원(12명*24백만원) - 소속기관 공무원 보수 : 2,116백만원(78명 * 27백만원)

내역사업	편성내역	집행내역
		◦ 특근매식비: 1백만원 - 총사업비 사전검토 등 특근매식비: 1백만원
		◦ 복리후생비: 31백만원 - 선택적 복지제도 : 31백만원(110명*0.28백만원)
		◦ 고용부담금: 747백만원 - 계약직 고용부담금: 747백만원

자료: 조달청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 또는 사업비(300~799)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은 기존에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에 흩어져 편성되었던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보수를 통합 편성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달행정역량강화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편성하였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를 사업비에 편성할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동 내역사업(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수행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조달사업에 특화된 외부 전문인력이라기 보다는 행정지원, 시설 관리 및 청소 미화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까지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내역사업의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조달사업 고도화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직 수행 업무]

구분	내역	소속 부서	업무 내용
본청 공무직 보수	기획재정업무 보조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 업무 지원
	조달전시관 안내도우미	대변인실	전시관 안내 및 업무 지원
	사보 제작 및 SNS 관리	대변인실	사보 제작 및 SNS 관리
	국장 비서	각 국	비서 업무 및 행정 지원
	우편업무 보조	운영지원과	우편 접수 및 관리
	도서관리 업무	운영지원과	도서실 관리
소속 기관 공무직 보수	사무보조	각 지방청	비서 및 행정 지원
	미화반장		미화원 관리 및 총괄
	미화원		청소, 미화 업무
	관리소장		시설 관리 총괄
	전기책임자		전기시설 관리 총괄
	시설관리(전기, 기계)		전기 및 기계시설 관리
	공공공사 관리		공공공사 설계검토 및 관리
	식당인부		조리 및 식당 관리

자료: 조달청

한편, 관세청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4.,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10여 개의 사업비에 흩어져 있는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단일사업(관세행정인력지원)으로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의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보수 등은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을 포함한 다수 세부사업²⁾에 흩어져 있는 공무직 보수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2)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1131-501), 전자조달운영지원 사업(1131-504),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1132-331),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1233-331),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1235-335),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 홍보(7131-352), 조달행정역량강화(7132-366), 조달전문교육 운영(7134-371)

가. 현 황

조달청은 現서울지방조달청사부지에 공공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까지 現서울지방조달청사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고자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사 이전 지원(손익, 자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¹⁾은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료 및 이사비, 전문 감정평가를 통하여 現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 및 新서울지방조달청사(수서역세권) 예정 부지를 적정가격에 매각·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서 4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 1억 1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2022년도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사 이전 지원 (손익)	593	△492	-	-	101	-	-	101	1,307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청사 이전 지원(자본)²⁾ 사업은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청사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설계·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에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불용하였다.

이상아 예산분석관(ivory412@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7138-508

2) 코드: 조달특별회계 7162-506

[2022년도 청사 이전 지원(자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청사 이전 지원 (자본)	2,216	2,216	-	-	2,216	-	-	2,216	2,21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現서울지방조달청사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의 계획 변경 검토로 서울지방조달청사 이전 지원 사업(손익, 자본)에 편성된 2022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달청은 청사 이전 및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준비를 면밀히 하여 관련 예산 불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8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8·4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청사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조달청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추진을 위한 청사 이전 협조 요청을 하였다.

동 사업은 위와 같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 수급균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現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2-1, B2-2(대지면적 8,221㎡)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現서울지방조달청사에 공공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LH 공공주택 공사착공 일정인 2023년 2월에 맞춰 서울지방조달청사를 2022년 12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사 신축·이전사업 추진계획]

업 무 내 용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계공모, 공고 및 공모안 작성·심사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작성 포함(6개월)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임시청사 이전																																									'22년 12월 이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국토부심의 일정조정
입찰공고																																									3개월
현장설명회																																									
기술제안서 작성																																									3개월
제안서심의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실시설계																																									7~9개월
시공																																									36개월
건설사업관리																																									52개월

자료: 조달청

그러나 국토부·LH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추어 해당 부지의 공공주택 유형 전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함에 따라 당초 조달청이 계획한 2022년 12월 임시청사로의 이전 및 LH의 2023년 공공주택 공사 착공은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순연되었다. 그 결과 조달청이 2022년도에 편성한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 예산 5억 9,300만원(추경 기준 1억 100만원)과 청사 이전 지원(자본) 사업 예산 22억 1,6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청사 이전 지원 사업(손익, 자본)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구분	편성 내역	집행내역
청사 이전 지원 (손익)	본예산	◦예산액(593백만원) - 감정평가수수료(358백만원), 임차료(100백만원), 이사비(135백만원)	-
	1회 추경	-	
	2회 추경	◦예산액(△492백만원) - 감정평가수수료(△358백만원), 이사비(△134백만원)	
청사 이전 지원 (자본)	본예산	◦예산액(2,216백만원) - 리모델링비(666백만원), 임대보증금(1,550백만원)	-
	1회 추경	-	
	2회 추경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기반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이전사업 적정성 검토(2022.10.)’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조달청이 위치한 지자체(서초구) 및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청사 이전이 2023년 하반기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의 이전 및 착공 추진의 정확한 세부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2023. 4. 기준), 향후 정부의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어야 청사 이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도 조달청 예산에는 청사 이전 지원(자본)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22억 1,6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고,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에도 1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 중기재정계획 변경]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2025		593	3,600	3,600	3,600	
2022~2026		101	1,307	3,105	3,198	3,198

자료: 조달청

또한 2023년도 조달청 예산에는 청사 이전 지원 사업과 별개로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³⁾ 사업까지 신설되어 기본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 34억 8,300만 원도 편성된 상황이다.⁴⁾

[2023년도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사업(신규)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예산	증 감	사 유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	3,021	3,021	(신규) 신축청사 설계비
	감리비	-	409	409	(신규) 신축청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	53	53	(신규) 신축청사 시설부대비
	합 계	-	3,483	3,483	

자료: 조달청

그러나 現서울지방조달청 부지의 택지 개발에 대한 지역의 반발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의 청사 이전 및 신축 사업은 불가피하게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2023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도 2022년과 같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4월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칙적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며, 서초구 및 지역주민은 공공행정지구로서 정체성 유지를 주장하며 주택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임시청사 이전 계획은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 여부 확정 시까지 임시 보류되었고, 조달청에 따르면 2023년 ~ 2027년 중기사업계획 심의에서 청사 이전 예산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조달청은 국토부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라 서울지

3) 코드: 조달특별회계 7162-507

4) 사업규모

- 총사업비: 3,116억원
- 사업기간: '23년 ~ '27년
- 사업규모: 건축 연면적 29,044㎡

방조달청 청사 이전 지원 및 신축 등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반복적인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4억 5,400만원이며, 63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0%인 62억 6,1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54	3,454	3,454	6,323	6,261	10	52	99.0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2022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04억 6,4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3,674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9,823	377,832	380,464	367,469	-	12,995	96.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통계청의 자산은 2,803억 1,400만원, 부채는 4억 7,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798억 3,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18억 4,300만원, 일반유형자산 2,021억 300만원, 무형자산 401억 9,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0억 5,800만원(3.7%) 증가하였다. 이는 S/W개발진행 149억 9,600만원 증가 등 유동성 자산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억 600만원, 장기차입부채 7,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7,900만원(44.2%) 감소하였다. 이는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유동성 대체 3억 6,500만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80,314	270,256	10,058	3.7
Ⅰ. 유동자산	31,843	16,359	15,484	94.7
Ⅱ. 투자자산	2,157	914	1,243	136
Ⅲ. 일반유형자산	202,103	203,203	△1,100	△0.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0,196	45,600	△5,404	△11.9
Ⅵ. 기타비유동자산	4,015	4,180	△165	△3.9
부 채	478	857	△379	△44.2
Ⅰ. 유동부채	406	420	△14	△3.3
Ⅱ. 장기차입부채	72	437	△365	△83.5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279,836	269,400	10,436	3.9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761억 5,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041억 8,400만원, 관리운영비 784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2억 7,500만원, 비배분수익 22억 3,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81억원(11.3%) 감소한 3,761억 5,9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의 감소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266억 5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 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가장 큰 프로그램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1,247억 5,43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44억 2,299만원과 경비 240억 6,149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99,908	327,806	△27,898	△8.5
가. 프로그램 총원가	304,184	330,789	△26,605	△8.0
나. 프로그램 수익	4,275	2,983	1,292	43.3
Ⅱ. 관리운영비	78,484	101,002	△22,518	△22.3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2,234	4,549	△2,315	△50.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76,159	424,259	△48,100	△11.3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76,159	424,259	△48,100	△11.3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694억원이고, 기말순자산(기초순자산-재정운영결과+재원의 조달 및 이전+조정항목)은 2,798억 3,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4억 3,600만원(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운영결과 481억원 감소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7억 8,800만원 감소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및 전년대평가이익 상계분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69,400	249,034	20,366	8.2
Ⅱ. 재정운영결과	376,159	424,259	△48,100	△11.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86,910	412,698	△25,788	△6.2
Ⅳ. 조정항목	(314)	31,926	△32,240	△101.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79,836	269,400	10,436	3.9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 부처 공통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증액되어 통계행정지원인력운영 사업이 1억원 증액(445억원 → 446억원)되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감액된 통계청 소관 사업은 없다.

통계청은 열린 통계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통계 선도 및 국민미래 설계를 목표로 ① 각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 수집·연계·분석 강화**, ② 통계 데이터 개방 확대 등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③ 행정자료 이용 확대 등 **통계데이터 생산관리 대전환**, ④ **국가통계 관리시스템 개선 및 국내외 통계발전 선도**, ⑤ **통계 연구 및 교육 확충 등 미래대비 통계발전 선도**를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통계청은 8개의 일반사업에 정보화 사업을 포함,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하여 집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향후 통계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통계청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성과의 개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그램별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2회계연도를 비롯하여 연례적으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과소계상이 발생하여 초과수입이 발생한바,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를 적절히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센터 확장 및 제공데이터 확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이용자 편의 제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 센터 이용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 활용이나 연구, 창업 등 이용대상 및 유형별 데이터센터 이용방식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통계청의 정보화 예산 편성 절차 준수 노력 필요

가. 현 황

통계청은 2022년 통계DB 통합 및 포털서비스, S-GIS DB 구축,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등 총 7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계청의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현액 483억 5,900만원 중 470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정보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DB통합 및 포털 서비스(정보화)	4,355	4,355	-	4,355	4,302	-	53	5,522
S-GIS DB구축 (정보화)	4,298	4,298	-	4,298	4,274	-	24	4,039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정보화)	12,602	12,602	-	12,602	12,431	-	171	12,746
정보시스템 관리(정보화)	6,806	6,806	-	6,806	6,735	-	71	6,691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6,094	6,094	-	6,094	5,826	-	268	11,450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10,977	10,977	-	10,977	10,343	-	634	11,920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정보화)	3,227	3,227	-	3,227	3,182	-	45	3,416
합계	48,359	48,359	-	48,359	47,091	-	1,268	55,784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청은 8개의 일반사업에 정보화 사업을 포함,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하여 집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향후 통계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통계청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사업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²⁾와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차년도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외에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정보화 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보시스템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위의 명시한 정보화 사업 외에 8개의 비정보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정보화 내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을 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 계약에 배정된 예산은 26억 2,700만원, 계약금액은 25억 4,900만원에 이른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비 정보화 사업 내 정보화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발주	계약건명	세부 사업명	배정 예산	예산 과목	발주 금액	계약 금액
자체	통계정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통계정책과)	국가통계 정책추진	327	210-15 (관리용역비)	327	322
조달	통계기준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사업 (통계기준과)		143	210-15 (관리용역비)	143	140
조달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통계기준과)		776	260-01 (연구용역비)	776	691
조달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 (통계기준과)		-	260-01 (연구용역비)	83	81
조달	2022년 통계교육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통계교육 지원	156	210-15 (관리용역비)	156	153
조달	2022년 초중등 학생용 통계 패키지(통그라미) 유지 관리		192	210-15 (관리용역비)	192	186
조달	2022년 이러닝 콘텐츠 개선 개발 사업		270	260-01 (연구용역비)	270	224
조달	2020~2022년 통계센터 정보 통신시스템 위탁관리 사업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183	210-15 (관리용역비)	183	180
조달	2022년 빅데이터 교육용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통계교육원 수입대체 경비	71	210-15 (관리용역비)	71	70
조달	2022~2023년 통계교육원 전산장비 위탁관리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111	210-15 (관리용역비)	111	100
조달	기업생멸행정통계 종합분석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	경제구조 통계작성	234	210-15 (관리용역비)	234	231
조달	2022년 경기종합지수 작성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경제동향 작성	35	210-15 (관리용역비)	35	34
조달	2022년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농어업농계작성	70	210-15 (관리용역비)	70	69
조달	2022년 농업면적 전자조사시스템 유지관리		62	210-15 (관리용역비)	62	62
합 계			2,627	-	2,627	2,549

자료: 통계청

이 중 국가통계 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의 경우, 정보화 사업임에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감리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은 미배정되었으나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연구용역비(260-01))의 낙찰차액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정보화 사업 관련 지침을 활용³⁾한 것으로, 예산 시 반영되지 않은 감리사업이 추진되었다.⁴⁾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반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 및 기존 정보시스템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침 등에 부합하여 정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2022회계연도의 경우 다수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도, 일부 정보화 사업은 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되 일부 정보화 사업은 미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전 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일정 부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청은 8개의 비정보화 사업에 정보화 사업을 포함,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하여 집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과기부의 점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향후 통계청이 집행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여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은 불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지원 등의 경우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차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결과 통계청의 정보화 감리사업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시정 요구한 바 있다.

가. 현 황

2022회계연도 통계청은 ①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 향상, ② 데이터 허브 및 개방형 플랫폼을 통하여 통계 생산 활용 확대, ③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정책 지원 등 3개의 전략 목표 하에 5개의 프로그램 목표 및 18개의 단위사업, 58개의 세부사업을 두고 있다.¹⁾

[2022회계연도 통계청 프로그램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 Ⅰ.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Ⅰ-1.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전문교육을 강화한다.
Ⅰ-2. 통계행정지원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기관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Ⅱ. 데이터 허브 및 개방형 플랫폼을 통하여 통계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Ⅱ-1.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통계생산· 활용 확대를 위해 통계정보를 확충하고 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전략목표 Ⅲ. 통계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통계를 생산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Ⅲ-1.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활용도 높은 국가기본통계를 생산·지원한다
Ⅲ-2. 통계행정지원	국가정책 뒷받침을 위해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한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2022회계연도 통계청 성과목표 및 사업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구 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3	5	18	58

자료: 통계청

2022회계연도 통계청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서 1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지표가 초과 달성되었고, 7개 지표가 달성되었으며, 4개 지표가 미달성되었다.

[2022회계연도 통계청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달성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3	5	12	1	7	4	98.6%
		100%	8.3%	58.3%	33.3%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일부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성과의 개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그램별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프로그램 1-2 목표는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기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①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통계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하여 국가통계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며, ②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 활성화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행정효율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기관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③ 다양한 국제 종합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와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양자협력회의,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국제통계기구와 협력 업무 등을 통해 통계청의 통계역량 향상과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단위사업은 대내외협력강화로, 국가통계인식제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국제통계협력강화, 개도국 통계지원(ODA)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통계청 프로그램 I-2 집행 현황]

연도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 (B)	집행률 (B/A)
2022	대내외 협력강화	국가통계 인식제고	547	0	547	526	96.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1	0	301	291	96.7
		국제통계 협력강화	1,967	0	1,967	1,936	98.4
		개도국 통계지원(ODA)	3,523	0	3,523	3,427	97.3
	소계		6,338	0	6,338	6,181	97.5

자료: 통계청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 전략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기간(향후 5년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통계청은 현재의 “국가통계 수준향상을 위해 기관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I-2 목표에 대해 기관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해당 전략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청이 프로그램 I-2 목표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청 및 국가통계 이해도·신뢰도 제고,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 현재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목표로 제시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목표의 핵심적인 성과 달성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프로그램 I-2의 성과지표로 ‘통계청 인식도’와 ‘국제통계 이용건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프로그램 목표 1-2 의 성과지표 달성률]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9년	'20년	'21년	'22년
전략목표 1: 국가통계 인프라 및 역량 강화로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통계 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역량을 강화한다(1-2)	통계청 인식도 (점)	$\frac{1}{3} \sum_{i=1}^3 \sum_{j=1}^n x_{ij} / n$ ※ i: 3개의 조사항목, xij: 개인별 응답측도(5점 척도), n : 총응답자수	목표	3.61	3.58	3.60	3.62
			실적	3.55	3.59	3.61	3.63
			달성률 (%)	98.3	100.3	100.3	100.3
	국제통계 (북한, 신남방·신북 방통계)KOSI S 통계자료 이용건수 (건)	Σ(KOSIS 통계 표 이용건수)	목표	신규	신규	151,589	192,640
			실적	신규	신규	186,435	219,693
			달성률 (%)	-	-	123.0	114.0

자료: 통계청

이 중 '통계청 인식도' 지표는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계 및 통계청에 대한 인식, 홍보활동에 대한 전반 평가 등을 수집하여 5점 척도로 산정되는 지표다.

그러나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1948년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지표에서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자료의 활용도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결과와 무관한 통계청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해당 프로그램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2022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전략목표에 담긴 핵심 내용을 제시하며, 전략목표가 추구하는 결과상태를 대표·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을 제시한 점을 고려,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 또한 2019년 3.61점에 비해 2022년 3.62점으로,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에 근거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한 정부 지침을 고려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

‘국제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경우 해당 데이터 활용 비율 지표의 사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이 ODA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청의 해당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국제위상 제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정보화 시스템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실제로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개도국 통계지원(ODA) 사업의 성과지표로 통계분야 ODA 사업 수원국 만족도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2022년 결산 성과보고서 기준 ‘국제통계 이용건수’ 성과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성과의 개선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그램별 전략목표와 하위 프로그램 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사업의 과소 편성 시정 필요

가. 현황

통계청은 통계교육원 수입, 통계생산대행 수입, 지방청의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 등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¹⁾로 지정하여 수납하고 있다.²⁾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2022년 예산은 18억 6,6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24억 900만원 초과 수납된 42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1,866	1,866	-	1,866	4,275	4,275	-	1,469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³⁾은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통계생산능력이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통계를 적기에 작성 또는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각종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처 등 통계 작성기관 소관 통계를 통계청에서 대행 생산(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69-691

2) 통계청의 세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 과태료,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고정자산매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3036-652

등)하는 사업이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2022년 예산은 8억500만원이 었으나, 초과지출 승인 25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억 1,200만원 중 3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 용등 ¹⁾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805	805	2507	3,312	3,073	-	239	781

주: 1) 세목조정 및 초과지출 승인임

1.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나. 분석 의견

첫째, 2022회계연도를 비롯하여 연례적으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초과수입이 발생한바,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를 적절히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해 왔다. 최근 5년간 통계청의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인 수납률은 2018년(328.5%), 2019년(145.4%), 2020년(73.8%), 2021년(146.1%), 2022년(229.1%)로, 2020년을 제외하고 수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계생산대행 수입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면 4억원~9억원 수준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이는 예산안 편성 당시 기존의 집행실적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유사하게 편성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계생산대행 사업 수입의 수납률의 경우 2018년(773.8%), 2019년(160.1%), 2020년(74.5%), 2021년(230.2%), 2022년(411.1%)로, 역시 2020년을 제외하고 수납률이 100%를 초과한다.

이러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과소계상에 대해 국회는 2015, 2016, 2017,

2019년 결산 국정감사 및 시정요구서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왔으나, 통계청은 2020년도 예산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 다시 수요조사 반영이 아닌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의 경우도 통계청의 예산안에는 9억원만 반영되었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통계생산대행 수요제출기관의 예산안 반영액인 22억 4,8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계청 예산이 조정되어 확정된 경우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다시 해당 사업의 예산액을 2021년에 8억 800만원, 2022년에는 8억 500만원으로 과소계상하였다.

[최근 5년간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통계교육원	통계생산대행	지역통계 생산대행
2018	예산액 (A)	1,375	274	400	701
	수납액 (B)	4,517	504	3095	917
	초과수납(B-A)	3,142	230	2695	216
	수납률(B/A)	328.5%	183.9%	773.8%	130.8%
2019	예산액 (A)	2,075	474	900	701
	수납액 (B)	3,017	698	1441	878
	초과수납(B-A)	942	224	541	177
	수납률(B/A)	145.4%	147.3%	160.1%	125.2%
2020	예산액 (A)	3,628	550	2,248	830
	수납액 (B)	2,678	224	1,674	780
	초과수납(B-A)	△950	-	-	-
	수납률(B/A)	73.8%	40.7%	74.5%	94.0%
2021	예산액 (A)	2,042	550	808	684
	수납액 (B)	2,983	380	1,860	743
	초과수납(B-A)	941	-	1,052	59
	수납률(B/A)	146.1%	69.1%	230.2%	108.6%
2022	예산액 (A)	1,866	447	805	614
	수납액 (B)	4,275	304	3,312	659
	초과수납(B-A)	2,409	-	2,507	45
	수납률(B/A)	229.1%	68.0%	411.4%	107.3%

자료: 통계청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19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통계대행 수요를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수요조사 시기를 2월, 5월 10월에서 2월, 5월, 7월로 변경한 바 있다.⁴⁾ 2022년에 수행된 통계생산대행의 경우에도 모두 2021년 7월 내에 수요 모니터링이 완료되었다.

4)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은 매년 각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행통계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2022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수요제출기관	통계조사명	수요조사 회차(시기)	선정 결과	예산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2021년 1차 (‘21.2.)	(미선정) 통계 대행 없이 자체개선 가능 판단	20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2021년 2차 (‘21.5.)	(선정) 다양한 대상 및 조 사난이도	840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국제성인역량조사 본조사	2021년 3차 (‘21.7.)	(선정) OECD에서 주관하 는 국제통계	2,400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의식실태 조사	2021년 3차 (‘21.7.)	선정) ’21년 통계컨설팅 및 신규통계 작성지원	162
해양수산부	낙시통계	2021년 3차 (‘21.7.)	(미선정) 월간 조사로 대행 부적합	400
합 계				4,002

주: 소방청이 2021년 1차(2021.2.) 수요조사에 제출한 119생활안전통계는 보고통계에 해당하여 통계대행 대상에서 제외

* 보고통계는 법령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 다른 행정 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통계로, 별도의 통계조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기존에 실시한 생산대행통계 중 차기 조사가 예정된 통계 및 통계청 기존 통계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통계 등의 경우 우선 협의 대상 통계로 선정된다고 밝히고 있다.⁵⁾ 2022년 통계청이 수행한 3건의 통계대행 중 2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경우 2019년에 동일한 통계대행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의 경우에는 이미 2021년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상태이므로, 2022년에 해당 통계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각 수요 기관의 예산안에는 반영된 통계조사 관련 예산액 규모가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 사업의 예산액에는 반영되지 않았다.⁶⁾

5)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생산대행 신청 통계 중 ① 통계작성기관 소관 통계 ② 승인통계 또는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 ③ 전국 대상 통계 ④ 면접조사 통계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통계대행지침에 의거, 통계대행지원협의회에서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다.

[최근 5년간 통계생산대행 수행 현황]

연도	조사명	위탁기관	수입액(백만원)
2018 (5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69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	597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중소벤처기업부	435
	이민자체류실태 및 외국인 고용조사	법무부	128
2019 (4건)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00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20
	이민자체류실태 및 외국인 고용조사	법무부	149
	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	여성가족부	63
2020 (3건)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8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068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예비조사(연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00
2021 (4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보훈처	690
	산후조리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16
	양성평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50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예비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04
2022 (3건)	보훈문화의식실태조사	국가보훈처	162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50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400

주.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사일정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 사업은 통계청의 통계작성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처의 통계생산대행을 통해 전반적인 통계 품질관리 및 적시에 필요한 통계작성, 작성기법 전수 등 통계자료에 기반한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7)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예산이

6) 이에 대해 통계청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통계대행지원협의회를 통해 익년도 대행조사가 최종 선정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행 통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 부처에 통계조사 관련 예산액이 편성되었더라도 최종 예산 확보 실패 등의 사례가 있어 보수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은 향후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조정 등 통계대행사업 선정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국가재정법」

과소 편성될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더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규모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⁸⁾

즉, 2022회계연도를 비롯하여 연례적으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의 과소계상이 발생하여 초과수입이 발생한바,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를 적절히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초과지출 또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회계연도의 경우 통계생산대행 예산액 8억 500만원 대비 3배가 넘는 25억 7,000만원을 초과지출 승인하여 3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련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초과지출 승인을 통해 집행한바,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8)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18년, 2021년 결산 보고서, 2021년 예산안 보고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통계청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과소계상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비용에 대한 초과지출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초과지출 승인 이후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통계조사 관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집행 관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초과지출 승인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400	400	2,654	3,054	2,930	732.6	95.9	124
2019	900	900	532	1,432	1,404	156.0	98.1	28
2020	2,248	2,248	-	2,248	1,572	69.9	69.9	676
2021	808	808	1,052	1,860	1,755	217.2	94.4	105
2022	805	805	2,507	3,312	3,073	381.7	92.8	239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비목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 당시 편성되지 않았던 일반용역비(210-14목)와 관리용역비(210-15목)가 각각 3,000만원 및 2,200만원이 초과지출 승인되었다. 초과지출승인액 중 일반용역 및 관리용역비는 이미 2021년 7월에 수요조사가 완료되어 통계대행에 선정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며, 해당 조사는 통계청의 우선 협의 대상 통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해당 통계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지출 승인을 통해 집행하였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2022회계연도 일반용역 및 관리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초과지출 승인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행조사	805	805	2,507	3,312	3,073	239
일반용역비(210-14)	-	-	30	30	30	-
관리용역비(210-15)	-	-	22	22	22	-

자료: 통계청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2022회계연도 일반용역 및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 건명	배정 예산	발주 금액	계약 금액	계약 기간	계약 상대방	계약 유형	수의 계약 사유 (근거)
일반 용역	제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 교관단 교육 행사 용역	-	30	30	22.8~ 22.9	○○○ 커뮤니 케이션	수의	제1항 제2호
관리 용역	2022년 보훈문화의식 실태 조사 시험조사 시스템구축 및 운영사업	-	22	22	22.1~ 22.4	(주) ○○정보 기술	수의	제1항 제5호 가목

자료: 통계청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예산 미반영에 따른 초과지출 또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2회계연도의 경우 통계생산대행 예산액 8억 500만원 대비 3배가 넘는 25억 7,000만원을 초과지출 승인하여 3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초과지출 승인을 통해 집행한 바,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관련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은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사업¹⁾의 내역 사업으로, 서울(국회, 강남, 상암, 중구센터), 대구, 광주, 부산, 세종, 제주, 전북의 8개 지역 11개소에 통계데이터의 개방·활용 확산 플랫폼인 ‘통계데이터센터(SDC)’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자료를 대폭 개방하고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 29억 9,600만원 중 2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 통계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10,977	10,977	-	10,977	10,343	-	634	11,920
(통계데이터 센터 운영)	2,996	2,996	-	2,996	2,810	-	186	3,326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나. 분석의견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센터 확장 및 제공데이터 확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이용자 편의 제고 노력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 활용이나 연구, 창업 등 이용대상 및 유형별 데이터센터 이용방식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2032-308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센터 확장 및 제공 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경우 2016년 10월~2018년 10월 판교 및 대전센터에서 시범운업을 마친 후, 2018년 11월 대전, 서울 및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광주(2020.3), 대구(2021.3), 서울 상암(2021.9), 세종(2022.3) 등 지역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경기, 강원 등에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또한 행정자료의 경우 12종(2019년) → 14종(2020년) → 15종(2021년~2023년)으로, 민간데이터의 경우 26종(2019년) → 33종(2020년) → 35종(2021년~2023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이 외에 S-GIS DB구축(정보화)(2031-304)사업의 격자 통계 5종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2032-307)사업의 마이크로데이터 DB 50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 데이터 목록]

구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2023. 5. 23. 기준)				
행정 자료 (17종)	경제 · 사회 - 기업통계등록부(4종) - 사업장 기초 DB(2종) - 취업통계등록부(2종)			인구 · 가구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2종) - 주택통계등록부 - 인구 동태 코호트 DB - 아동가구통계등록부 - 청년통계등록부	
				농림 · 어업 - 농업 DB - 임업 DB - 어업 DB	
민간 자료 (35종)	인구 · 가구 - 성 · 연령별 유동인구 - 시간대별 유동인구 - 요일별 유동인구 - 성 · 연령별 유입인구 (부산) - 성 · 연령별 주거인구 - 성 · 연령별 직장인구 - 가구소득(서울 · 부산) (코로나19)방문인구정보 (코로나19)방문인구정보 (유입지 null)	경제 · 사회 - 성연령별 카드매출 (3종) - 업종별 카드매출 - 신용통계정보(3종) - 인구이동정보(3종) 1000대 상권 정보 - 영업 중 업소(부산) - 모바일상품권 - 온라인가격정보 - 구매상품정보	건물 · 지가 - 표준공시지가 (서울, 부산) - 주택(서울, 부산) (단독/다세대/기타) - 공동주택정보 (서울, 부산) - 건축물정보 - 기초정보 인구집중 유발시설(서울, 부산)	차량 - 도로별 차량통행량 (서울, 부산) - 시 · 군 · 구별 차량등록대수(전국)	기초정보 - 소지역코드정보 - 행정동코드정보 - 법정동코드정보 기타 - SNS 데이터

자료: 통계청

통계청은 2020년 12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이후 2022 회계연도 기간 내 ① 통계데이터 지역센터 추가 신설(2022년 강남, 세종, 국회센터 신설), ② 통계데이터 등의 추가 확보, ③ 기존에 실시 중인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진행 확대 등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²⁾ 면제 정책 등을 통해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에게 보유데이터 및 분석플랫폼을 무료 제공하는 등, 통계데이터 센터의 운영수익 감소를 감내하면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률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도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액 및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집행액	4,593	3,007	2,531	2,810
수입	10	18	11	0.7

주: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수입은 2019년부터 발생함.
자료: 통계청

그러나 이러한 통계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실적은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의 상암 및 중구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1년의 이용건수와 유사하며, 부산, 광주, 대전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이상 이용건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분석 좌석수 등 규모를 감안하면 여타 센터에 비해 좌석 당 이용건수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역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계데이터센터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며, 이용자 이용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 활용대회 개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사례집 등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2) 「통계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 현황]

(단위: 석, 건)

센터명		위치	설치 시기	분석 좌석수 (A)	이용 실적		
					'21년	'22년	
						이용건수 (B)	좌석당 건수(B/A)
서울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1층	22.06	3	-	21	7.0
	강남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4층	22.06	11	-	141	12.8
	상암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스마트움 15층	21.09	5	51	50	10.0
	중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18.11	10	466	482	48.2
대구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로 160 SW융합테크비즈센터 2층	21.03	15	39	206	13.7
광주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기움 광주통합청사 4층	20.03	12	40	143	11.9
부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기움 부산통합청사 1층	18.07	12	20	105	8.8
세종		세종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KDI) 1층	22.02	3	-	77	25.7
대전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13층	18.11	34	240	438	12.9
제주		제주 제주시 아연로 253 제주연구원 2층	23.03	7	-	-	-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23.05	8	-	-	-

자료: 통계청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발간한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활용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유형별 이용 건수는 AI 활용대회, 교육, 연구, 분석활용대회 순으로 높다. 이 중 교육의 경우 지역 통계센터가 지방 통계청 업무로 이관되면서 센터 이용교육을 포함하여 측정된 수치로, 통계청이 주관한 행사에 활용된 유형을 제외하면 연구 및 통계 작성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통계데이터센터 유형별 이용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A)	2022년(B)	증가율 {(B-A)/A}
유형별 이용 건수	연구	84	84	114	206	80.7
	통계	37	49	42	43	2.4
	승인통계	-	17	35	44	25.7
	MDIS ¹⁾	-	12	29	32	10.3
	분석활용대회	114	129	154	174	13
	AI활용대회	-	-	-	395	-
	교육	-	33	57	389	582.5
	기타	-	-	2	-	-
분석 자문 이용 건수		-	-	211	214	1.4

주. 1) MDIS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 성과물의 경우 성과물의 특성(정책 활용, 연구, 창업 등)에 따른 구분이 아닌 정부부처 활용사례 및 일반이용자 활용사례로 구분하고 있다.³⁾ 특히 연구 관련 활용이 많음에도 사례집에는 결과물에 대한 연구 논문 출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결과물을 확인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한 성과물을 수

3)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2022 우수 활용사례(사례집) 예시]

구분	사례
정부 부처 활용 사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역세권 통계분석 통계로 보는 충청지역 귀농·귀촌인 현황 원주시 청년통계 보고서 동남권 남녀의 일가정 양립실태 분석 2022 수도권의 활기찬 고령지표 대구·전통시장생활권역 분석
일반 이용자 활용 사례	코로나 충격이 온라인 쇼핑에서의 디지털 격차에 미치는 영향 추정 1030 여성들의 소비패턴 분석 및 방향 제시 사업체 규모 및 종사자 연령별 따른 고용창출 구조 분석 배달업을 추가로 사용했을 때의 외식업종의 소득 증대 효과 관측 문화예술 산업 내 성별·연령별 고용 양상 분석

자료: 통계청

집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① 해당 통계 관련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 및 설계, 실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기초분석 보고서, ② 해당 연구원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발표집, ③ 연구자들이 논문 등에서 해당 통계를 활용한 경우의 결과물 목록을 제시하는 논문 목록, ④ 패널 자료 관련 가중치 변동 등 방법론적 설명을 담은 테크니컬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물에 대해 재정패널의 경우 2009~2021년 동안 81건,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1999년~2023년 동안 3073건에 달하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물 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각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 연구 결과물 및 통계자료 처리 등 기타 설명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①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② 연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통계를 활용한 연구결과물을 참고하도록 하여 연구 주제와 데이터 간 연계 및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참고,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통계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경우, 체험교육 등 홍보를 비롯한 행사 개최⁵⁾ 등의 방법 외에도 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학술연구, 정책개발, 창업 등 각 분야에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및 제공 데이터 확대 등 하드웨어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역통계데이터센터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바, 지역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데이터센터 확장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이에 통계청은 기존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성과물 공유 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센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 사례집의 경우에도 정부 부처 활용 사례로 공공행정, 교육 복지, 재난안전, 보건의료, 산업고용 등 세분화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5)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의 내역 사업으로 이용자 분석역량강화 사업에서 이용자 교육·홍보체계 구축, 분석활용대회 운영 등으로 2020년 3억 9,200만원, 2021년 3억, 2022년 3억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73X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73X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